

☐자료 나-7-1 (공판기록 449~450)

|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판 조서 | |
|---|-------------------------------|
| 제 7 회 | |
| 사 건 91 고평 1126 자살방조 91 고평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 기 일 1991. 11. 7. 14:00 |
|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 장 소 제 523 호 법정 |
| 판사 정 일 성 | 법정의 공개여부 공 개 |
| 판사 이 영 대 | 고지된 다음 기일 1991. 11. 20. 10:00 |
|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 출 석 |
| 피 고 인 강 기 훈 | 각 출 석 |
| 검 사 신상규 및 송명석 | 각 출 석 |
| 변호인 변호사 김창국, 박연철, 및 이석태 | 출 석 |
| 증 인 홍성은 | 각 불출석 |
| 증 인 윤석순 | |
| 재 판 장 전회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 |
| 소송관계인 변경하거나 이의할 점이 없다는 의견진술 | |
| 재 판 장 출석한 증인 별지와 같이 신문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 (검사, 변호인) | |
| 재 판 장 변론 속행 | |
| | 1991. 11. 7. |
| |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
| |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

☐자료 나-7-2 (공판기록 451~515)

|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7 회 공판조서의 일부) | |
|--|----------------------------|
| 사 건 91 고평 1126 자살방조 91 고평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 증 인 홍성은 |
| | 생 년 월 일 1966. 1. 25생 |
| | 주민등록번호 (|
| | 직 업 무 직 |
| | 주 거 |
| 재판장 |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
| |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 |
| | 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 |
| | 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
| 재판장 | 증인이 전민련 관계자 등 일반 방청객 앞에서는 |
| |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보도진 및 피 |
| | 고인, 증인의 가족의 방청객들의 퇴장을 명함. |

검사 송명석

증인에게

문 : 증인은 1991. 1. 20.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화양동 소재 화양4거리 부근 카페 '슈베르트'에서 증인의 단국대학 동창인 이영미, 위 대학선배인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가명 이현우)으로부터 김기설을 소개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 당시 강기훈이 김기설을 소개하면서 같이 전민련 사무실에서 일하는 후배이고 한양대학교 철학과 3학년을 중퇴하였다고 소개하였는가요.

답 : 예.

문 : 그 후 증인은 김기설을 매주 약 1-2회 정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1991. 2. 18. 10:00경 슈베르트 카페에서 김기설을 만났을 때 김기설이 짙은 것

이니 읽어보라 하여 메모지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런데 나중에 그 내용을 읽어보니 '엇저녁 소주 2잔에 나도 너도 없는 상태에서 자네는 이런 얘기를 했네' 또는 '다들 일도 아니었는데'라는 등 김기설이 증인을 생각하면서 증인을 대상으로 쓴 내용도 아니고 김기설이 쓴 것인지도 알 수 없어 기분 나쁘게 생각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후 증인이 마지막으로 김기설을 만난 것은 1991. 5. 7. 19:30경 신촌의 복지다방에서 이지요.

답 : 예.

문 : 당시 증인과 김기설은 위 복지다방에서 만나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과 카페로 옮겨가며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때 김기설이 5. 4의 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분신자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어버이날인 5. 8에 분신자살할 듯한 의사를 비추기에 증인이 울면서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러나 김기설은 결심을 굳힌 듯이 같은날 22:00경 상호불상 카페에서 자신의 전민련수첩 전화번호 3-4장을 찢어낸 후 자신의 분신 후 연락해 줄 사람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녹색하이테크펜과 샤프로 표시를 해주고 이를 증인에게 주었다가 수첩이 아직 쓸 만하다면서 위 전민련 수첩 전부를 증인에게 준 후 같은날 22:30경 아현철철역에서 헤어진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당시 김기설이 다른 필기구, 검정색 싸인펜을 소지한 것을 보지 못했지요.

답 : 증인 눈앞에서 본 적은 없고 아마 속옷에 들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증인은 위 수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후 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답 : 예.

문 : 당시 김기설이 '전화번호란' 3-4장을 찢어 녹색하이테크펜과 샤프로 연락해야 될 사람을 표시해 주었고 다른 부분은 찢어진 부분이 없었고 흐트러진 상태도 아니었지요.

답: 예.

문: 그리고 전화번호란은 검정색으로 기재되어 있었지요.

답: 예.

문: 위 수첩의 일정표란은 검은색볼펜 또는 수성펜으로 기재되었고 연필이나 샤프로 기재되거나 다른색 싸인펜 또는 형광펜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없었지요.

답: 예.

문: 그리고 5 7자 '가든호텔'이라는 약속장소는 검정색 수성펜으로 기재되어 있었지요.

답: 예.

문: 증인이 이 부분을 특히 기억하는 이유는 김기설이 5. 7. 증인과 만나 이야기 하던 중 가든호텔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증인과 만나느라고 어겼다고 말한 적이 있어 나중에 집에서 유심히 살펴보아 뚜렷이 기억하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수첩의 찢어진 면은 다소 울퉁불퉁하게 찢어졌고 회원단체 주소 및 전화번호란은 바뀐 번호 등이 검정색으로 기재되어 있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그후 1991. 5. 26에 이르러 전민련이 제출한 수첩을 검사가 제시하여 보았는데 증인의 기억과 달리 (1)수첩이 더 흩어져 있고 (2)일정표란에 검은색 볼펜 또는 수성펜 외에도 연필, 청색필기구, 녹색하에텍, 분홍색 형광펜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고 (3)회원단체 주소 및 전화번호란이 검정색이 아닌 청색으로 쓰여져 있고 (4)가든호텔이라는 5. 7자 약속이 검정색이 아닌 녹색하에텍으로 기재되어 있고 (5)전화번호 기재란이 한장이 없어져 있고 (6)모는종이 부분이 석장 없어져 있고 (7)전화번호 기재란이 검정색이 아닌 청색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8)절취선이 기억보다 매끄러웠지요.

답: 예.

검사 인상규

증인에게

문: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1991. 5. 7. 23:30경 김

기설이 준 수첩에서 강기훈(가명 이현우)의 집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전화를 하였더니 강기훈이 무조건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말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증인이 강기훈에게 '김기설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해 달라'며 김기설의 아버지 전화번호를 적으라 한 후 번호를 불러주었지요.

답: 예.

문: 증인이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다음날인 5. 8 연대에서 강기훈을 만나 어젯밤 전화할 때 '왜 이상하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느냐'고 물었더니 강기훈이 사흘전인 5. 5 술을 많이 먹고 길바닥에 주저앉았던 것에 대한 사과였다고 대답하였지요.

답: 예.

문: 그리고 그날 자정경에 장준호, 김문정이 증인의 집으로 찾아와 장준호가 "김기설이 요즘 행동이 이상한데 잘 모르냐"고 묻고 "전민련에서 찾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한 후 돌아간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문: 증인은 다음날인 5월 8일 06:30경 김기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김기설이 "이대쪽에 있다. 지금 까지 다른 데에 있었다. 사랑한다"는 등 마지막 인사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문: 그후 증인이 집에서 연대 범대위 사무실로 전화를 하였는데 아무도 받지 않아 출근 도중 건대 전철역에서 다시 전화를 하니 여직원이 받아 임근재를 바꾸어 주어 임근재가 "김기설과 새벽까지 있었는데 놓쳐버렸다. 계속 찾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말하여 출근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문: 같은 날 09:00경 연대로 전화를 하니 상황이 안 좋다고 하여 수업을 마친 후 12:00경 연대로 찾아가 김기설이 분신자살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문: 그때 연대에서 이영미와 대학선배인 김진수를 만났는데 이영미가 김기설의 수첩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 증인이 꺼내주자 전민련 선전부장인 원순용이 이를 받아갔는가요.

답: 이영미가 주었는지 증인이 직접 주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원순용이 받아 간 것은 사실입니다.

문: 그날 14:00-15:00경 사이에 연대 학생회관 3층에서 전민련 관계자의 중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여 "김기설이 혼자 결정하여 분신한 것으로 배후 조종한 사람은 없다"고 기자회견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그날 16:00-17:00경 전민련 관계자가 위 수첩을 복사한 것의 한귀퉁이를 찢기에 물어보니 "한상열의 장님이 머무신 곳이 적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김근태 부인인 인재근이 복사본이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기에 수첩의 행방을 물으니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수첩은)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때 옆에 있던 진수형("김진수"를 뜻함)을 쳐다보니 손을 내저으며 수첩은 모르는 채 하라는 표시를 하였지요.

답: 예.

문: 그 다음날인 5월 9일 연세대에 있는 대책위 사무실에서 김진수에게 증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에 대하여 상의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문: 김진수가 "영미(이영미를 지칭함) 이야기는 빼는 것이 좋고 김기설의 수첩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영미 얘기를 빼라고 한 것은 사실이나, 수첩 얘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문: 증인은 그 다음날인 5월 10일 15: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소재 전민련 사무실 건너편 봉쥬르카페에서 강기훈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문: 당시 증인이 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한후 검찰의 조사가 예상되니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하고 물으나 강기훈이 "말조심하고, 묻는 것에만 예, 아니오 라고 간단히 대답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문: 그래서 증인도 이영미는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하였지요.

답: 예.

문: 그때 그곳에서 강기훈이 증인의 수첩 뒤에 김

기설의 전화번호 등을 써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 확실하지 않습니다.

문: 증인은 그때 그곳에 강기훈이 증인의 수첩 뒤 김기설의 전화번호 등을 써주어서 불쾌하게 생각하였는데 강기훈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를 감추었다고 5월 17일 검찰에서 자술서를 쓰고, 진술하였고, 같은날 법정에서 선서 한 후 같은 내용으로 증언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그후 증인은 5월 12일 2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소재 전민련 사무실 부근 도이취호프집에서 강기훈, 김진수, 이영미 등과 만났지요.

답: 예.

문: 당시 김진수가 "내가 박래전 분신사건 때나 단국대학교 최덕수 분신사건 때 장례를 직, 간접으로 지원하였는데 이번 김기설 분신사건 때 최대의 실수는 성은이를 등장시킨 것이다"라고 하니 강기훈이 그 말을 받아 "이미 잊지려진 물"이라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문: 증인은 다음날인 5월 13일 1차로 검찰에 소환되어 5월 14일까지 조사를 받았지요.

답: 예.

문: 그때 증인은 인재근과 김진수, 그리고 5월 10일의 강기훈 등의 말을 듣고 김기설이 남긴 수첩의 존재와 행방을 묵비하였지요.

답: 예.

문: 또한 그때 김기설이 분신자살하려고 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노동현장에 가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5월 5일 강기훈과 만난 사실, 5월 7일 강기훈과 통화한 사실, 그리고 강기훈이 5월 10일 위와 같이 증인에게 말한 사실 등을 모두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하지 않았지요.

답: 예.

문: 그후 검찰에서 김기설이 수첩을 증인에게 남긴 사실을 다른 경로를 통하여 알아내고 2차 증인을 소환하여 그 사실여부를 추궁하게 되자 그때 비로소 수첩의 행방 등 묵비하였던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지요.

답: 예.

검사 송명석
증인에게

문 : 증인이 검찰에서 2차 조사를 받을 당시인 1991년 5월 17일 1930경 강기훈의 모친이 증인의 집으로 전화하고 강기훈의 친구라는 남자와 함께 증인의 집을 찾아와서 증인의 모친(윤석순)에게 "왜 변호사를 안대느냐, 변호사 입회 아래 진술을 해야 기훈이의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지 홍양이 이야기를 잘못하면 자기 아들(강기훈)의 입장이 곤란해진다"고 말하고 자기들끼리 "홍양을 48시간 이내에 풀어주지 않는 것을 보면 자신의 아들을 풍풍 쥐어 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증인의 모친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같은 날 22:00경이 넘어서 증인의 대학 선배라는 "수연"이라는 사람이 전화하여 증인의 모친에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한 사실을 모친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2차 검찰조사가 끝난 후 기자와 전민련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처녀의 몸인 증인의 혼사길이 막히거나 당할까봐 걱정을 한 부모님이 성남시 태평동 소재 이모집으로 증인의 거처를 옮긴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증인이 검찰에 출두하여 작성한 5월 14일 자술서(수사기록 제246정-제247정)¹²⁶⁾ 5월 14일 자술서(수사기록 제396정-제400정)¹²⁷⁾ 5월 16일 자술서(수사기록 제401정-제403정)¹²⁸⁾ 5월 17일 자술서(수사기록 제422정-제423정)¹²⁹⁾는 증인이 모두 자필로 임의 작성한 것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검사가 5월 14일 제1회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48정-제262정)¹³⁰⁾ 5월 17일 제2회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25정-제441정)¹³¹⁾, 5월 26일 제3회 진술조서(수사기록 제566정-제578정)¹³²⁾를 작성할 당시 증인이 임의로 진술하고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것인가요.

126) 총자료집 I 책 98쪽 참조.

답 : 예.

문 : 증인은 7월 24일 모친인 윤석순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037정-제1042정)¹³³⁾를 대필하였는데 증인이 윤석순의 진술을 듣고 사실대로 임의로 작성한 것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검찰에서 2차 조사를 받은 후인 5월 17일 법원의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절차에서 선서하고 증언¹³⁴⁾하였는데,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것인가요.

답 : 예.

변호사 박연철

증인에게

문 : 증인이 강기훈에 의하여 어떤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한 것은 1991년 1월 초순이었고 1991년 1월 20일 강기훈, 이영미, 김기철을 슈베르트에서 만나 직접 소개를 받았으며, 김기철과 단들이 만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2월 초순부터였지요.

답 : 예.

문 : 그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서로 약속하였나요. 이를테면 증인이 연락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나요. 아니면 증인이 전민련 사무실로 연락하였나요.

답 : 다음 언제 만나자고 구두로 하였습니다.

문 : 처음 전민련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사용한 것은 언제인가요.

답 : 1990년 11월 강기훈이 명함을 주어 전민련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으나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문 : 증인은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시험일자과 합격자 발표일자는 언제였나요.

답 : 시험은 1월 20일경이었으며 발표는 2월 초순경이었습니다.

127) 총자료집 I 책 160쪽 참조.

128) 총자료집 I 책 163쪽 참조.

129) 총자료집 I 책 178쪽 참조.

130) 총자료집 I 책 99쪽 참조.

131) 총자료집 I 책 178쪽 참조.

132) 총자료집 I 책 282쪽 참조.

133) 총자료집 I 책 630쪽 참조.

134) 총자료집 I 책 188쪽 참조.

문 : 증인은 강기훈으로부터 김기철은 전민련 사회 부장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한양대 철학과 3학년 을 중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그 외에 달리 소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문 : 김기철은 증인에게 자신의 이름, 가족사항, 학력, 이력 등을 어떻게 소개하였나요.

답 : 증인에게 김기철이라고 하고 자기 후배에게 전화할 때는 한정덕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누님 세 분 계시고 외아들이고 막내며 학력은 한대 철학과 중퇴고 이력은 성남에서 일했다는 정도입니다.

문 : 증인은 김기철이 설날 연휴기간중인 1991년 2월 16일 24:00경 증인의 집 부근에서 술이 취해 증인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돌아다니던 일이 있다고 하였는데 김기철은 어떻게 증인 집의 위치를 알았다고 하였나요.

답 : 슈베르트에서 만나 늦게 집 근처까지 내려다 준 일은 있으나 정확한 위치는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문 : 증인은 1991년 2월 18일경 슈베르트에서 김기철을 만났다고 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2월 18일 위 슈베르트에서 '그때 나의 마음은 패배와 좌절로 어둠과 연기로 자욱하여...'로 시작되는 메모지¹³⁵⁾를 받았다고 하였지요.

답 : 예.

문 : 김기철이 증인에게 그 메모지에 주었을 때 증인은 김기철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받았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1991년 5월 13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분명히 '자기가 낙서한 것인데 잘된 것 같다. 읽어보라'고 말하면서 주었다고 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런데 1991년 5월 17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김기철이 '자기 글씨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다만 자기가 잘 쓴 글이라고 생각된다며 읽어보라고 주었다'고 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그 메모를 받아서 집에 가지고 와 검

135) 총자료집 I 책 105쪽 참조.

찰에 제출할 때까지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읽어보지는 않았고 나중에 읽어보았는데 증인과의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제3의 여자와의 사이에 일어난 일들로 짐작되는 내용이 있어서 기본이 나뉘었다고 하였지요.

답 : 예.

문 : 언제 읽었나요.

답 :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읽었습니다.

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그 메모를 계속 보관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요.

답 : 예.

문 : 위 메모지 외에 김기철로부터 받은 메모나 편지가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김기철이 쓴 다른 메모나 편지를 본 일이 있나요.

답 : 수첩과 4월에 동우전문대에서 녹음한 것을 기록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김기철이 쓴 전대협 노트를 보았습니다.

문 : 지금 보며는 그 노트를 알 수 있나요.

답 : 자신할 수 없습니다.

문 : 그리고 증인은 그 메모를 받은 이후 매주 1-2회씩 김기철을 만나 더욱 친하게 지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위 메모에 대하여 김기철과 이야기해 보지 않았나요.

답 : 전혀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문 : 메모지의 내용 가운데 '그녀의 사려 깊은 마음이 나에게 초 두봉지를 선물하였다. ... 이 시간 당신은 자고 있으리라. ...'라는 문구의 '그녀'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았나요.

답 : 예, 안했습니다.

문 : 증인은 메모지의 '그녀'와 '당신'이 증인 자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이 메모지를 받은 이후 김기철에게 초를 선물한 사실은 없나요.

답 : 전혀 없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이 분신한 이후 유서가 김기설의 글씨가 아닐지 모른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나요

답 : 김기설의 안주머니에서 나와 유서가 가짜라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신문보도 이전 화요일 저녁에 누군가로부터 영안실에서 유서가 김기설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들었으며 김기설의 친구인 한송흙씨가 "티브이를 보면서 김기설의 유서가 맞다"고 하여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이 준 수첩, 메모지와 증인의 수첩에 적혀 있는 김기설의 글씨를 대조하여 본 사실이 있나요

답 : 대조해 보지 않았습니다.

문 : 증인은 1991년 5월 13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 증인의 전민련 수첩과 위 메모지를 휴대하고 가서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증인은 메모지 및 수첩의 제출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사전에 상의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상의한 적은 없고 송명석 검사가 "필적 감정 할 만한 것을 가져오라"고 전화하였고 그후 수사를 받게 되어 전민련에 전화했더니 박선옥이 "꿀릴 것 없다"라고 하여 가져왔습니다.

문 : 증인은 위 메모지를 피고인 강기훈에게 1991년 5월 13일 이전에 보여준 사실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로부터 1991년 3월경 전민련 수첩 1권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전민련 수첩을 받은 시기는 1991년 3월 초순경이었나요

답 : 예.

문 : 그 수첩 중 3월 넷째주(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난에 복지다방 약도를 그려준 사람은 김기설이 맞지요

답 : 예.

문 : 검찰 증거물 7-1호중(수첩) 중 복지다방 약도¹³⁶⁾ 부분 제시.

문 : 거기에 '이대, 홍익서점, 연대, 복지다방' 등의 글씨가 찍어져 있는데 이 글씨는 김기설이 쓴 것이지요

답 : 예, 버스 안에서 쓴 것입니다.

문 : 이 글씨는 김기설의 가족들이 제출한 책표지 글씨나 김기설의 이력서 글씨와는 달리 흘림체로 쓴 것이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복지다방 약도 글씨와 유서의 글씨와 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지요

답 : 예. 육안으로 보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증거물 7-1호(수첩) 제시.

문 : 또한 증인의 수첩 뒷쪽 모눈종이 부분¹³⁷⁾에는 이영미의 외환은행 구좌번호, 김기설의 전화, 기화산 부인과의 약도가 그려진 부분이 있지요

답 : 예.

문 : 이영미의 외환은행 구좌번호는 누가 기재한 것인가요

답 : 이영미가 기재하였습니다.

문 : 기화산부인과의 약도는 이영미가 그려준 것이 맞지요

답 : 예.

문 : 이영미가 기화산부인과의 약도를 그려준 것은 대학선배 방수연이 입원하고 있어서 문병을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이었나요

답 : 91년 봄이었습니다.

문 : 증인은 위 외환은행구좌와 약도 사이에 있는 김기설의 전화, 팩시번호는 1991년 5월 13일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1991년 4월경 어느 카페 안에서 적어 준 것이고 장난으로 낙서한 것 같다'고 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후 1991년 5월 17일 다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 강기훈이 1991년 5월 10일 15:30쯤 봉주르카페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 써 주었다고 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런데 1991년 7월 9일 검찰에서 피고인 강기훈과 대질신문을 받을 때에는 '집에 가서 꼼꼼히 생각하니 누가 써 주었는지 혹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제 수첩에 써 놓은 것인지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피고인이 써 준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요

답 :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며 말한 것인데 이 문제가 기사화되면서 걱정이 되어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제 기억에는 없어진 것입니다.

문 : 5월 10일 강기훈이 쓰지 않은 것은 틀림없나요

답 : 예.

문 : 증인이 1991년 5월 10일 오후 피고인을 만난 것은 증인 쪽에서 자청하여 전민련 사무실 부근에서 만난 것이고,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수첩을 어디에 보관하고 다녔나요

답 : 증인 핸드백에 보관하였습니다.

문 : 증인이 1991년 5월 17일 검찰에서 제시받은 필적은 김기설의 유서, 전민련의 업무일지, 강기훈의 필적 등이었다고 수사기록에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를 제시받았나요

답 : 책표지, 주민등록본실신고서, 유서 및 강기훈 자술서였습니다.

문 : 증인이 강기훈의 필적으로 제시받은 것은 위 문서들 외에 검찰에서 강기훈의 집을 수색하여 압수한 문건 중 증거9-1호 '수신 김정훈, 발신 김명훈'으로 기재된 서신도 있었나요

답 : 예.

문 : 증인이 당시 "예, 모두 같은 필적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그날 피고인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한 것으로 판단하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증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리게 한 이유, 동기,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 문서가 비슷하길래 비슷하다고 했을 뿐입니다.

138) 총자료집 I 책 178쪽 참조.

문 : 비슷하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 : 유서와 증거 9-1호(수신 김정훈, 발신 김명훈)이 가장 확실하게 비슷하다고 한 것입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이 분신하고 난 이후 김기설이 한양대 철학과를 중퇴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답 :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문 : 증인은 피고인이 김기설의 학력을 잘못 알고 있었다가 분신 후 신원확인 과정에서 크게 곤혹을 치러 김기설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을 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김기설을 소개하여 준 강기훈을 원망하는 생각은 갖지 않았나요

답 :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이 고등학교 중퇴자인데 증인에게 준 메모지 내용은 세련되고 문학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김기설이 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강기훈의 메모지를 가지고 와 자기가 쓴 것인양 증인에게 주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졌던가요

답 : 예.

문 : 언제부터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는지요

답 : 검찰에서 처음 조사 받을 때였습니다.

문 : 증인이 1991년 5월 17일 검찰에서 진술할 때 증인은 강기훈, 김기설 등에게 모두 배신당하였다는 기분을 가졌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1991년 5월 17일 김기설, 강기훈에 대한 의혹과 혼란을 품은 상태에서 진술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1991년 5월 17일 검찰에서 조사받은 후 진술서의 내용을 모두 읽어보고 서명 날인하였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강경대군이 전경에 의하여 타살되고 범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된 1991년 4월 27일 이후 1991년 4월 말경에 새벽 2시에 김기설이 술에 취하여 집으로 전화하여 만난 일이 있고, 1991년 5월 2일 19:00

136) 총자료집 I 책 641쪽 참조.

137) 총자료집 I 책 107쪽 참조.

경 서강대 부근의 아카데미카페에서, 그리고 1991년 5월 4일 12:30경에 연대 학생회관에서 만난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답 : 예.

문 : 이 기간중에 김기철은 증인에게 분신하겠다는 의증을 드러낸 일은 없었나요.

답 : 전혀 없었고, 현장에 들어간다는 얘기만 하였습니다.

문 : 현장이란 노동현장, 산업현장을 뜻하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4월 말경 김기철과 02:00경부터 12:00경까지 함께 돌아다녔다고 했는데 그 시각에 어디를 갔었나요.

답 : 카페에 있었고, 서강대 안에서 잔디밭 도로를 걸어다녔습니다.

문 : 김기철은 1991년 3월 17일 춘천에 놀러 갔을 때 증인에게 '우리 결혼합시다'는 말을 하였으나 증인은 그 당시 결혼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안했다고 하였습니다.

답 : 예.

문 : 김기철은 그후에 또 결혼하자는 제의를 한 적이 있지요.

답 : 없었습니다.

문 : 김기철은 증인을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하려고 한 적이 있었나요.

답 :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문 : 김기철은 1991년 3월 말경 증인에게 '전에 술이 취해서 문을 열려고 담을 넘다가 떨어져 머리를 다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김기철이 머리를 다쳤다는 상황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답 : 예,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문 : 김기철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하였나요, 아니면 불유쾌한 표정으로 하였나요.

답 : 별 표정없이 지나가는 투로 얘기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1991. 5. 7. 밤 장준호와 김문정이 증인을 찾아왔을 때 이미 김기철이 증인에게 수첩을 주었다는 사실을 말했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1991. 5. 8. 12:00경 연대 학생회관에 도착하여 이영미와 김진수를 만났었지요.

답 : 예.

문 : 이때 증인이 전민련 관계자에게 수첩을 준 것은 김진수, 이영미가 수첩을 달라고 하여서 준 것이 아니고 바로 그때 전민련 관계자가 연락처가 없어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증인이 자발적으로 수첩을 꺼내준 것이었지요.

답 :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영미가 "수첩을 받았다는데 수첩 있느냐"를 듣고 꺼내준 것은 기억합니다.

문 : 증인과 이영미가 전민련 관계자를 불러온 것인가요.

답 : 부르지 않았으나 쫓아왔습니다.

문 : 증인은 1991년 5월 7일 밤 김기철로부터 분명한 분신자살 의사를 들었나요.

답 : 김기철이 그 당시 분신 얘기를 하길래 증인이 무슨 일이나 문자 김기철이 미루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문 : 분신을 결행할 날짜를 바로 그 다음날로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답 : 예.

문 : 언제 분신하는 것으로 알았나요.

답 : 5월 8일 이후에는 만날 수 없다고 하여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5월 7일 밤에 김기철의 집에도 전화하여 김기철의 아버지에게 어버이날 안부를 대신 전하여 주었지요.

답 : 예.

문 : 그것은 김기철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나요.

답 : 예.

문 : 그 전화에서 증인은 자신이 누구라고 밝혔나요.

답 : 홍성은이라고 했습니다.

문 : 증인이 김기철의 집으로 전화를 걸자 김기철의 아버지가 곧바로 받았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이때 김기철의 부모에게 내일 분신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지요.

답 : 예.

답 : 예.

문 : 증인은 1991년 5월 8일 오후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상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문 : 증인은 1991년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사이에 피고인과는 1991년 5월 8일 오후, 1991년 5월 10일 오후, 1991년 5월 12일 밤에 만난 외에는 달리 만난 일이 없나요.

답 : 그 이외에 5월 10일 저녁에 김진수, 영미 등과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문 : 피고인이 증인을 일부러 만나러 한 것은 아니었고, 장례기간중에 자연스럽게 만났던 것이었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증인에게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지 말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을 들은 것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1991년 5월 10일 피고인을 만났을 때 김기철의 수첩에 관하여 말한 기억은 없으나 이야기하는 중에 수첩 이야기도 나왔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진술하였는데 수첩 이야기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문 : 피고인은 증인에게 수첩에 대하여 관심을 보인 일이 있나요.

답 : 없었습니다.

문 : 증인은 1991년 5월 9일 대책위 사무실에서 김진수, 이정과 함께 검찰조사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중에 '김기철 만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할 때 이영미 이야기는 빼고, 수첩 이야기도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답 : 예.

문 : 피고인 강기훈이 먼저 증인에게 이영미는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피고인을 5월 10일 만났을 때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했었고 그 생각은 전날 김진수, 이정과 의논한 바를 옮긴 것이었지요.

문 :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답 : 그때 감정으로는 그렇게 말했어도 쉽게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 생각치 않았고 밤중에 부모에게 얘기하기도 어려웠으며 그 전에도 어디론가 사라지려는 느낌을 받았으나 그런 일은 발생치 않아 별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문 : 증인은 김기철의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까지 하였으면서 피고인에게 굳이 김기철의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답 : 그때는 반반이었거든요 진짜 죽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만약을 몰라 아버지에게는 전화를 했지만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그리고 제일 친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일이 생기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기훈이에게 전화를 해서 가르쳐주라고 해서 전화한 것입니다.

문 :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이 불러준 전화번호를 적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였지요.

답 :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문 : 통화시간이 짧았지요.

답 : 예, 공중전화여서 짧게 했습니다.

문 : 전화번호를 거듭 불러주었나요.

답 : 두번 불러주었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철이 분신하겠다고 하였지만 증인 자신이 이를 말했고, 설마 그와같은 일이야 일어나겠느냐 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답 : 예, 학생들이 죽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어른이어서 증인으로서도 쉽게 죽으리라고는 생각치 않았습니다.

문 : 김기철은 1991년 5월 7일 이전에도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었던가요.

답 : 그냥 현장에 가서 일하겠다는 말은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문 : 김기철이 사라지겠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1991년 5월 8일 오후 연대 학생회관에서 김기철의 아버지를 만나, 증인이 어제밤 전화드렸던 사람이라고 밝힌 사실이 있나요.

답: 예.
 문: 증인은 1991. 5.13. 몇시에 검찰에 출두하였나
 요
 답: 오후 3-4시경이었습니다.
 문: 증인은 맨처음에 몇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나
 요
 답: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 증인은 제2차로 언제 검찰에 출석하였나
 요
 답: 1991년 5월 17일 낮이었습니다.
 문: 제2차 출석시에는 몇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나
 요
 답: 그날 밤을 세우고 다음날 아침전까지 받았습
 니다.
 문: 증인이 법관 앞에서 진술한 일시는 언제였습
 니까
 답: 1991년 5월 17일 오후 12시 다 되어서 었습
 니다.
 문: 어디에서 었나
 답: 법원 청사에 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와서 조사
 받았습니니다.
 문: 판사실이었나
 답: 모르겠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이후 한동안 피신하였는데 증인이 피신
 한 것은 증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나
 요
 답: 예
 문: 증인이 피신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나
 요
 답: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했기 때문이었습
 니다.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증인은 5. 17. 2차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법원에서 증언하였는데 앞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답하
 기를 5. 17. 2400경 증인신문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사
 실은 5. 17. 1800에 증인신문이 있었고 그후 증인은
 증인신문조서가 완성되면 서명하려고 증인의 아버지
 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기다리다가 법원 직원이 조서
 를 작성한 것을 관계자들과 검토하고 나서 서명날인
 을 한 것이 2400경 이었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또 증인신문을 받은 장소도 이 법정보다는 작
 았지만 당직실이나 판사실이 아니고 신문실이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5. 13 증인이 처음 검찰조사를 받을 때 증인
 의 수첩에 써 있는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김기
 설이 써준 것이고 또 그날 제출한 메모지 역시 김기
 설이 쓴 것이니 필적들을 유서와 대조하여 보라며 김
 사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그날 증인이 김진수, 인재근, 강기훈
 등의 이야기 때문에 수첩의 존재도 밝히지 않는 등
 여러가지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한 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의 수첩에 써 있는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
 번호에 대하여 증인은 그 페이지에 이영미 구좌와 산
 부인과 약도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두 가지가 이미
 기재된 후에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었
 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예, 4월달 이후입니다.
 문: 그래서 검사는 증인에게 증인이 이미 그전부
 터 김기설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여러차례 사무
 실 전화번호로 통화를 하였는데 새삼스럽게 4월달에
 김기설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줄 이유가 없지 않
 느냐고 추궁하였지요
 답: 예.
 문: 그후 증인이 5. 7.에 김기설의 수첩을 받았고
 그것이 전민련측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증인은 5.
 17.에 검찰에 2차 조사를 받게 되었지요
 답: 예.
 문: 그때 증인은 유서,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
 적, 주민등록본실신고서 등과 85년도에 작성된 강기훈
 의 자술서 등을 보고 나서 증인이 수첩의 행방을 감
 춘 이유를 소상하게 진술하면서 증인의 수첩의 글씨
 는 5. 10. 강기훈이 써주었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예.
 문: 그리고 아까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도 증인
 이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증인의 머리 속으
 로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지는 문학에 소질이 있

는 강기훈이가 쓴 것을 김기설이가 자기 것처럼 잘
 썼으니 보라고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대답하
 였지요
 답: 예.
 문: 5. 13에 증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여러
 가지 숨긴 사실이 있었지만 5. 17.은 2차 조사를 받
 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한 날이지요
 답: 예.
 문: 아까 증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에 대하여 강기
 훈 김기설 두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나 혼돈상태에서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5. 17.에 증인
 이 진술할 때 강기훈이 쓰지도 않은 것을 강기훈이
 썼다고 거짓 진술하였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5. 17. 검
 찰에서 진술할 때는 그때 당시에 강기훈이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인가
 요
 답: 목록부담.
 문: 결국 5. 17.에 증인의 수첩에 강기훈이 썼다고
 진술한 것을 거짓진술인가요, 그 당시 강기훈이 쓴 것
 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였나
 요
 답: 목록부담.
 재판장
 증인에게
 문: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
 요
 답: 그때 당시 기훈이형 만나고 나서 정확하게...
 문: 대답하기 거북한가요
 답: 예, 그때 당시에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만약 증인이 강기훈이 써 넣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이 대답하였다면 어떻게 5. 13.에는
 여러가지를 감추고 대답하였다가 5. 17.에는 사실대로
 진술한 증인이 '5월 10일', '오후 3시' '봉주르카페에
 서' 강기훈이 수첩을 보자고 하더니 써주었다고 대답
 을 할 수가 있는가
 요
 답: 목록부담.

문: 또 5. 17.에 증인은 강기훈이 기설이에 대하여
 좋은 추억만 남기고 빨리 잊어버리라고 한 사람이 증
 인의 수첩에 죽은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주
 는데 불쾌하게 생각하였고, 나중에 조사를 받으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 진술하였지요
 답: 예
 문: 그러면 그것도 무슨 짐작으로 말하였다는 것
 인가요
 답: 목록부담.
 재판장
 증인에게
 문: 5. 10. 증인의 수첩에 김기설의 전화번호를 써
 준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신문할 때는 강기훈이 써준
 것이 맞다고 하고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때는 누가
 썼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적어도 5. 10. 강기훈이 써주
 지 않은 것은 확실히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지금
 도 김기설이 직접 써준 것인지 강기훈이 써준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가
 요
 답: 그것에 관하여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구체적
 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써주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
 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제 기억에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문: 피고인과 대질할 때는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혼자 진술할 때는 강기훈이 썼다고 진술하였는데 어
 떤가요
 답: 대질신문하기 전에는 그럴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그렇게 진술했으나 그후 그 사실이 알려져
 꼼꼼히 생각해 본 결과 누가 썼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문: 지금 생각도 누가 써주었는지는 확실히 기억
 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요
 답: 예.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증인은 김기설과 교제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증인과의 사이에 김기설의 교양이나 지적 수준에 관
 하여 서로 이질감이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김기설 명의의 이 사건 유서 2매를 본 일이 있나요.
 답: 예.
 문: 증인이 알고 있는 김기설의 교양이나 지적 수준에 비추어 위 유서내용이 김기설이 쓸 수 없는 정도의 것은 아니지요.
 답: 예.
 문: 김기설은 증인과 만나는 자리에서 동 평소 낙서를 잘하는 습관이 있나요.
 답: 없었습니다.
 문: 90년 말경 이영미가 피고인으로부터 91년도 전민련 수첩("조국은 하나")를 선물받았다고 증인에게 자랑한 일이 있지요.
 답: 예.
 문: 그래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나도 하나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구하면 주겠다고 하였다가 결국 구하지 못하여 증인이 받지 못하였지요.¹³⁹⁾ 검찰 압수물 7-2(메모지 사본)¹⁴⁰⁾ 제시.
 문: 증인은 김기설로부터 이 메모지를 받을 당시 그 내용을 확인하였나요.
 답: 그 자리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니다.
 문: 언제, 어디서 확인하였나요.
 답: 그날 집에 가서 확인하였습니다.
 문: 당시 위 메모지의 내용에 관하여 실제로 있었던 일을 쓴 것이라고 보았나요, 아니면 가상의 상황을 감상적으로 쓴 것이라고 보았나요.
 답: 낙서이므로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위 메모지의 내용을 확인한 후 김기설에게 메모지의 내용이 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일이 있나요.
 답: 없습니니다.
 문: 김기설이 위 메모지를 증인에게 준 후 위 메모지에 관하여 언급한 일이 있나요.
 답: 없습니니다.
 문: 증인이 김기설로부터 위 메모지를 받은 후 검찰에 압수될 때까지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나 증인이

139) 답변이 조서에 빠져 있음.

보관해 온 사실을 말해 준 일이 있나요.
 답: 없습니니다.
 문: 또 검찰에 위 메모지가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말해 준 일이 있나요.
 답: 없습니니다.
 문: 증인은 5월 8일까지 김기설의 가족을 만난 일이 있나요.
 답: 없습니니다.
 문: 피고인이 1991년 5월 8일 12시경 연세대에 도착하였을 때, 김기설의 가족이 와 있었나요.
 답: 안왔습니다.
 문: 증인은 김기설의 가족 중 누가 제일 먼저 연세대에 왔는지 아나요.
 답: 모르겠습니다.
 문: 증인은 5월 8일 당일 김기설의 아버지가 몇시쯤 연세대에 왔는지 아나요.
 답: 저녁이었습니다.
 문: 증인이 알고 있는 김기설은 주관이 뚜렷한 편인가요.
 답: 그렇지 않고 여린 편입니다.
 문: 1991년 5월 23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기자가 증인과의 인터뷰(41)에서 "김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이라고 물으니 증인은 "밤 9시경 음식점에서 함께 이화여대 쪽으로 걸어가던 중 기설씨가 가지고 있던 수첩을 건네주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수첩면 수첩주소란 속에 0표한 한 사람에게 곧바로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유서를 써야 하는 등 신변정리를 위해 집에 가 봐야 한다'고 말하며 나의 손길을 뿌리치고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답변 내용은 사실인가요.
 답: 예.
 문: 당시 김기설이 말하는 집은 그의 자취방을 가리키는 것이었나요.
 답: 예.
 문: 수사기록 269면(42) 제시.
 문: 이것이 증인이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된

140) 총자료집 I 책 105쪽 참조.
 141) 총자료집 I 책 240쪽 참조.
 142) 총자료집 I 책 107쪽 참조.

'조국은 하나' 수첩의 일부분이지요.
 답: 예.
 문: 당시 증인은 이영미의 권유에 따라 방수연의 문병을 갔었나요.
 답: 안갔습니니다.
 문: 방수연이 언제 입원했나요.
 답: 모릅니니다.
 문: 이영미가 쓴 구좌와 약도가 써진 순서는 어떤가요.
 답: 같은 날 연대 모카페에서 구좌 먼저 쓰고 약도는 나중에 쓴 것입니다.
 문: 앞서의 '김기설 743.9127, 0742.8289' 부분은 이영미가 위 기화산부인과의 약도를 그려준 후에 기재된 것인가요.
 답: 예.
 문: 증인은 위 약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전민련 수첩을 김기설로부터 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보여주거나,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말해준 일이 있나요.
 답: 보여준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나 말해준 적은 있습니다.
 문: 증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검사가 앞서의 '그때 나의 마음은 ...'이라고 시작되는 메모지와 위 김기설의 전화번호 기재가 모두 피고인의 글씨라고 하던가요.
 답: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니다.
 문: 증인은 대학동창이고 제일 가까운 여자친구인 이영미를 알고 있나요.
 답: 예.
 문: 증인은 1991년 8월 초순경 이영미와 집에서 10분 가량 통화한 일이 있지요.
 답: 예.
 문: 그리고 1991년 9월 말경 들어서 종로 3가에 있는 서울 씨네마극장에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를 보러간 일이 있지요.
 답: 예.
 문: 당시 영화를 보고 나서 부근 찻집에서 2-3시간 가량 서로 대화를 나누었지요.
 답: 예.
 문: 위 대화중에 자연스럽게 이 사건에 관한 얘

가 오고 갔지요.
 답: 예.
 문: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한 대화중 증인이 이영미에게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거나 이영미가 증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지는 않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가 오고 갔지요.
 답: 예.
 문: 당시 이영미가 김기설 분신전인 5월 7일 밤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전화한 내용에 관하여 물었지요.
 답: 예.
 문: 이에 증인이 "5월 5일 피고인이 술 더 마시고 하는 걸 만류하고 돌아왔는데 궁금해서 5월 6일 전민련 사무실 전화를 거니 피고인이 사무실에 안나왔다고 하더라.", 5월 7일 밤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에 안나왔느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고, 이어서 증인이 전화번호를 말해 주면서 김기설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해 달라고 하였고"고 이영미에게 말하였지요.
 답: 예.
 문: 그래서 이영미가 증인에게 증인이 5월 7일 밤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불러줄 때 김기설 아버지의 전화번호임을 밝혔느냐고 물었는 바, 증인이 그냥 누구의 전화번호인지 말하지 않고 전화번호 숫자만 말해 주었다고 대답하였지요.
 답: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니다.
 문: 실제로 김기설의 전화번호라고 얘기해 주었나요.
 답: 예.
 문: 증인이 5월 7일 밤 피고인에게 전화할 당시 증인이 평소와 다르게 특히 말을 급하게 하거나 당황한 듯한 느낌을 받게 하지는 않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평소 전화 목소리가 작아 상대방으로부터 좀 크게 말해 달라는 말을 들어왔지요.
 답: 목소리는 작으나,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니다.
 문: 증인이 5월 7일 밤 피고인에게 전화하기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전화를 한 일이 있나요.
 답: 없습니니다.

문 : 피고인이 증인에게 피고인의 전민련 명함을 준 일이 있나요.

답 : 예.

문 : 언제, 어디서 주었나요.

답 : 1990년 12월 건대 앞 카페에서 받았습니.

문 : 증인이 명함을 받을 때 피고인이 명함에 피고인의 이름과 집 전화번호 등을 써준 일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5월 7일 밤 증인은 증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나요.

답 : 공중전화에서 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앞서 영화 보고 나서 대화중에 이영미에게 위 5월 7일 밤 통화시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한 것의 의미가 5월 5일 밤 피고인이 증인에게 계속 술을 먹자고 한데 대한 사과의 뜻으로 한 말로 본다고 말하였지요.

답 : 증인이 한 것이 아니라 영미가 하였습니다.

문 : 또 위 영화 후의 대화중에 이영미가 증인에게 "지금도 기훈이형이 유서를 대필하였다고 보느냐"고 묻자 증인이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었지요.

답 : 그런 말이 오고 간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8월 초 전화로 답변했을 때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답 : 예.

문 : 왜 그렇게 답변했나요.

답 : 누가 했는지 정확치 않고 영미가 증인의 친구라서 아니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문 : 그리고 위 영화 후의 대화중에 이영미가 신문 보도를 보니까 증인이 "5월 12일 이영미, 강기훈, 김진수 등과 만났을 때 김진수가 '내가 박래전 분신사건 때나 단국대학교 최덕수 분신사건 때 장례를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는데 이번 김기설 분신사건 장례에서 최대의 실수는 성은이를 등장시킨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마치 무슨 대책회의를 한 것처럼 검찰에서 발표를 하였는데 '최대의 실수' 운운 얘기는 5월 10일 만났을 때 한 얘기고, '최덕수 장례' 운운 얘기는 5월 12일 있었던 얘기가 아니냐고 증인

에게 확인시켜 증인이 맞다고 대답하였지요.

답 : 기억나질 않습니다.

문 : 위 '최대의 실수'라는 용어는 김진수의 평소 말버릇인가요.

답 : 모르겠습니다.

문 : 김진수가 김기설 분신 후 기특이나 상심해 있는 증인을 선배로서 배려하지 못하고 인터뷰에 증인이 나간 것을 실수라고 자책하는 뜻에서 한 말이지요.

답 : 죄책감은 몰라도 증인을 인터뷰에 내보낸 것이 선배로서 후배를 배려치 못한 미안한 감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 "최대의 실수" 부분과 장례말이 같은 날에 하였나요.

답 : 예.

문 : 또 '최덕수 장례' 운운은 김진수가 위 장례식에 가보았는데 준비를 많이 한데 비하여 장례식 당일 분위기가 좋지 않았으나, 김기설 장례는 전날 급히 준비하였으나 고인의 뜻을 충분히 살리는 장례절차였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었지요.

답 : 그 뜻은 모르겠습니다.

문 : 증인이 아는 바의 김진수는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한 편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1991년 5월 7일 신촌 복지다방에서 증인이 김기설로부터 받은 김기설의 전민련 수첩과 관련하여 이 수첩을 원순용에게 건네줄 때까지 특별히 수첩의 형상이나 내용 또는 사용된 필기구의 종류, 색깔 등에 관하여 꼭 기억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바는 없었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앞서의 이영미와 있었던 영화 후의 대화중에서 이영미가 위 수첩에 관하여 물었을 때 "성남에 있을 때 검사가 수첩을 가지고 와서 물었는데 내가 기억하는 대로 말해주었으며, 검사가 보여준 수첩에 내가 김기설로부터 받은 수첩과 다르다고 말한 일은 없다"고 말했지요.

답 : 예,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의 부탁으로 김기설의 자취집에 가서 속초 동우전문대 건과 관련한 녹음테이프를 카

세트에 넣고 들으면서 그 내용을 옮겨쓴 일이 있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위 일을 한 때가 언제인가요.

답 : 4월 5일이나 6일이었습니다.

문 :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였나요.

답 : 오후 2시부터 3시간 정도 했습니다.

문 : 당시 증인, 김기설, 장준호 세 사람이 같이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옮겨쓰는 작업을 하였나요.

답 : 장준호와 증인 둘이서 하고 김기설은 자취방에서 잤습니다.

문 : 당시 김기설이 자기가 평소 쓰던 전대협 노트를 증인에게 주어 증인이 위 노트에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옮겨 썼지요.

답 : 노트를 찢어서 주어 증인이 옮겨 썼습니다.

문 : 당시 장준호는 김기설이 위 노트의 일부를 찢어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옮겨 쓰게 하였나요.

답 : 예.

문 : 증인이 당시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옮겨 오던 노트의 다른 장에는 김기설이 쓴 부분도 있었지요.

답 : 예.

문 : 그 내용을 기억하나요.

답 : 동우전문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변호인측 증거물 증제8호(전대협 노트)157) 제시.

문 : 이 노트 중 증인이 쓴 부분이 있나요.

답 : 찢어진 첫장 앞, 뒤와 다섯째장 앞, 뒤입니다.

문 : 이 노트가 당시 증인이 김기설로부터 받아온 노트가 틀림없나요.

답 : 자신 없습니다.

문 : 노트의 맨 뒤면은 김기설이 쓴 것이가요.

답 : 아닙니다.

문 : 둘째장에서 넷째장까지는 김기설이 쓴 게 아닌가요.

답 : 모르겠습니다. 이것 말고 더 뽁뽁하게 쓴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증인은 위 일을 마친 후 지금까지 위 일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한 일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위 일을 마친 후 지금까지 위 노트를

본 일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5 & 연세대에서 이영미를 만난 일이 있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이영미를 만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 : 12시경이었습니다.

문 : 연세대 어느 곳에서 처음 만났나요.

답 : 학생회관 올라가는 계단에서였습니다.

문 : 증인이 이영미를 연세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증인이 김기설이 분신하였음을 짐작하고 올라 이영미가 계단을 통하여 연세대 학생회관 아래로 내려오면서 증인을 위로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때 이영미도 울었나요.

답 : 예.

문 : 그때 증인은 이영미와 같이 내려오면서 김기설 분신 전날인 5.7. 김기설로부터 그가 쓰던 수첩을 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5 & 연세대에 도착했을 때 전민련 관계자 및 김기설이 전에 일하여 알고 지냈던 성남 민주화청년연합 사람들이 와서 분신사실 확인 및 김기설의 가족 등에게 연락할 방도를 강구하느라고 분주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증인이 전민련 관계자인 원순용에게 위 김기설 수첩을 건네준 후 위와 같이 성민청 사람들이 가족 등과의 연락을 위하여 위 수첩의 떨어진 채로 있는 전화번호 부분을 복사한 사실을 알지요.

답 : 여자, 남자, 각 한 사람이 복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사기록 429면158) 제시.

문 : 여기에 보면 '위와 같이 수첩을 원순용씨에게 준 후 그날 오후 4-5시쯤 ... 여자 한 사람이 수첩의 전화번호를 복사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전민련 소속 남자 한 사람이 한쪽, 귀퉁이를 찢기에 이상히 생각하여 물었더니 한상열 의장님 머무신 곳

157) 총자료집 II책 811쪽 참조.

158) 총자료집 I책 179쪽 참조.

의 전화번호부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문: 증인은 당시 복사본을 가지고 있던 여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나요

답: 저녁 때 박선옥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안경 쓰고 키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문: 당시 복사본을 가지고 있던 여자가 증인에게 복사본을 들고 와서 사람이름 위에 친 동그라미, X표, 빗금친 것 등이 무슨 표시냐고 물어 증인이 동그라미 표시는 반드시 연락해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등으로 김기설이 증인에게 한 말을 전해주었지요

답: 예.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복사본 가진 남자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김기설 후배이며 다리를 좀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김기설 자취방에 처음 가서 김기설 부탁의 녹취작업을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다는 얘기를 해주던가요

답: 자기가 한 것이라며 한 권의 공책을 보여주었습니다.

문: 김기설이 보여준 것이 뜯어졌나요, 붙어 있었나요

답: 뜯어진 부분도 있고 붙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문: 그때 증인이 보았던 것은 몇장쯤 되었나요

답: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문: 많다는 것은 몇장 이상을 얘기하나요

답: 석장 이상입니다.

문: 몇장이나 뜯어주었나요

답: 두세장만 뜯어주었습니다.

문: 어떻게 녹취작업을 하였나요

답: 장준호는 이어폰을 들고 증인은 서준식씨의

것이라는 조그만 녹음기를 들고 하였습니다.

문: 얼마나 작업을 했나요

답: 2장 정도 했습니다.

변호인측 증거물 제8호(노트) 제시.

문: 첫제장과 다섯제장의 앞뒤는 증인이 기재한 것이 틀림없나요

답: 예.

문: 장준호가 한 부분은 어느 것인가요

답: 증인보다 조금 한 것은 기억나나 어느 부분인 줄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문: 넷제장의 앞뒤가 장준호가 쓴 것 아닌가요

답: 그런 것 같습니다.

문: 속초 동우전문대 사건으로 해 갖고 온 녹취부분은 이외에 또 있었나요

답: 예. 더 많았습니다.

문: 2장째 글씨를 본 기억이 있나요

답: 이것은 잘 모르겠고 이것보다 뿔뿔합니다.

문: 둘째, 셋째장의 글씨와 뿔뿔하게 쓰여졌다는 것의 글씨는 같은가요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녹취 작업하면서 김기설이 보여준 노트는 몇장이었나요

답: 2-3장 이상이었습니다.

문: 찢어진 것이 맞나요

답: 예.

문: 김기설이 샘플로 보여준 노트의 글씨와 이 노트의 둘째장, 셋째장 글씨가 비슷한가요

답: 예.

문: 맨 뒤의 글씨는 어떤가요

답: 본 기억이 없습니다.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증인은 아까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증인이 제출한 메모지는 낙서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아닌 가상 상황인지도 모른다고 대답하였지요

답: 예.

문: 그 메모지 내용에 "엇저녁 소주 2잔에 너도 나도 없는 상태로 자네는 이런 이야기를 했네 문제의 식에 결여된 것이 아니냐고 무사 안일한 자기 삶과 소bg적인 사상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너 무 쉽게 철학적 사고를 이해하고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다들 일도 아니었는데 ..."라고 써 있는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있었던 일인 테도 증인은 가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답: 저하고 상관 없는 일이고 저와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문: 증인은 5월 13일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이 메모지는 김기설이가 자기가 쓴 것인데 잘 썼으니 읽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지요

답: 예.

문: 증인이 김기설의 수첩에 대하여 묵비한 것 등이 밝혀져 다시 2차 조사를 받을 때 "제가 제출한 메모지를 김기설로부터 받을 때 자기 글씨라고 말을 하지 않았고 다만 자기가 보기에도 잘 쓴 글이라고 생각 된다며 읽어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지요 수사기록 제435정(45)을 제시.

문: 또 "이제 생각하니 김기설이가 자기 글씨라거나 자기가 썼다고 말한 적도 없었고 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강기훈이가 쓴 것을 읽고보고 근사하다고 생각하여 저에게 준 것으로 짐작됩니다"라고 진술하였지요

답: 예, 제가 처음 조사받을 때는 김기설이 자기가 쓴 것인데 읽어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2회 때에는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문: 5월 12일 밤 "김진수가 성은이를 내세운 것이 최대실수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은 당시에는 여자인 증인을 내세운 점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생각하였다고 변호인에게 대답하였지요

답: 예.

문: 5월 17일 2차 조서를 받을 때 증인은 검사가 알 수도 없는 내용인데도 증인에게 더 할 말이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말하여 보라고 하니가 증인 스스로

145) 총자료집 I 책 178쪽 참조.

검사에게 한 말이지요

답: 예, 5월 12일에는 저의 처지를 생각한 것으로 알았으나 5월 17일 진술할 때는 "최대의 실수"라는 말을 굳이 쓴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검사에게 말하였습니다.

문: 증인은 김기설의 수첩을 검찰이 보여주었을 때 수첩의 상태, 필기구 등 다른 점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특히 5월 7일에 김기설이 증인 말고 만나려 한 다른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하여 특히 이지혜라고 쓰여 있어서 여자이기 때문에 무슨 색깔인지는 눈 여겨 보았나요

답: 예.

문: 증인이 5월 7일 밤에 살펴보았던 김기설의 수첩과 비교하여 볼 때 나중에 검찰이 제시한 수첩을 주신문에서 증인이 대답한 대로 ①수첩이 더 흩어져 있고 ②일정표란에 검은색 펜 또는 수성펜 이외에도 연필, 청색필기구, 녹색하이테크, 분홍색 형광펜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고 ③회원단체 주소 및 전화번호란이 검정색이 아닌 청색으로 쓰여 있고 ④가든호텔이라는 5월 7일자 약속이 검정색이 아닌 녹색하이테크 펜으로 기재되어 있고 ⑤전화번호 기재란이 한장 없게 있고 ⑥모눈종이 부분이 석장 없게 있고 ⑦전화번호 기재란이 검정색이 아닌 청색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⑧절취선이 기억보다 더 매끄러웠다는 여덟 가지가 다른 점은 틀림없나요

답: 예.

문: 5월 7일자 가든호텔에 약속이 검정색이 아닌 녹색하이테크펜으로 기재된 점도 증인이 받은 수첩과 다른 점인가요

답: 예.

변호인 제출 중8호(노트) 제시

문: 이 노트 첫째와 다섯제장이 증인의 글씨이고 또 김기설이 그의 자취방에서 증인에게 보여준 노트는 더 뿔뿔히 글씨가 기재되어 있다고 변호인 신문에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그날 김기설이 증인에게 보여준 노트는 지금 이 노트(중제8호)가 아니지요

답: 그것은 자신 없습니다.

문: 증인이 그날 본 노트는 더 뿔뿔하였다고 하니 이 노트와는 다르지 아니한가요

☐자료 나-8-1 (공판기록 531~532)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판 조서**

제 8 회

사 건 91 고평 1126 자살방조
91 고평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판사 정 일 성
판사 이 영 대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피 고 인 장 기 훈
검 사 신상규, 송명석 및 임 철
변호인 변호사 김창국, 박연철, 이석태, 한기찬
증 인 이보령, 박경민, 이영미, 서준식, 임무영, 고상만, 이동진
증 인 김병희, 최경환, 이효경(각 보고서 미착, 임의)

기 일 1991. 11. 20. 10:00
장 소 제 417 호 법정
법정의 공개여부 공 개
고지된 다음 기일 1991. 11. 27. 10:00

출 석
각 출 석
각 출 석
출 석

재 판 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하거나 이의할 점이 없다는 진술
재 판 장 출석한 증인들(이효경 제외) 별지와 같이 각 신문
증인 이영미에 대한 검사 신상규의 반대신문 도중 피고인과의 대질을 행하였는 바 그 문답
은 증인신문조서에 기재함.
재 판 장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 (변호인)
재 판 장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
할 수 있음을 고지.
피 고 인 별 의견 없음.
재 판 장 변호인의 요청으로 출석한 증인 이효경에 대한 신문은 차회에 하겠다는 고지.
변론 속행

1991. 11. 20.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자료 나-8-2 (공판기록 533~553)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8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평 1126 자살방조
91 고평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증 인 이 보 령
생 년 월 일 1971. 3. 23세
주민등록번호
직 업 학 생
주 거 서울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
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증인은 승의여전 총학생회장이지요

답: 예.

문: 1991. 4. 18. 18:00경 기독교회관에서 동우전문
대 사태에 관한 예배가 있다고 하여 부회장 최수미,
기획부장 민수진과 함께 참석하여 그곳에서 고 김기
설씨를 처음 만났지요

답: 예.

문: 그날 김기설이 상자를 주며 모금을 부탁하여
모금을 한 다음 서준식씨와 함께 지하다방에 내려가
차를 마실 때 서준식이 김기설에게 모금액수를 적어
놓으라고 하자 김기설이 수첩을 꺼내어 모금액을 적
었다지요

답: 예.

문: 그리고 다방에서 나올 때 증인이 김기설에게
"앞으로 연락할 일이 있으면 직통전화로 하라"면서
총학생회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니까 김기설이 수

첩을 다시 꺼내어 적었다지요

답: 예.

문: 모금액을 적을 때와 전화번호를 적을 때와의
시간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답: 길어봤자 30분 정도였습니다.

문: 다방에서 나와 증인 등은 전민련 사무실로 갔
는데 김기설이 "전민련에서 시민결기대회 등을 계획
하고 있으니 참석해 달라"고 하여 증인은 일정 등을
적어달라고 하니 백지였다가 일정이 확실치는 않
다 하면서 결기대회 등의 일시·장소를 적어주었지요

답: 예.

변호인측 증제5호(메모)147) 제시

문: 이것이 그때 김기설이 써준 메모가 틀림없습
니까.

답: 예.

문: 증인은 위 메모지를 가져와 총학생회실 책상
설함에 넣어두었다지요

답: 예.

문: 그후 5. 20.에 전민련에서 학보사 편집장 김지
연에게 "기설에게 원고청탁한 것이 없느냐"는 문의전
화가 왔고 증인은 위 메모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
더니 만나자고 하여 명동성당에 찾아가 서준식씨에게
위 메모를 전달하였다는데 그렇습니까.

답: 예.

문: 그리고 다음날 기자회견 때 위 메모에 관한
얘기를 하였지요

답: 예.

문: 김기설이 위 메모를 쓸 때 서준식은 보지 않
았습니까.

답: 예.

문: 증인은 전민련의 연락을 받고 명동성당에 갈
때 위 메모를 2매 복사하여서 부회장에게 맡기고 원
본을 가지고 갔다지요

답: 예. 그런데 2매가 아니고 3-4매였습니다.

문: 기록을 보면 증인 등 세 사람은 6. 13과 6. 14.
에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였
습니까.

답: 예.

147) 자료집 II책 798쪽 참조.

문 : 6. 13에는 어떤 조사를 얼마동안 받았습니까.
 답 : 1시간 가량 자술서를 썼습니다.
 문 : 6. 14에는 어떠하였습니까.
 답 : 증인 최수미와 민수진이 함께 가서 아침 10시 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조사받았습니다.
 문 : 검찰에서 조사받는 동안 외부와 전화연락은 할 수 있었습니까.
 답 : 없었습니다.
 문 : 식사는 하였습니까.
 답 : 예.
 문 : 어떤 부분을 추궁받았나요.
 답 : 메모지 원본과 사본이 바뀌지 않았는가와 검찰에 제출한 사본이 메모지 원본을 복사한 것이 틀림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궁받았습니다.
 문 : 검찰에 제출한 사본이 메모지 원본을 복사한 것이 틀림없나요.
 답 : 예.
 문 : 최수미, 민수진은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받았습니까.
 답 : 예.
 문 :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 사본은 5. 20에 복사해 놓았던 3-4중 하나인가요.
 답 : 예.
 문 : 이것은 증인이 쓴 자술서인데 모두 증인 입의 로 쓴 것인가요.
 답 : 자술서 쓸 때 정신이 없었습니다.
 문 : 검찰에서 추궁하고 그 결과를 썼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 2회 자술서 중 검사가 보여준 김기설의 필적 과 강기훈의 필적을 비교해 보고 "검사가 강기훈의 글씨라고 보여준 필적과는 같은 것 같다"라는 대목이 있는데(수사기록 602쪽)150) 누구의 어떤 필적과 어떤 것이 같은 것 같다는 것인가요.
 답 : 유서와 검찰측이 제시한 김기설이 쓴 자료들 과는 다르고 유서와 강기훈의 노트와 비슷하지 않스

148) 총자료집 I 책 371쪽 참조.

나고 반복하여 묻길래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문 : 검찰측이 보여준 김기설 필적은 어떤 것인가요.
 답 : 이력서와 주민등록본실신고서 등입니다.
 검찰측 증거물 증12-5호(대학노트)151) 및 증9-111~116호152) 각 제시
 문 : 본적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강기훈 필적이라고 제시받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답 : 강기훈씨 학습노트 등이었습니다.
 문 : 유서와 강기훈의 필적이 비슷하다고 진술한 것은 증인 생각이 아닌가요.
 답 : 당시 너무 지쳐서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문 : 3회 자술서에는 '김기설씨 수첩, 자세히 기억 은 나지 않지만 검정 볼펜...', 그런데 검찰측에서 제 시한 수첩을 보니 모금액액은 연필로 되어 있고 전화 번호는 하늘색 볼펜 또는 하이테크 펜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 등 3인이 4. 18 김기설이 수첩에 모금액 액 등을 쓸 때 필기구가 검정색 볼펜 같다는 기억이 나서 그와 같이 진술서를 쓴 것입니까.
 답 : 기억이 난 것이 아니라, 검찰 추궁에 따라 대 부분 사람들이 검정색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 게 진술하였습니다.
 문 : 또 3회 진술서에 '6월 8일 ... 이석태 변호사 가 원본을 21일 기자회견 후에 서준씨를 줬다 해도 상관없다 하여'라고 적었는데, 당시 이 변호사가 증인 에게 20일에 원본을 줬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하던가 요.
 답 : 검찰청에 가기 전에 이석태 변호사를 만났는 데 이석태 변호사가 "검찰에 갈 때 자료 있느냐 즉 메모지 있느냐"고 물어 증인이 "원본 가져오기 전에 사본 몇장 복사해 두었다"고 하자 이 변호사 "잘 해 냈다"며 "그것 가져가면 되겠다"고 하여 증인이 "그 령다"고 하는 얘기를 하며 이 변호사의 의견은 "하도

149) 총자료집 I 책 380쪽 참조.
 150) 총자료집 I 책 372쪽 참조.
 151) 총자료집 I 책 777쪽 참조.
 152) 총자료집 I 책 702쪽 참조.

검찰측에서 우겨대는 부분이 있으니 즉 맞는 것도 안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전에 사본을 미 리 복사해 두었다면 원본은 그날 주었다고 얘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말 라"고 얘기하여 증인은 검찰청에 가서 처음에는 "원 본은 기자회견 후에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 : 증인의 자술서나 최수미, 민수진의 자술서를 보면, 검찰에서 증인 등에게 증점적으로 추궁했던 것 은 김기설이 써준 메모지가 바뀌었을 가능성과 김기 설이 수첩에 모금액 등을 쓸 때의 필기구에 관한 것 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답 : 예.
 문 : 검찰에서는 위 두 가지점에 관하여 증인에게 어떤 식으로 추궁하던가요.
 답 : 첫번째 메모지가 바뀌었을 가능성에 관하여는 증인이 책상서랍에 원본을 넣어놓지도 않고 넣어놓았 다고 거짓 진술하였을 가능성과 사본을 수미나 수진 등 전민련과 관계되는 사람이 와서 바꿔치기 하지 않 았을까 하는 가능성에 관한 추궁이었으며 두번째 필 기구 색깔에 관하여는 무슨 색깔이나 어떤 도구였나 등의 추궁이었습니다.
 문 : 증인은 강기훈 피고인을 언제 처음 보았습니 까.
 답 : 91. 5. 21. 명동성당 기자회견 때였습니다.
 문 : 증인이나 학생회 간부 가운데 전민련 관계자 와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이나 다른 학생회 간부들이 전민련과 접 촉한 것은 4. 18 김기설을 만난 것이 처음입니까.
 답 : 예, 4. 18이 처음이었습니다.
 문 : 그리고 위 메모 때문에 명동성당에 간 것이 두번째가 됩니까.
 답 : 예.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이번 증인 소환장(91. 11. 20. 10:00자) 을 받은 후 누구와 의논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이 검찰조사시 장시간 추궁받은 이유는 김기설 메모가 승의여전에서 복사해 원본을 전민련측 에 넘겨진 것이 5. 20.이나 5. 21.이냐에 관해 엇갈리 어서였나요.
 답 : 예.
 문 : 자술서를 정신없이 작성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답 : 아침 일찍 10시에 가서 조사받고 검사가 수시 로 왔다갔다 하면서 수진이는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 등 여러가지로 추궁하여 무슨 질문을 했 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사기록 제602면153) 제시
 문 : 이 자술서 중 " 나는 내가 제시한 이 메모에 대하여 ... 같은 것 같다"고 한 부분은 증인이 제시 한 메모와 강기훈이 필적이 같다는 것이지 변호인 신 문에서와 같이 유서와 강기훈의 필적이 같다는 뜻은 아니지요.
 답 : 예, 증인이 제출한 메모지와 강기훈의 필적이 같다는 뜻입니다.
 문 : 증인은 1991. 6. 13. 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 하여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한 일이 있는데 사실대로 기재하고 서명 무인하였나요.
 수사기록 596-603, 621-622정 제시
 답 : 예.
 문 : 증인은 본 법정 변호인 신문에서 91. 6. 13. 혼 자 검찰청에 와서 조사받았고, 6. 14. 증인의 민수진, 최수미 등 3인이 함께 와서 조사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은 6. 10. 처음 검찰청에 와서 같이 명동성당에 갔거나 기자회견한 친구들 다시 말하면 민수진이나 최수미 등과 같이 올 수 있느냐고 하여 증인이 돌아 가 3인이 같이 온 것이 6. 13이 아닌가요.
 답 : 예, 6. 10.에 처음 혼자 갔고 6. 13.에 민수진, 최수미와 함께 출석한 것이 맞습니다.
 문 : 외부와 전화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장시간 조사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은 각 검사실에서 증인, 민수진, 최수미 각자에게 자기 집에 전화해서 부모님 검사실에 와 있어도 좋다고 전화하도록 하지 않았나 요.
 답 : 없습니다.
 153) 총자료집 I 책 372쪽 참조.

답 : 증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 : 정말 하지 않았나요.

답 : 맨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못하게 했었고 밤이 늦었다고 하자 검사나 혹은 다른 사람이 전화를 돌려서 증인을 바꾸어준 적은 있습니다.

문 : 그러면 그날 증인의 어머니가 전화연락을 받고 검사실에 왔던 것은 사실인가요.

답 : 예. 증인과 검사가 검사실 안쪽방에 있었고 어머니가 검사실의 문을 열어둔 채 바깥방에 앉아 안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문 : 그날 증인과 민수진, 최수미는 같이 와서 각자 다른 검사실에서 조사받고 난 후에 세 사람이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요.

답 : 예. 수미를 먼저 택시 태워 보내고 수진이와 증인은 함께 갔습니다.

문 : 그날 세 사람이 와서 진술할 때 "원본을 복사해 갔다"고 진술한 사람도 있었고 "원본을 가지고 명동성당에 가서 서준식과 그 옆에 있던 전민련 관계자에게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사본을 하나 해 주길래 받아가지고 왔다"고 하여 틀린 진술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답 : 증인이 검사를 통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문 : 또 원본을 5. 20. 명동성당에 가서 전민련에 주었느냐 아니면 5. 21. 기자회견 후에 주었느냐 하는 부분도 서로 틀렸기 때문이지요.

답 : 예.

문 : 위 두 가지 엇갈리는 진술 때문에 장기간 계속 추궁받은 것인가요.

답 : 예.

문 : 자술서를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썼다고 진술을 했는데 어떤가요.

답 : 아침 일찍 10시부터 긴장된 상태에서 검찰청에 들어갔고 세명이 각자 독방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으며 검사가 수시로 들락거리며 "수진이 바뀌치기 하지 않았을까" 혹은 "수미가 바뀌치기 하지 않았을까" 하였을 때 증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너는 네 얘기만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였으며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가지 방향으로 하여 질문이 딱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

였습니다.

문 : 그러면 당시 정신이 없어서 증인이 쓴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인가요.

답 : 자술서 마지막 부분들은 증인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쓴 것입니다.

문 : 사본 작성시기, 원본 건네준 시기, 필기구의 종류 그리고 다방에서 목요일에 현금액을 적어준 시기와 전화번호를 적어준 시기와 차이에 대해 자술서에 쓰여진 내용이 증인이 정신없이 썼다는 것인가요.

답 : 필기구의 종류에 관해서는 기억이 없고 나머지 점들은 자술서에서 정확히 진술했습니다.

수사기록 601면(54) 제시

문 : 여기 "나는 내가 제시한 이 메모가 누구 글씨인가에 대하여 검사의 설명을 들었는데 검사가 김기설의 누나가 선물한 책 속표지의 글씨, 김기설씨의 주민등록분실신고서, 김기설의 이력서, 김기설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강기훈의 자술서, 대학노트, 회의록의 필적들과 비교, 검사가 강기훈의 글씨라고 보여준 필적과는 같은 것 같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말뜻은 지금 진술인이 제출한 메모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다시 말하면 제시한 메모가 누구 글씨냐 그래서 기설이 글씨 4가지와 강기훈의 자술서, 대학노트, 회의록 필적들을 비교해 보았는데 검사가 강기훈의 글씨라고 보여준 필적 즉 자술서, 대학노트, 회의록 필적과 같은 것 같다고 작성한 것이지요.

답 :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검사가 그중 일부분을 체크해 주면서 같은 것 같지 않느냐고 하여 증인이 제출한 메모지는 강기훈의 글씨 같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문 : 변호인이 신문할 때는 증인이 자술서를 쓸 때 위 강기훈의 자술서, 대학노트, 회의록 필적들과 유사와 같지 않느냐는 점을 묻은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메모지와 같은지 여부를 묻은 것이지요.

답 :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문 : 증인은 91. 4. 18. 전민련측의 요청으로 기록

154) 총자료집 I 책 371쪽 참조.

회관에서 있었던 속초 동우전문대 관련 목요일에 승의여자전문대학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회 간부인 민수진, 최수미와 같이 참석한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날 밤 예배후 증인과 민수진, 최수미 3명은 전민련의 김기설, 서준식과 지하에 있는 귀빈다방에 내려가 차를 마신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곳에서 예배때 모금한 돈을 세어보고 이를 서준식이 가져갔나요.

답 : 예.

문 : 그 자리에서 김기설은 자신의 수첩을 꺼내서 검정색 필기구로 목요일에 현금액수 36,800원과 승의여전 총학생회 직통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나요.

답 : 필기도구는 자세히 모르겠고 쓴 내용은 위와 같으며 처음에는 목요일에 현금액을 쓰고 얘기하고 나서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수사기록 599정(155) 제시

문 : 증인은 물론 그날 함께 있었던 최수미, 민수진도 위와 같은 사실을 보았고 증인 및 최수미, 민수진은 91. 6. 13. 검찰에 출두하여 처음 각자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서 목요일에 현금액 36,800원과 승의여전 총학생회 전화번호를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계통의 같은 필기구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답 : 같은 필기구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문 :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것이라며 제출한 수첩에는 목요일에 현금액 36,800원은 연필로 기재되어 있고 승의여전 총학생회 전화번호는 청색 필기구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여 주자 증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하였지요.

답 : 예.

문 : 처음에는 같은 필기구인 것 같다고 하여 수첩을 보여주자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다가 지금 위서는 목요일에 현금액을 먼저 쓰고 약 30분 후에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가요.

답 : 같은 필기구인 것 같다는 진술을 하긴 하였으나 확실한 기억은 아니며 목요일에 현금액을 먼저 쓰

155) 총자료집 I 책 371쪽 참조.

고 얘기를 하다가 전화번호를 써준 것이 맞습니다.

문 : 증인과 최수미, 민수진은 91. 4. 18. 위 목요일에 배에서 김기설을 처음 보았지요.

답 : 예.

문 : 그 후 91. 5. 20. 저녁에 증인은 명동성당에 가서 김기설로부터 받았다는 메모지라는 것을 전민련측에 넘겨주었다가 다음날인 5. 21. 오후 다시 되돌려받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런데 증인과 최수미, 민수진은 6. 12. 검찰에서 첫 진술서를 작성할 때 사실과 달리 김기설이 모금을 부탁하며 집회일정을 써준 메모지를 5. 21. 오후 2시 명동성당에 가지고 가서 기자회견을 한 후 비로소 전민련측에 넘겨 주었다고 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검찰의 출석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채 91. 6. 8. 오후 3시 30분쯤 민수진과 함께 명동성당에 가서 전민련 관계자 및 변호사를 만난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곳에서 증인과 민수진은 한 사람씩 검찰에 출석할 경우 답변할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와 일문일답식으로 상의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 자리에서 변호사는 증인과 민수진에게 검찰에 가서 진술할 때 김기설로부터 받았다는 메모지 원본을 5. 20. 저녁에 전민련에 넘겨 주었다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하였나.

답 : 지시받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진술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 변호사가 말을 하며 일어서 하라고 하였 습니다.

문 : 위와 같은 변호사의 뜻에 따라 증인과 민수진은 6. 13. 검찰에 출석했을 때 처음에는 사실은 5. 20. 저녁에 메모지 원본을 전민련측에 넘겨주었다가 다음날 되돌려 받아서 이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와 달리 5. 21. 기자회견 후 메모지를 준 것처럼 진술을 하였지요.

답 : 예.

문 : 변호사가 위와 같이 거짓진술을 시킨 이유를

알고 있나요

답: 예.

문: 6. 8. 명동성당에서 증인에게 위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말한 변호사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나요

답: 예.

문: 그 변호사가 지금 변호인석에 있으면 지목하여 보시오

답: 이석태 변호사입니다.

수사기록 622정¹⁵⁶⁾ 제시

문: 증인은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증인이 6. 10. 검찰에 제시한 메모지가 4. 18. 김기설이 써준 것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고 자필로 기재하였지요

답: 증인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처음 검찰청에 간 6. 10.에 진술서를 작성했나요

답: 예. 간단하게 작성했습니다.

문: 6. 13.에 검찰청에 갔을 때 자술서 작성시각을 기억하나요

답: 기억나질 않습니다.

수사기록 622면 제시

문: 이것은 6. 14. 00:00부터 00:20 사이 작성했나요

답: 예.

수사기록 601면¹⁵⁷⁾ 5행 제시

문: 이증 난외로 기재된 것은 임의로 쓴 것인가요

답: 다 쓰고 나서 나중에 검사와 얘기되어서 추가된 것입니다.

문: 유서와 같은지 어떤지 모르겠다고 쓴 부분을 증인이 임의로 지우고 계속 쓴 것인가요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사기록 602면 제시

문: 검사가 불러준 것을 증인이 쓴 것인가요

답: 예.

156) 총자료집 I 책 380쪽 참조.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어머니가 몇시에 왔느냐.

답: 밤 9시에 왔습니다.

문: 어머니가 와서 내 딸을 내보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답: 여러번 있었습니다.

1991. 11. 20.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 증인 선서서 <생략> (수사기록 554)

자료 나-8-3 (공판기록 555~563)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8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평 1126 자살방조

91 고평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증 인 박 경 민

생 년 월 일 1965. 10. 24 생

주민등록번호

직 업 회 사 원

주 거 서울: --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증인은 김기설을 1990. 2. 대유공전 총학생회 의실에서 처음 만나 성남민청련 소속 "한정덕"으로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학생회장 정동원으로부터 1990. 5.경 "한정덕"이 천안방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하였는데, 증인은 그후 더 정확한 내용을 듣지 못하였나요

답: 예.

문: 대유공전 학생회 간부 중 김기설을 양친회병원으로 문병간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김기설은 대유공전의 학내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었고, 학보에 수차례 논설을 기고한 사실을 증인

은 알고 있나요

답: 예.

문: 기재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답: 5월 항쟁(광주사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문: 증인이 1991. 3. 방통대에 입학하여 "소리새벽" 모임 회원이 된 후 이 모임을 이끌어줄 선배로서 김기설을 생각하였는데 어떠한 리더가 되어주기를 바랐던가요

답: 소리새벽의 전회원이 아니라 그중 일부 소수 그룹에 대하여 사회정세-의식 등의 지도를 하여 주기를 바랐습니다.

문: 1991. 5. 5. 10:00경 증인을 포함한 소리새벽회원 6명은 방통대 동아리 사무실에서 모여 김기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회원 중 송국영, 이지혜는 김기설로부터 같은 날 밤 처음으로 분신계획을 들었던 사람이 되었지요

답: 예.

문: 그 모임에서의 대화는 먼저 자기소개를 하면서부터 시작된 모양인데, 김기설 본인도 집안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누나 이야기, 아버님, 새어머님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나요

답: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문: 증인은 이지혜, 송국영으로부터 김기설이 분신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도 거의 믿지 않았나요

답: 반신반의 했습니다.

문: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1991. 5. 7. 20:00경에 범국민대책위 및 천민련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지요

답: 예.

문: 증인에게는 분신자살에 관해 일언반구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요

답: 예.

문: 1991. 5. 중앙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밤 12시에 증인 집 앞에서 기자가 기다려서 인터뷰했습니다.

문: 당시 증인이 김기설의 글씨를 알게 된 경위와 김기설에게는 두 가지 필체가 있다고 한 근거는 무엇

157) 총자료집 I 책 371쪽 참조.

인가요

답 : 총학생회 학습부장으로 일할 때 김기설의 원고 30매를 대중 보고 가끔 같이 다니면서 업무수첩을 보았고 1991. 5. 5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소개할 때 김기설이 메모하면서 잘 쓰려고 하며는 못쓰고 못쓰려고 하면 잘 쓴다고 하여 김기설에게 두 가지 글씨체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축 4-1호(대유공전 원고)¹⁷²⁾ 제시

문 : 이것이 김기설의 원고인가요

답 : 예.

문 : 누가 찾았나요

답 : 증인이 학보사에 의뢰하여 후배가 갖다 주었습니다.

문 : 제출경위는 어떻습니까

답 : 증인 캐비닛에 넣어 두었고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 이영복이란 이름으로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김기설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사 임 칠

증인에게

문 : 증인은 90. 2말경 대유공전 2학년으로 복학하여 동교 총학생회 학예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김기설을 처음 만나게 되었지요

답 : 예.

문 : 당시 김기설은 이름을 "한정덕", 경력은 "한양대 철학과 중퇴"라고 거짓 소개하였고 그의 성남 민청련 소속원이라고 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후 3 중순경까지 김기설이 몇번 총학생회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6경까지 집회시 수회 본 적이 있지요 3 중순경 이후에는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91. 5. 8 연대 대책위에 전화를 걸어 김기설이 같은 날 07:00경 서강대에서 분신한 사실을 듣고, 혹시 집회때 분신하지 않을까 생각하였는데 이

172) 총자료집 II책 794쪽 참조.

른 아침에 분신하였다니 이해가 안간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김기설이 대유공전 학보에 원고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알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90. 2 중순경 학보를 발간하기 위하여 원고정리할 때 원고 명의자가 이영복이어서 학보사에 이영복이 누구인지 문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문 : 증인이 김기설의 글씨체를 알고 있으며 그 원고가 김기설의 필체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검찰조사시 김기설의 필체를 모른다고 했지요

답 : 예.

문 : 유서대필 여부가 이 사건의 중요한 관점인데도 수회 검찰조사시 위 원고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기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문 : 변호인에게는 어떠한 경위로 그 원고에 대하여 이야기 하게 되었는지요

답 : 변호인을 만난 일이 없으며 학생회 탈퇴 후 원고의 행방에 대하여 모릅니다.

문 : 그 원고는 90. 6. 초 이영복 명의로 투고되어 6. 7.자 대유학보에 게재되었는데 증인의 진술과 다르며 또한 증인은 90. 2 말경 복학하여 학생회 일을 보지 않았는지요

답 : 원고의 내용이 광주사태를 다룬 것이어서 2월에 받았다가 6월에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복학 전에 이미 학생회 일에 관여하였습니다.

문 : 또한 김병희의 진술에 의하면 91. 5. 18부터 5. 20.까지 사이에 대유공전에 제출된 김기설의 원고가 있다는 것을 듣고 확인하려 갔더니 없다고 하여 돌아왔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모릅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의 필체가 2가지라고 알고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 김기설이 잘 쓰려고 하면 글씨체가 나쁘고 못

쓰려고 하면 잘 써진다고 말한 사실이 있어 이를 근거로 2가지 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 : 2가지 필체의 상이점은 무엇이며, 다른 사람의 필체와 식별할 수 있는가요

답 : 상이점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문 : 검찰에서 김기설의 필체를 모른다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글씨체를 잘 알고 김기설이 2가지 필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김기설의 글씨체를 몇번 본적이 있어 알고 있습니다.

문 : 과연 증인이 김기설의 필체를 잘 알고 2가지 필체를 식별할 만큼 서로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답 : 김기설의 필체를 알고 2가지 필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여러번 만났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1991. 11. 20.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 증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564)

☐자료 나-8-4 (공판기록 565~581)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8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탈 1126 자살방조
91 고탈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증 인 이 영 미
생 년 월 일 1967. 6. 5. 생
주민등록번호
직 업 학원 강사
주 거 서울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
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증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이고, 1991. 5. 8. 분
신자살한 김기철은 피고인이 홍성운을 김기철에게 소
개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만나 알게 되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1991. 5. 8. 김기철의 분신소식을 듣고
연세대학교에 가서 피고인의 후배되는 김진수와 함께
학생회관 3층 상황실 입구에서 홍성운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당시 홍성운이 몹시 충격을 받은 듯이
보여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위로하고자 3층
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내려왔지요.

답 : 예.

문 : 당시 홍성운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증인에게
전날밤 김기철을 만났던 정황을 말해 주던가요.

답 : 예.

문 : 대개 어떤 내용이었나요.

답 : 그전날 7시 정도에 김기철과 만나 분신에 관
련된 이야기를 했고 헤어지고 나서 8일 새벽 김기철
이 전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 : 그때 김기철이 당시 홍성운에게 건네준 수첩
얘기도 있었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위와 같이 홍성운을 데리고 나와 학생
회관 뒷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원순용으로
알게 될 전민련 관계자가 와 김진수도 있는 자리에서
홍성운이 위 수첩을 증인에게 건네주었나요.

답 : 예.

문 : 검찰에서 작성된 증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증인이 홍성운을 만나기 전에 학생회관 3층으로 올라
가면서 전민련 소속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첩 얘기를
듣고 홍성운을 만나 소지하고 있느냐고 물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증인은 그후 위 김기철의 수첩을 본 일이 있
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철 분신 후 5. 10.과 5. 12. 피고인,
김진수, 홍성운과 함께 만난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5. 10. 피고인 등 세 사람과 함께 만나
게 된 경위가 어떤가요.

답 : 5. 8. 증인한테 홍성운이 만나자고 전화와서
셋이 만나 추모집회에 같이 있다가 강기훈에게 전화
해서 만났습니다.

문 : 당시 만나서 주로 어떤 내용의 얘기들을 하였
나요.

답 : 주로 추모집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문 : 당시 대화중에 김진수가 5. 8. 기자회견에 홍
성운을 내보낸 것을 자책하면서 '최대의 실수다' 라는
표현을 쓴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김진수가 그때 한 '최대의 실수' 라는 표현은
그날 처음 쓴 것이었나요, 아니면 말버릇인가요.

답 : 말버릇이었습니다.

문 : 어떤 맥락에서 당시 김진수가 그런 말을 하였
나요.

답 : 홍성운이 기자회견에 나간 것을 알아본 사람
이 있어서 기자회견에 홍성운을 내보낸 것이 직장문
제에 대하여 실수다라는 것입니다.

문 : 5. 12.은 김기철의 장례일이었나요.

답 : 예.

문 : 5. 12.이 본래 예정된 장례일이었나요.

답 : 본래 5. 14. 강경대와 함께 장례하려고 했는데
강경대측에서 반대하여 5. 12.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문 : 그날 증인과 피고인 등 네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가 어떤가요.

답 : 성은이, 진수선배 및 증인은 전화로 장례에 참
여하기로 미리 약속했었고, 장례행렬이 전민련 사무실
에 들렀는데 그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을 만나 같이
갔습니다.

문 : 당시 만나서 주로 어떤 내용의 얘기들을 하였
나요.

답 : 장례식 얘기와 성은이를 위로하는 내용이었습
니다.

문 : 당시 대화중에 김진수가 "내가 박래전 분신사
건 때나 최덕수 분신사건때 장례를 직·간접적으로 지
원하였는데..." 운운 부분의 말을 한 일이 있지요.

답 : 지원한 게 아니라 참석한 것으로 말했습니다.

문 :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을 하였나요.

답 : 최덕수나 박래전 장례때는 그 준비를 오랜 기
간 하였는데 김기철때는 준비기간은 짧았으나 열사의
가신 뜻에는 어긋나지는 않았다는 얘기였습니다.

문 : 증인은 위와 같이 김진수가 한 말중 "최대의
실수" 운운 부분과 "박래전 장례식" 운운 부분은 애
기한 날짜가 다르고 얘기의 맥락도 이제 증인이 진술
한 바와 같은데, 검찰에서 홍성운의 진술이라고 인용
하면서 마치 한날에 증인과 김진수 등이 모여 마치
무슨 대책회의라도 한 것처럼 발표되어, 1991. 9. 말경
홍성운과 영화를 보고 난 후 홍성운에게 기억을 되새
기게 하여 증인의 기억이 사실임을 서로 확인한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언제 처음, 어디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서대필 혐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나요.

답 : 5. 18. 검찰 조사 후 집에 돌아와 7시 조금 넘
어 텔레비 뉴스를 보고 처음 짐작하였습니다.

문 : 그 이전까지는 홍성운이 5. 7. 밤 김기철과 같
이 있으면서 분신하겠다는 말을 들은 관계로 관심이
주로 홍성운의 신변에 관한 것이었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1991. 5. 16. 08:30경 검찰에 강제연행
되어 1991. 5. 18. 18:00경까지 조사받았지요.

답 : 예.

문 : 당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의사표현
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답 : 연행된 게 16일 6시경이었는데 그날 밤을 세
우고 그 다음날 8시 정도에 조사가 끝나고 그 다음
휴식을 취하여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문 : 증인은 위 조사 이전까지 피고인을 따로 만난
일이 있지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홍성운에게 앞서 영화보고 난 자리에서
"넌 언제 처음 기훈이형이 유서대필자로 의심받고
있는 줄 알았니"라고 물어본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때 홍성운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답 : 5. 17. 새벽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문 : 증인은 또 당시 홍성운에게 "1991. 5. 7. 밤 기
훈이형에게 전화걸 때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김기철
아버지 전화번호라고 밝혔니"라고 물어본 일이 있지
요.

답 : 예.

문 : 그때 홍성운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답 : 전화해서 전화번호만 불러주고 아버지 전화번
호라고 한 적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문 : 증인은 또 당시 홍성운으로부터 검찰에서 처
음에 홍성운이 5. 7. 밤 김기철로부터 받은 수첩 얘
기를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말한 사실을 듣고 처음부터
검찰에 수첩 얘기 안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때 홍성은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답 : 고인의 유품이었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 : 증인은 또 그 자리에서 홍성은에게 "너 신문에 보니까 전민련측에서 제출한 김기철 수첩을 내가 보니 아닌 것 같더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이야"고 물어본 일이 있나요.
답 : 예.

문 :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답 : 수첩을 받은 게 5. 7. 저녁이었는데 그날은 자세히 본 게 아니어서 검찰측에서 보여주고 맞느냐고 물어보자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 : 증인은 1991. 5. 16.부터 5. 18.까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필적관계도 조사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문 : 당시 검찰에서 이 메모를 증인에게 보여준 일이 있나요.
답 : 예.

문 : 위 두 가지 외에 또 어떤 필적자료를 보았나요.
답 : 강기훈이 어렸을 때 동생에게 선물로 주면서 서명한 일기장 형식으로 된 것과 또 내용은 기억이 안나는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문 : 검사가 위 자료들을 증인에게 제시하며 이중 피고인의 글씨가 어느 것이냐 물은 바 있나요.
답 : 예.

문 : 증인이 뭐라고 답변하였나요.
답 : 메모지는 아니라고 했고 증9-1호도 아니라고 했으며 나머지 둘 중의 일기장 형식 아닌 다른 자료는 강기훈이 쓴 것 같고 일기장 형식의 것은 글씨는 모르겠으나 내용으로 보아 강기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 증인의 답변후 검사가 잠시 조사실 밖으로 나갔다 오더니, "왜 거짓말 하느냐. 이 글씨가 피고인의 집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하며 억박지른 일이 있

159) 총자료집 I 책 105쪽 참조.

나오.
답 : 예.

문 : 당시 검사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한 글씨가 어느 것인가요.
답 : 예. 증7-2호 및 증9-1호입니다.

문 : 그래서 증인은 특히 앞서의 압수물 증7-2의 메모에 관하여 증인이 피고인과 교제한 경험에 비추어 이 메모는 글씨도 낫설고 내용도 피고인이 쓴 게 아니라고 답변하였나요.
답 : 예.

문 : 증인이 보기에 어떤 내용이 특히 그러한가요.
답 : 초 두봉지를 선물한 적도 없고 증인이 사려깊은 성격도 아니어서 증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강기훈 자신이 기회주의적 허무주의적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며 어떤 여자에 대하여 써놓은 것 중에 '당신은 지금 자고 있으리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증인한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으며 거의 끝부분에 '새해 이제 스물 일곱, 적어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강기훈 선배님은 증인한테 28세라고 했으며 글씨가 크더라고 얘기했습니다.

문 : 그런 얘기를 검사에게 얘기했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과거에 피고인으로부터 편지를 받거나 낙서한 것을 받은 일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1991. 8. 초순 홍성은과 전화통화한 일이 있나요.
답 : 예.

문 : 당시 증인이 홍성은에게 피고인을 유서대필자로 보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때 증인은 홍성은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나요.
답 : 예.

문 : 뭐라고 말하던가요.
답 : 전화통화한 후 성은이를 만나서 대답을 들었는데 "5. 17. 검찰에서 대필자로 주목받는다는 얘기를

160) 총자료집 I 책 652쪽 참조.

들었을 때는 강기훈 글씨라고 제시받은 증9-1이 유서와 비슷하게 보여서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성은이가 풀려나서 집에 와서 강기훈의 글씨와 유서를 필적감정했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나서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변호인측 증제18호(책)175) 제시
문 : 이것이 어떤 책인가요.
답 : 책 제목은 장미의 이름이고 90. 7.경 증인 생일때 강기훈이 증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문 : 책속에 강기훈이 써준 것이 있나요.
답 : 예. 책 맨 뒷장에 쓴 것이 있습니다.

문 : 위와 같이 쓴 것을 보았나요.
답 : 미리 써둔 상태로 증인에게 준 것입니다.

검사 임 철

증인에게
문 : 증인은 1989. 단국대 화학과에 입학하여 피고인 강기훈을 같은 과 선배로 알게 되었고, 1990. 1.경부터 강기훈과 가까운 연인 사이가 되었지요.
답 : 예.

문 : 홍성은이 연대에서 증인에게 수첩을 줄 때 수첩에 적혀진 글씨의 색깔을 기억하고 있는가요.
답 :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증인은 명동성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검은색 글씨였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
답 :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 검찰 조사 후 기자회견 했을 때 기자들에게 검찰에서의 진술은 부드러운 분위기였다고 하지 않았나요.
답 : 신문에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은 사실이나, 신체적으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다고 했는데 그런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문 : 홍성은이 수첩을 원순용에게 건네줄 때 뒤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부분을 펴서 보여주어 증인도 보았다고 했는데 그후 명동성당에 농성하러 갔을 때

175) 총자료집 II 책 855쪽 참조.

증인에게 수첩을 본 일이 있는냐고 물어보았을 때 증인은 전화번호 색깔은 검정색이었다고 진술한 일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이 때 피고인과의 대질을 행하였음.

피고인에게

문 :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얘기하기를 어느 날 명동에서 농성을 벌일 때 벤취에 앉아 증인과 같이 얘기를 주고받다가 수첩얘기가 나왔는데 피고인이 증인에게 글씨 색깔이 기억나느냐고 물었더니 증인은 전화번호 부분이 파란색이 아니고 검정색으로 기억하고 있더라고 했으며 그리고 검찰청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보여준 전화번호란이 파란색인데 그게 이상하다고 하면서 증인이 명동성당에서 검정색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하였나요.
답 : 예.

재판장

증인에게
변호인측 증거물 증제18호(책) 제시
문 : 이 책 뒷면의 글씨(176)가 강기훈의 것 맞나요.
답 : 예.

1991. 11.20.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 증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581)

176) 총자료집 II 책 855쪽 참조.

자료 나-8-5 (공판기록 582~608)

서울 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8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평 1126 자살방조
91 고평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증 인 서준식
생년월일 1948. 5. 25생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민련 인권위원장
주거 성동구치소 수감중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
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제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언제부터 전민련 인권위원장직을 맡아
보고 있습니까.

답 : 91. 3. 1.부터입니다.

문 : 1991. 5. 8. 분신자살한 김기설이 전민련 사회
국 부장으로 일하면서 분신전까지 주로 증인의 업무
를 보조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답 : 예.

문 : 김기설이 증인의 일을 보조하게 된 특별한 경
위가 있습니까.

답 : 인권위원회에 증인 혼자서 있게 되어 사회국
부장인 김기설이 협력하여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문 : 김기설이 증인의 업무를 보조한 이래 업무상
으로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증인과 가장 밀접한 관
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답 : 일상생활은 잘 모르겠으나 업무상으로는 대단
히 밀도있게 있었으며 거의 매일 일하고 밤을 같이

세운 적도 있습니다.

문 : 김기설이 증인에게 평소 자신의 가족 이야
기를 한 일이 있습니까.

답 : 예.

문 : 어떤 얘기를 했나요.

답 : 누님이 면목동에 있고 결혼을 잘못 했으며, 고
향이 파주이며 아버지께 보름에 한번 전화를 한다는
얘기와 가족은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문 : 증인은 언제, 어디서 김기설이 분신자살한 사
실을 처음 알았습니까.

답 : 5. 8. 아침 증인 집에서 텔레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문 : 그 사실을 알고 처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 바로 연대로 갔습니다.

문 : 증인은 강경대군 사건 이후 1991. 4. 하순경
이른바 범국민대책회의가 구성된 사실을 알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위 대책회의에 간부나 구성원으로서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 없습니다.

문 : 김기설 분신 후 전민련에서 "고 김기설동지
분신항거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처음 위원회의 위원장 일을 맡았다가
뒤에 전민련 간부인 황인성이 위원장 일을 맡아 하였
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 분신 후 장례 등 관계일은 위 대책위
원회에서 주관하고 집행하였지요.

답 : 예.

검찰 압수물 5-1(업무일지)¹⁶³ 제시

문 : 증인은 1991. 5. 11.경 연대 의대 1층 회의실에
서 이 업무일지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 예.

문 : 검찰에 제출하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답 : 5. 8. 김기설이 죽고나서 검찰에서 조사 나왔
는데 그 자리에서 김기설의 글씨가 있는 것을 달라
하여 그날인가 그 다음날에 증인이 전민련 성명미상

163) 총자료집 I 책 81쪽 참조.

답 : 없습니다.

검찰 압수물 중11-1호(전민련 수첩)¹⁶⁴ 제시

문 : 증인은 이 전민련 수첩이 김기설이가 1991.5.7.
여자친구인 홍성은에게 교부한 김기설의 수첩이라고
밝히고 1991. 5. 20. 전민련 상임집행위원인 최규성에
의하여 검찰에 제출된 사실을 알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위 수첩이 김기설이 분신 전날 홍성은
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검찰에 제출되기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답 : 5. 8. 홍성은이 수첩을 가지고 온 것을 얼핏
보았지만 한참 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문 : 그 수첩을 그 전날 즉 5. 7.에 김기설이 홍성
은에게 주었다는 얘기를 5. 8.에 들었나요.

답 : 예. 5. 8.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 : 위 수첩이 김기설 분신 후 10여일이 지난
1991. 5. 20.에야 검찰에 제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 김기설 수첩이 연대에 보관된 것을 몰랐고 검
찰에서도 전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 : 달리 말하면 5. 18. 검찰에서 유서가 대필했다
는 발표를 보고 처음으로 수사방향을 알고나서 그에
대한 반증으로 수첩을 제출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누군가가 연대에 수첩이 있었다는 것을 생
각해 냈고 5. 19.에 찾아 전민련 사무실에 갖다 놓았
다가 5. 20.에 제출한 것입니다.

문 : 위 수첩의 기재내용중 특히 김기설이 기재하
는 것을 목격한 부분이 있습니까.

답 : 있습니다.

문 : 어떤 부분인가요.

답 : 첫째, 전화번호부중 승의여전 윗칸 전화번호(4
18.)을 적어넣을 때와, 둘째, 역시 4. 18. 수첩 제일 뒷
부분인 '목요일에 현금 38,600'은 증인이 직접 김기설
에게 적으라고 지시하자 쓴 것이며, 셋째, 스케줄 부
분중 4. 17.란에 화살표로 목요일에배라고 한 부분도 증
인의 지시에 의해 김기설이 쓴 것입니다.

문 : 증인은 위 수첩이 김기설 본인의 것이 틀림없
기 때문에 위 수첩이 검찰에 제출되자 유서대필 시비
가 종결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지요.

의 부장에게 김기설의 노트 등을 찾아라 하여 2-3일
후 연대에 가져와 제출하였습니다.

문 : 제출 당시 위 업무일지가 김기설 1인이 작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답 : 주로 김기설이 쓴 것은 확실하나, 전적으로 혼
자 작성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문 : 증인은 현재 위 업무일지가 전민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동진, 임무영을 포함하여 세 사람에게 의하
여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알니까.

답 :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 : 검찰에 제출한 후 위 업무일지의 필적이나 내
용에 관하여 검찰이 증인이나 전민련측에 문의한 일
이 있습니까.

답 : 검사가 앞쪽이 찢어져 있다는 얘기를 전화로
한 일이 있습니다.

문 : 위와 같은 전화는 5. 19. 전인가요, 후인가요.

답 : 전입니다.

문 : 증인이 위 업무일지를 제출한 이후 그때부터
1991. 5. 18. 검찰에 유서대필 혐의사실을 처음 발표할
때까지 위 업무일지 외에 김기설의 필적에 관한 추가
자료에 대하여 증인이나 검찰이 제3자에게 문의한 사
실이 있습니까.

답 : 전혀 없었습니다.

문 : 증인은 1991. 5. 18. 이 사건 유서대필 혐의사
실에 관한 검찰발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검
찰에서 유서가 대필되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또는 짐작하고 있습니까.

답 : 전혀 짐작도 못했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의 분신 직후부터 1991. 5. 18.
위 검찰 발표전까지 주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답 : 연대에서 김기설 사건후 처리문제와 5월 투쟁
에 관한 토의를 했습니다.

문 : 피고인 또는 제3자가 검찰의 위 유서대필 혐
의발표전까지 동 혐의내용에 관하여 증인에게 상의한
바가 있습니까.

답 : 전혀 없습니다.

문 : 또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위 검찰발표 전까지
증인 또는 전민련측에 김기설 또는 피고인에 관한 필
적자료를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164) 총자료집 I 책 717쪽 참조.

답 : 예.
 문 : 그런데 얼마 후 검찰이, 위 수첩은 조작된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이 자기의 수첩에다 김기설의 수첩내용을 옮겨 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증인은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김기설의 관련사항 외에 피고인에 관한 것이 과연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 결과가 어떠하였나요.
 답 : 없었습니다.
 문 : 증인은 속초에 있는 동우전문대학교 학생 정연석이 분신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경위를 조사하여 발표할 목적으로 김기설과 함께 1991. 3. 31.부터 4. 2. 까지 강릉과 속초에 머물면서 위 대학 교무처장, 학생회간부 및 일반학생, 지역인사 등과 대화한 내용을 테이프 3개에 녹음한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1991. 4. 2.경 전민련 사무실에서 김기설에게 위 테이프중 1991. 4. 1. 저녁 속초시내의 김용삼씨 사무실에서 김용삼 등 지역인사들과 대화한 내용을 담은 테이프 3개를 풀어 써오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 테이프 3개를 김기설에게 맡기면서 벽차면 다른 전민련 부장들과 분담해서 녹취하라고 하였고, 특히 3번째 것은 녹음상태도 좋지 않고 여러 사람의 소리가 있으니 그것만은 김기설이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문 : 그래서 4. 4.에 전민련 사무실에서 김기설이 위 녹음테이프 일부를 풀어쓴 것을 가져온 것을 보고 증인이 직접 녹음테이프를 들으면서 제대로 풀어썼는지 확인하며 김기설이 풀어쓴 부분을 수정하고 가필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답 : 예. 4. 4. 오후에 민가협, NCC인권, 민교협 등과 회동하기로 하였는데, 그날 오전에 1, 2권은 잘해왔으나 3권은 자기 혼자 판단으로 불필요하다고 하여 해오지 않아 증인이 꾸짖고 다시 하라고 하자 자기 책상에 가서 녹취를 하고 낮 12시나 1시 정도에 해 가져왔는데 증인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부실하여 증인이 다시 듣고 가필한 것입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8호(노트) 제시
 문 : 이 노트 중 그때 증인이 수정하고 가필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답 : 둘째장과 셋째장 중 검은색 하이테크로 쓴 부분과 밑줄친 부분 및 네모친 부분들을 증인이 가필한 것입니다.
 문 : 그 앞장의 것은 본 일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홍성은의 증언에 의하면 위 노트중 녹음테이프를 풀어쓴 나머지 부분중 일부는 홍성은이 풀어쓰고 일부는 김기설과 같이 자취하던 장준호가 쓴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증인은 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답 : 몰랐습니다.
 문 : 증인은 위와 같이 녹음테이프를 풀어쓰고 증인이 수정 가필한 사실을 위 1991. 4. 4. 작업 이후 가 닿게 있고 있다가 최근 다시 확인하고 스스로도 깜짝 놀랜 바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언제 어디서 위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습니까.
 답 : 91. 11. 초(3, 4, 5)경 이석태 변호사가 증인이 있는 구치소에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문 : 증인은 위 노트중 홍성은 등이 풀어쓴 부분은 증인이 일부 수정 가필한 후 다시 잘 해오라고 김기설을 나무라자 김기설이 홍성은 등에게 부탁하여 풀어쓰게 한 것으로 봅니까.
 답 : 예.
 문 : 김기설이 풀어쓴 녹음테이프 1개 외에 나머지 녹음테이프 2개는 누가 풀어썼습니까.
 답 : 전민련 최재인 부장이 풀어쓴 것은 확실하고, 조성희 부장이 한 것은 불확실합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과 함께 위 자료 등을 정리하여 1991. 4. 6. 세실레스트랑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24호(166) 제시
 문 : 이것이 당시 기자들에게 배포한 진상보고서임

166) 자료집 II책 822쪽 참조.

니까.
 답 : 진상보고서 중 일부인 것 같습니다.
 문 : 증인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민련 사무실로 돌아와 김기설로 하여금 향후의 일처리와 관련하여 자료집을 잘 보관하라고 하였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9호(167) 제시
 문 : 이 봉투가 그때 자료집을 보관한 그 봉투인가요.
 답 : 예.
 문 : 위 봉투에 기재된 "—속초 동우전문대 정연석 학생 분신 기자회견 자료집—"은 김기설이 쓴 것이니까.
 답 : 예.
 문 : 증인이 김기설이 직접 쓰는 것을 보았습니까.
 답 : 예. 증인이 쓰게 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1991. 4. 18.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서 김기설과 함께 동우전문대 문제와 관련하여 승의여자전문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이보령 등을 만난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당시 증인과 헤어진 김기설과 이보령 등은 전민련 사무실로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김기설이 이보령 등에게 모금관계 집회일정 등을 메모형식으로 적어주었다는 사실을 후에 알았지요.
 답 :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 : 1991. 5. 21. 오후에 위 이보령 등이 명동성당으로 와서 증인에게 위 메모지 원본을 건네주었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5호(메모지)168) 제시
 문 : 이것이 그 메모지 원본인가요.
 답 : 예. 그 쫄기대회 일정내용은 증인이 잘 알고 있으며 김기설이 쓴 것을 증인에게 가져와서 증인이 옮겨적은 일이 있어 그 메모지 원본이라고 확신합니다.
 문 : 피고인은 1991. 6. 초순경 명동성당내 문화관에 있으면서 김수환 추기경에게 유서대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결백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자필로 보

167) 총자료집 II책 822쪽 참조.

낸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당시 증인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명동성당 주임신부인 경갑실 신부에게 피고인의 뜻을 전하고 위 서신을 추기경께 전달해 드리도록 말씀 드렸는지요.
 답 : 예. 피고인과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문 : 증인은 그후 경 신부의 집무실에 불려가 경 신부로부터 피고인의 서신이 추기경께 전달되었으며 추기경이 직접 읽어 보셨다는 말을 들었지요.
 답 : 예.
 문 : 당시 경 신부가 피고인의 서신을 추기경께 전달하면서 추기경과 나는 대화내용을 증인에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 예.
 문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답 : 추기경이 서신을 읽어본 후 경 신부에게 읽어 보라고 하여 읽어본 후 추기경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경 신부가 멈춤거리고 있었는데 추기경이 "강기훈은 교활한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는 거짓말이 없는 것 같다" 하자 경 신부가 이에 동조하였다고 했습니다.
 문 :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서신이 추기경께 전달된 이후 추기경의 지시로 그때부터 천주교측에서 피고인의 거취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촉구하게 되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언제 무슨 혐의로 구속되었습니까.
 답 : 6. 29. 집시법 위반 및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문 : 증인은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유서대필 혐의 사실을 처음 발표한 이래 구속될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명동성당내에 머물러 있으면서 증인에게 제공된 김기설 및 피고인에 관한 각종 필적자료를 공개하고 설명회를 주관하고 기자회견을 주선하는 등 검찰의 유서대필 혐의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위 과정에서 김기설의 유서가 김기설

168) 총자료집 II책 798쪽 참조.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던가 혹 피고인이 대신 써준 것은 아닌가 하는 등의 의심을 가져본 일은 없습니까.

답 : 의심은 거의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문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김기설이 죽기 전 김기설의 글씨체를 많이 보아 잘 알고 있었고 유서를 보며 바로 김기설의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문 : 이 건 유서대필 사건이 처음 터질 때부터 증인은 김기설의 분신의 배후로 비춰졌지요.

답 : 예.

문 : 그렇다면 증인이 구속된 이래 증인에 대하여 분신과 관련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법한데, 실제로 조사받은 일이 있습니까.

답 : 6. 29 서부서에 구속되었을 때 서초동 검찰청 검사가 불러 서너시간 조사하였고 증인사건의 검사는 유서문제를 증인사건과 교묘하게 섞어서 질문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 분신에 관해 검찰에서 자술서나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가 작성된 바가 있습니까.

답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23호의 1169) 제시

문 : 증인은 이 각서를 알고 있지요.

답 : 예.

문 : 이 각서는 한원석이란 사람이 1991. 6. 초순경 명동성당으로 증인을 찾아와 김기설에게 300만원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갖지 아니하여 이 각서를 받아놓았던 것이라면서 증인에게 주었다는데 그렇습니까.

답 : 예.

문 : 증인은 이 각서를 받아 어떻게 하였습니다.

답 : 김기설의 명예를 위해 증인이 증인 가방속에 보관하였고 구속직전 이동진 부장에게 꼭 필요할 때만 공포하라고 하면서 맡겼습니다.

문 : 위 한원석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답 : 모 출판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검사 송명석

증인에게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8호 노트(속초 동우전문대 사

건에 관한 속초인들과의 대화 녹취서)170) 제시.

문 : 이것이 김기설이 증인에게 준 것인가.

답 : 노트를 받은 기억은 없고 그중 둘째장과 셋째장만 받았습니다.

문 : 증인은 위 노트가 언제 어떤 경위로 변호인에게 제출되었는지 아는지요.

답 : 모르겠습니다.

문 : 위 노트 중 김기설의 글씨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뜯어진 상태로 받았나.

답 : 예.

문 : 증인은 위 노트 중 둘째장과 셋째장은 김기설이 쓴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데 김기설이 위 부분을 쓰는 것을 보았는지요.

답 : 증인의 지시에 의해 자기 책상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 : 증인은 금년 6. 24 피고인 강기훈이 명동성당에 나와 구속영장이 집행된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과 면담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당시 증인은 검사 입회 아래 강기훈과 접견하면서 김기설의 필적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한 사실이 있지요.

답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 증인은 위 노트 김기설 필적부분에 가필한 사실이 있고 그래서 위 노트가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증언하였지요.

답 : 예.

문 : 금년 5. 8부터 5. 11.경까지 증인을 비롯한 전 민련측이 검찰로부터 수차에 걸쳐 김기설의 필적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5. 11에 이르러 전민련 사회국 업무일지를 김기설이 쓴 것이라며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수사기록 제211정(확인서)171) 제시

문 : 이것이 당시 증인이 이 건 업무일지를 검찰에

170) 총자료집 II책 811쪽 참조.

171) 총자료집 I책 80쪽 참조.

제출하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국 업무일지 기입작업을 “거의 전적으로” 사회국 부장 김기설이 담당했으며 본인은 동 단체 인권위원장으로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써준 확인서가 틀림없는가요.

답 : 예.

문 : 증인의 증언대로라면 이 노트의 많은 부분이 김기설의 필적이고 또 그것에 대해 바로 증인이 가필했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검찰로부터 수회에 걸쳐 김기설의 필적 제출요구를 받고서도 위 노트를 제출하지 않고 전민련 사회국 업무일지를 더구나 “거의 전적으로” 김기설이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가면서까지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 필적 제출요구를 받을 당시에는 위 노트의 존재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문 : 증인이 위 업무일지를 제출할 때 거의 전적으로 김기설이 써주었다는 확인서를 써준 이유는 무엇인가.

답 : 업무일지를 자세히 보진 않았고 주로 김기설이 썼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 : 속초 동우전문대 사건시 증인은 전민련 인권위원장으로 속초에 갔고, 김기설은 증인을 보좌하여 수행하는 실무자로 간 것이지요.

답 : 예.

문 : 그리고 이 노트중 둘째장과 셋째장은 김기설이 실무자로서 위원장인 증인 보좌수행한 후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정리하여 증인에게 준 것이지요.

답 : 예.

문 : 그렇다면 증인을 보좌하여 수행한 실무자인 김기설이 위 노트와 같이 여러 사람의 필적이 혼재되어 있고 노트앞과 뒤에 꼬적거린 형태로 되어 있으며 뜯어다가 테이프로 붙이는 등 이렇게 전혀 정리되지 않는 조잡한 상태로 증인에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정리해준 것이라 말인가.

답 : 컴퓨터에 입력시키기 위한 기록이라서 그렇게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 : 홍성온이 지난번 7차 공판기일에서 증언하면서 맨 앞부분은 자기가 쓴 글씨이고 그 날짜는 4. 5.이며 그 뒷부분에 연속된 것은 장준호의 것인 것 같고 장준호와 4. 5. 같이 작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

면 4. 4. 증인이 이 연필로 기재된 부분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답 :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4. 4. 여러 단체가 회동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 김기설이 맡은 녹취작업이 완성되지 않아 증인이 하라고 호통치고 4. 6.에 기자회견을 위해 4. 5.까지 해놓으라고 하였는데 김기설이 4. 5. 아침까지 완성해 놓으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나 4. 5.에는 이미 그것을 써먹을 필요성이 없어졌는데 왜냐하면 날짜가 촉박했고 기자회견에 꼭 내용을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문 : 증인은 7차 공판기일에서 증인 홍성온이 증언하면서 자신이 장준호와 함께 녹취작업을 할 때 김기설이 건본으로 보여준 그의 필적이 담긴 노트는 지금 이 노트보다 더 속초 동우전문대 사건에 관해 백백히 적혀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증인은 3개의 테이프를 주었는데 2개의 테이프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녹취하였고 맨 마지막 세번째 테이프만을 김기설에게 녹취하라고 했다는 증인의 진술과는 다르지 않은가요.

답 : 김기설이 그날 증인에게 가져온 부분은 이 노트중 두장이 틀림없습니다.

문 : 증인은 증제11-1호가 김기설의 수첩이라고 확인하면서 김기설이 직접 쓴 것을 보았다는 ‘목요일 배’ 부분과 ‘승의여전’ 전화번호를 쓴 것은 시간 차이가 있었나.

답 : 정확한 시간은 모르나 시간 차이는 있었습니다.

문 : 다른 필기구로 썼는지요, 같은 필기구로 썼나.

답 : 현금액수를 어떤 필기구로 썼는지는 기억이 안나나, 김기설은 만년필, 초록색 하이테크와 샤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문 : 승의여전 메모, 성남 터사랑청년학우회 방명록, 원주 전교조 창립식 방명록 등을 김기설의 필적이 라고 공개 기자회견까지 하였는데 이 노트가 진정 김기설의 필적이고 증인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 노트에 대하여는 왜 당시 기자회견을 하고 공개하지 않았는

가.

답 : 그 노트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문 : 결국 검찰이 수차에 걸쳐 증인에게 김기설의

169) 총자료집 II책 860쪽 참조.

필적제출을 요구할 때 당시 이 노트를 김기설의 필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 원주 등지에서까지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여러 필적을 수집하여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하면서도 이 노트는 그 동안 한번도 공개하지 않은 점, 나아가 홍성은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본 김기설의 필적이 담긴 노트는 이 노트보다 더 뽕뽕히 적혀 있었다는 점, 증인을 보좌하여 수행한 망 김기설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정리하여 주었다는 노트치고는 이 노트가 너무나 조잡한 점등 여러가지 점에 비추어볼 때 근본적으로 이 노트 중 증인이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진정한 김기설의 필적으로 볼 수가 있는가에 관해 의문이 생기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답 : 홍성은이 어떻게 기억하던 상관없고 원주에 가서 원주 전교조 지부에서 우리에게 주지 않고 한겨레 신문사에 전해 준 것으로 기억하며 터사랑 방명록도 우리가 수집한 것이 아니며 아마 연합통신에서 찾아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증인이 가필한 부분에 관해서는 김기설의 것이라고 확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 : 증인이 강기훈과 접견 당시 대화한 내용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시 증인은 검사 입회 아래 강기훈과 접견하면서 "김기설의 필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 노트중 증인이 가필하였다는 두장이 녹음테이프 전부를 풀어쓴 것이 아니지요

답 : 예. 그 일부로서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문 : 그 후로 그것을 보았나요

답 : 못 보았습니다.

문 : 김기설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필기구는 어떤 것이요

답 : 감색잉크의 만년필, 샤프와 초록색 하이테크펜입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김기설의 필적을 보면 알 수 있나요

답 : 속필체라면 알 수 있습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8호중(노트) 둘째장, 셋째장(72)

제시

문 : 이것을 김기설이 작업하고 난 후 증인에게 가져왔나요

답 : 예. 증인 앞 책상에서 작업하였습니다.

문 : 노트를 본 적이 있나요

답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9호(173) 제시

문 : 이것은 증인 앞에서 김기설이 쓴 것이요

답 : 예. 책상위에 있는 것을 증인이 무언가 표시해 놓으라고 하니 김기설이 매직펜을 가져와 증인 앞 증인 책상에서 쓴 것입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23-1호(각서)174) 제시

문 : 이것을 한원석이 직접 증인에게 가져온 것이요

답 : 예.

문 : 위 한원석은 지금 어디 있나요

답 : 모르겠습니다.

문 : 한원석이 몇살 정도인가요

답 : 25세에서 30세 정도였습니다.

문 : 특징이 없나요

답 : 작은 키에 다부진 체격인 것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한원석이 자기 연락처를 알려주었나요

답 : 증인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문 :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5호중(메모지)175)을 기자회견 전날 받았지요

답 : 예.

문 : 왜 기자회견때 가져 나오지 않고 하룻동안 보관하였나요

답 : 승의여전 학생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기에 볼

172) 총자료집 II책 812, 813쪽 참조.

173) 총자료집 II책 822쪽 참조.

174) 총자료집 II책 860쪽 참조.

175) 총자료집 II책 798쪽 참조.

답 : 승의여전 학생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기에 볼 안하다고 하여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 같은데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증인이 달라고 요청한 것인가요, 아니면 승의여전 학생들이 맡겨달라고 요청한 것인가요

답 :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승의여전 학생들이 5. 21. 기자회견 후 제출한 것처럼 한 이유를 아는가요

답 : 그 전날 맡겨 놓은 사실이 별로 중요한 문제로 생각치 않았습니다.

문 : 그렇지 않아도 당시 전민련이 검찰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우리가 너무 천진스러웠던 때문이며, 검찰에서 그런 것까지 의심하리라고는 생각치 않았습니다.

1991. 11. 20.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증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609)

자료 나-8-6 (공판기록 610~618)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8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평 1126 자살방조
91 고평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증 인 임 무 영
생 년 월 일 1964 1. 17.생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민련 사회부장
주 거 서울구치소 수감중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
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 증인은 현재 집시법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류중이지요.
답 : 예.
문 : 증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인이 1991. 4. 29.
부터 5. 4까지 범국민대책회의 부대변인으로 종사하
면서 강경대군 사건이 원인이 된 각종 시위를 주도하
고 그 시위과정에서 전경들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이
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이견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언제부터 언제까지 검찰조사를 받았습니까.
답 : 7. 6 오후 5시나 6시부터 7. 8. 경오경까지 조
사를 받았습니니다.
문 : 수사기록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1991. 7. 9.에 한번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답 : 진술조서는 7. 8. 12시경 1회 작성되었으며 그
전에 여러차례 자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 : 날짜를 어떻게 기억하나요.
답 : 7. 6이 김현수 결혼식이었습니다.
압수물 증5-1(업무일지)176) 제시.
문 : 증인이 검찰에서 주로 추궁받은 내용은 이 업
무일지에 관한 것이었지요.
답 : 예.
문 : 이 업무일지는 전민련에서 공식적으로 작성케
하는 서류입니까.
답 : 당시 김기설이 개별적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문 : 이 업무일지의 글씨가 누구의 필적인지 알겠
습니까.
답 : 김기설이 주로 썼고 둘째장 파란 글씨는 증인
이 썼습니다.
문 : 김기설이 이 업무일지에 글씨 쓰는 것을 증인
이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답 : 직접 쓴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어떻게 해서 증인의 글씨가 한 줄만 들어 있
지요.
답 : 전민련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서로 업무
에 관한 이야기를 김기설과 함께 하던 중 증인이 말
아서 한 일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문 : 전민련 사회국의 전 직원이라야 증인, 김기설,
이동진 등 세 사람뿐이지요.
답 : 예.
문 : 이 업무일지를 김기설이 만들어 쓰고 있었지
만 결국 사회국 직원들만 함께 이용한 것이군요.
답 : 예.
문 : 검찰에서는 이 업무일지에 관해서 증인에게
어떤 점을 추궁하던가요.
답 : 이 업무일지가 조작되어 있는데 증인이 조작
된 경위를 얘기하라는 것을 추궁받았습니다.
문 : 증인에게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는가
하는 추궁은 없던가요.
답 : 그런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176) 총자료집 I책 81쪽 참조.

문 : 검찰에서 증인의 집과 사무실에서 증인의 필
적을 많이 수집하여 간 것으로 아는데 증인의 필적과
유서 등 다른 필적과의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까.
답 : 감정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 증인이 7. 6. 오후 5시부터 7. 8. 12시까지 계
속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는 동안 잠을 자지는 않았습
니까.
답 : 7. 8. 오전에 잠깐 눈을 붙였을 뿐입니다.
문 : 조사받는 동안 특별히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
습니까.
답 : 수감이 채워진 채 한잠도 못 잤고 폭행과 폭
언이 난무했고 고문형식으로 앉히고 수감이 채워진
채 손을 올리게 하였으며 허벅지를 때리고 뺨을 맞았
습니다.

검사 송명식

증인에게
문 : 증인은 1991. 7. 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김기설
의 분신과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데 그때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조서를 읽어본 후 서
명·무인하였나요.
이때 검사는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955-962정177) 제시
하다.
답 : 예.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무인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언제부터 강기훈과 김기설을 알고 있
나요.
답 : 강기훈과는 89년 강기훈이 전민련에 들어왔을
때고, 김기설과는 90년 말경에 알았습니다.
문 : 증인은 피고인 강기훈이 무장봉기에 의한 사
회주의혁명을 추구하는 "혁명적 노동자계급 투쟁동
맹"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 :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 : 증인은 전민련 사회국 업무일지를 본 적이 있
는가요.
답 : 예.
증5-1호178) 제시
문 : 이 업무일지 둘째장에 파란 볼펜으로 "49, 4
월 혁명기념대회준비"라고 기재된 것은 증인의 글씨

177) 총자료집 I책 542쪽 참조.

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검찰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증인
의 글씨체로 보이지만 증인이 기재한 것인지, 언제,
왜 기재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이 있지요.
답 : 예.
문 : 검찰에서와 법정진술이 다르지 않는가요.
답 : 언제, 왜 기재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을 뿐 쓴
것은 확실합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의 글씨를 잘 아는가요.
답 : 평소 김기설의 글씨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문 : 증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증인이 김기설
과 같은 사회국에서 일한 것이 두달이 조금 못되어
김기설이 글씨를 쓰는 것을 한두번 보았으나 그의 글
씨를 제대로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 예.
문 : 따라서 위 업무일지의 둘째장과 셋째장의 글
씨는 평소 김기설이 업무일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김기설의 글씨일 것으로 추측할 뿐이라고 진술하였지
요.
답 : 그렇게 진술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증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피고
인 강기훈이 위 업무일지 중 1줄의 글씨가 증인의 글
씨와 비슷하다고 하여 그 점을 조사받게 되었는데 알
고 있지요.
답 : 모릅니다.
문 :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강기훈과
같이 만나 이야기할 때 피고인이 증인에게 자기가 잘
못 생각해서 증인을 끌어들이는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한
일이 있지요.
답 : 사과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검찰 압수물 증5-1(업무일지) 제시.
문 : 이 업무일지에 증인이 기재할 당시에도 첫장

178) 총자료집 I책 81쪽 참조.

이 이렇게 뜯어져 있었나요

답: 기억나질 않습니다.

문: 둘째장 파란 글씨를 쓴 것이 틀림없나요

답: 언제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글씨를 보니 증인 글씨가 틀림없습니다.

문: 나머지 글씨들은 김기설의 것이 틀림없나요

답: 평소 김기설이 업무일지를 주로 작성했고 증인이 보기에 김기설의 글씨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1991. 11. 20.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 증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619)

☐자료 나 8-7 (공판기록 620~623)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8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합 1126 자살방조
91 고합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증 인 고 상 만
생 년 월 일 1970. 8. 4 생
주민등록번호
직 업 무 직
주 거 서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
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증인은 속초동우전문대 경영학과에 재학중
1990. 8에 제적되었나요

답: 예.

문: 그러던 중 동우전문대 정연석 학생이 1991. 3.
20 분신자살을 기도하였지요

답: 예.

문: 이에 대하여 전민련에서는 조사단을 파견하였
고, 김기설은 조사단의 일원으로 1991. 3. 22. 09:00경
원주 민주시민회 홍중희, 정연석의 작은형, 전교조 원
주지부 소속회원 등과 함께 동우전문대를 방문하였지
요

답: 예.

문: 김기설 일행은 약 20분 정도 상황설명을 듣다
가, 그 당시 박치영 학우를 연행하여 간 데 대하여 당
국에 항의하러 가겠다고 나갔었지요

답: 예.

문: 그때 김기설은 증인에게 책자가 든 서류봉투
를 맡겨 두었다가 후에 찾아갔지요

답: 예.

변호인측 제출 증제14호 증의 1(진술서), 같은 호 증
의 2(명함)179) 각 제시.

문: 이 진술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고, 이 메모는
증인이 전민련에 전달하였던 김기설의 명함글씨이지
요

답: 예.

문: 증인이 명함을 받았나요

답: 6. 29. 김현자를 술 좌석에서 만나 이야기 중
증인이 30에 서울 올라간다고 하자 명함을 전민련 판
계자들에게 전해 주라고 하면서 주었습니다.

검사 송명식

증인에게

문: 김기설이 명함을 증인에게 써준 것인가요

답: 당시 김기설을 본 적도 없습니다.

1991. 11. 20.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 증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624)

179) 총자료집 II책 829쪽 참조. 180

자료 나-8-8 (공판기록 625~638)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8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평합 1126 자살방조
91 고평합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증 인 이 동 진
생 년 월 일 1960. 9. 9.생
주민등록번호 1
직 업 전민련 사회부장
주 거 서울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
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전민련 사회국 부장으로 일하고 있지
요

답 : 예.

문 : 증인은 1991. 5. 8 분신자살한 김기설과 피고
인을 같은 전민련 동료로서 잘 알고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진술서
를 작성한 일이 있나요

답 : 예.

수사기록 917면 내지 929면(180) 제시

문 : 이 진술서 내용은 당시 증인의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가요

답 : 기억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180) 총자료집 I 책 515쪽 참조.

문 : 어느 것이 잘못 기재되었나요

답 : 5. 19 수첩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사
본을 가져온 부분은 김현수와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증인 혼자서 간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 압수물5-1(업무일지)(181) 제시.

문 : 이 업무일지 기재증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있
나요

답 : 맨 첫번째장에 있는 것은 증인이 작성했습니
다.

문 : 증인은 위 업무일지 기재증 증인이 작성한 부
분이 있다는 것을 언제, 어디서 처음 확인하였나요

답 :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문 : 위 업무일지 기재증 전민련 동료인 임무영이
작성한 부분이 있나요

답 : 둘째장 파란부분이 임무영 글씨로 생각이 되
나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문 :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답 : 임무영이 그 행사준비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렇게 생각되나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문 : 증인은 위와 같이 증인이 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위 업무일지가 김기설 혼자서 작성
한 것으로 알고 있었나요

답 : 예.

문 : 업무일지가 검찰에 제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
나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6호(청구서)(182) 제시.

문 : 이 청구서는 김기설이 전민련 업무와 관련하
여 총무국에 출장비 지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것인
가요

답 :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 : 위 청구서 기재증 '지출확인' 난의 서명은 누
가 한 것인가요

답 : 총무국 박선옥씨가 한문으로 서명한 것입니다.

문 : 누구한테 들었나요

답 : 위 박선옥에게 들었습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8호(노트)(183) 제시.

181) 총자료집 I 책 81쪽 참조.

182) 총자료집 II 책 799쪽 참조.

답 : 예.

문 : 증인은 5. 8 김기설 분신 직후부터 장례일까
지 연대내에 머물면서 장례 준비절차에 관여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보기에 전민련 관계자 또는 다른 사람
들이 분신 당일 무렵에 김기설의 가족을 감시한 일이
있나요

답 : 감시한 사실은 없고 영안실 통제를 한 사람들
이 있어 김기설의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기자들을 통
제하기 위해 따라 다닌 적은 있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 장례 후에는 최규성 전민련 상
임집행위원을 비롯한 다른 전민련 관계자들과 함께
묘지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비석설치 등의 일을 도와
하였지요

답 : 직접 도와 준 일은 없었으나 묘비 문제에 관
해 상의한 적은 있습니다.

문 : 당시 김기설의 가족도 참여하였지요

답 : 예.

문 : 위 과정에서 김기설의 가족과 혹 마찰은 없었
나요

답 : 묘비 세우는 일로 가족들과 상의하는 과정에
서 셋째 매형이라는 사람이 "묘비는 무슨 묘비냐"고
하면서 고함친 사실은 있으나 다른 가족들은 오히려
저희에게 진정하라고 하면서 음식을 주었습니다.

문 : 현재 김기설의 묘지에는 이견 유서내용과 전
민련 반핵반공평화위원회 위원장인 진관스님의 추모
시가 새겨져 있는 비석은 세워져 있나요

답 : 예.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검찰 증제5-1(업무일지) 제시.

문 : 전민련측에서 김기설의 필적이라며 전민련 사
회국 업무일지를 91. 5. 11.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위
업무일지 첫째장 사회국 업무진행표에 "3/20 경수노
련관련 경기도경 항의방문 및 대공분실방문"이라는

184) 총자료집 II 책 826쪽 참조.

185) 총자료집 II 책 827쪽 참조.

186) 총자료집 II 책 860쪽 참조.

187) 총자료집 II 책 861쪽 참조.

문 : 이 노트는 전민련 사무실내의 김기설 책상에
서 찾은 것인가요

답 : 예.

문 : 언제 찾았으며, 찾게 된 경위가 어떤가요

답 : 91년 7월 초순경 전민련 사무실에서 전민련
실무자인 이보은씨가 자기 책상이 없으니 김기설 책
상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증인이 혹시 김기설의 서류
등을 모아 놓으라고 하여 증인이 찾은 것입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2호(184) 제시.

문 : 이 파일표지는 서준식의 책상 위의 책꽂이에
서 찾은 것인가요

답 : 예. 전민련 조직국의 김현수가 찾은 것입니다.

문 : 1991. 5. 23 전민련 사무실에서 전에 주간 전
국노동자신문 성남 지국장을 했던 박동희가 찾아와
증인에게 김기설이 쓴 명함 1매를 건네주고 자필 진
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장소는 확실치 않으나 명함 주고 진술서를 작
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3-1호 및 13-2호(185) 제시

문 : 증제13-1호의 명함이 그때 받은 김기설의 명
함이고, 증제13-2호의 자술서가 그때 박동희가 쓴 것
인가요

답 : 예.

문 : 1991. 6 초순경 전에 김기설이 자기에게 돈을
꾸고서 써준 각서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원석이라는
사람이 명동성당에 찾아와 서준식에게 김기설 자필
각서를 건네 준 일이 있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23-1호(각서)(186) 제시.

문 : 이것이 그때 서준식이 받은 김기설의 각서인
가요

답 : 예.

문 : 위 한원석은 1991. 11. 18 증인을 만난 자리에
서 위 김기설의 각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자술서를 쓴 일이 있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23-2호(자술서)(187) 제시.

문 : 이것이 그때 쓴 자술서인가요

183) 총자료집 II 책 811쪽 참조.

내용은 증인의 글씨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이 7. 5.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회국에서 작성된 업무일지는 본 적도 없고 증인이 작성한 일도 없다고 진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처음에 검찰에서 업무일지의 복사본 일부인 사무국 업무진행표만 보여주면서 사회부 업무진행표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보아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록 922정, 923정(자술서)188) 제시.

문 : 증인이 작성한 이 자술서 중 922정 여덟째 줄에서 사회국 내에서 올해 작성되었다는 업무일지에 대하여 "본인은 본 일이 없어 작성시거나, 기간, 모양은 알 수 없고" 했고 923정 셋째줄에서는 "사회국 업무진행표를 본인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

답 : 증인이 당시 사회국에서 일하다가 국민연합에 파견되게 되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되어 사회국 업무를 소홀히 해서 기억을 못하다가 검사가 증인의 글씨를 보여주자 비로소 기억난 것입니다.

문 : 증인이 사회국 업무일지의 첫째 페이지를 기재하였다면 그 업무일지는 증인이 처음 썼는가요, 아니면 그 앞의 부분을 누가 이미 작성하였나요.

답 :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문 : 증인이 기재할 때도 이와 같이 첫째장의 5분의 4 가량이 찢어져 없어졌나요, 아니면 찢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나요.

답 : 기억이 없습니다.

문 : 만약 증인이 기재할 때 찢어져 있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이 업무일지는 증인이 기재할 당시의 원형 그대로의 업무일지와는 다르지 아니한가요.

답 : 물론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5. 20. 전민련측에서 뒤늦게 김기설의 것이라며 제출한 수첩을 그 전에 본 일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전민련이 위 수첩을 검찰에 제출하기 전인 5. 19. 오후 전민련 사무실에서 위 수첩의 사본을 수첩부 만든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188) 총자료집 I 책 516쪽 참조.

문 : 그 당시 몇부나 복사를 하였으며 어디에 사용하였나요, 지금도 남아 있는가요.

답 : 한두 부는 더 되나 정확한 기억은 없고 일부는 증인이 명동성당에 가져갔고 일부는 기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증인이 5. 19. 오후 전민련 사무실에서 수첩을 복사한 후 5. 19. 밤 11시경 김현수가 원본을 명동성당으로 가져왔다는데 그 후에 다시 몇부를 복사하였나요.

답 : 원본을 복사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5. 19. 전민련 사무실에서 복사할 때는 수첩중 글씨가 기재된 부분만 복사했지요.

답 : 예.

문 : 5. 20. 전민련측에서 수첩 전부 복사한 것을 검찰에 가져온 것을 아나요.

답 : 예.

문 : 증인이 기억하기로는 수첩의 글씨는 대부분 검정색이었나요.

답 : 정확한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문 : 검정색인 것으로 진술하지 않았나요.

답 : 그것은 추측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불분명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검찰 압수물 증제5호(업무일지)189) 제시.

문 : 증인이 첫째장을 기재한 것이 맞나요.

답 : 예.

문 : 언제 썼는지 기억이 안나나요.

답 : 예. 기억이 안납니다.

문 : 전민련 사무실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이 개인적으로 쓴 것인가요.

답 : 꼭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

189) 총자료집 I 책 81쪽 참조.

검사 송명석

증인에게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8호(노트)190) 제시.

문 : 이것은 누가 언제 찾았나요.

답 : 증인이 7월 초순경 이보은에게 책상을 한번 뒤져서 모아 놓으라고 하여 증인이 찾았습니다.

문 : 검찰측에서 전민련측에 김기설 필적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5. 10경 전민련측에서 제출하였는데 위 노트는 왜 7월에 발견되었나요.

답 : 김기설 책상서랍에 잠서류(지난 회의자료들)에 섞여서 있었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5월에 김기설의 책상을 뒤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김기설이 쓴 업무일지를 준 것으로 검찰요구에 응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 : 이보은이 5월에 바로 책상을 사용하려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7월 이전까지는 별 필요가 없었습니다.

1991. 11. 20.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 증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639)

190) 총자료집 II 책 811쪽 참조.

자료 나-8-9 (공판기록 640~654)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8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평 1126 자살방조
91 고평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증 인 김 병 회
생 년 월 일 1969. 10. 1. 생
주민등록번호
직 업 학 생
주 거 경기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
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중앙대 철학과 3학년 학생이며, 성남시
대학생연합회 회원이 되었으며, 성남민주화청년연합회
와 1989년도 여름경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으
므로 당시 성남 민청련 교선부장이었던 김기설과 잘알
게 되었지요

답 : 예.

문 : 성남 민청련의 중심인물은 회장 정일부와 교
선부장 김기설이었고, 눈에 보이는 사무실의 첩판 글
씨와 대자보는 주로 김기설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증
인에게는 김기설의 글씨가 낫이 익은 편이지요

답 : 예.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3호증(방명록 글씨)191) 제시.

문 : 증인이 기억하는 김기설의 글씨는 위 글씨들
과 비슷하였나요

답 : 예를 든다면 '중'자가 특이한데 전체적으로

191) 총자료집 II책 793쪽 참조.

보아 김기설의 글씨와 비슷합니다.

문 : 증인은 신문에 게재된 유서의 글씨를 보았을
때 한눈에 그것이 김기설의 글씨인 줄 알아 보았지요

답 : 신문보다는 연대 영안실에 가서 유서사본을
보았는데 김기설의 글씨와 비슷했습니다.

문 : 그런데 김기설의 유서가 대필되었는지 하는
시비가 빈번하여 성남민청련, 성남터사랑청년회에서는
김기설의 필적을 찾아보기 시작하였고, 특히 증인은
김기설이 전민련으로 옮겨가면서 증인에게 맡겨 놓은
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짐을 조사하여 보았지요

답 : 예.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2호(이력서), 192) 증제11호(책표
지를 쓴 종이)193) 각 제시.

문 : 이것은 김기설이 맡겨 놓은 '한국사회와 자본
론강의'라는 서적 속에 끼워 있었던 김기설의 이력서
와 그 책표지를 서점에서 싸준 표지의 앞뒷면이지요

답 : 예.

문 : 책표지 앞뒷면에 씌여진 여러 약속, 일정, 연
락처 등의 글씨는 김기설의 글씨가 맞지요

답 : 예.

문 : 그 가운데 앞부분에 '정옥'은 한정옥이라는
사람으로 민청련 선배회원인가요

답 : 한정옥이 민청련 회원이라는 얘기는 들었으나
본 적은 없습니다.

문 : 몇번 기록된 '수빈'은 '임수빈'으로 성남터사
랑 회원이지요

답 : 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 : 증인은 1989. 10. 3. 성남터사랑청년회 창립총
회에 참석하였고, 김기설은 초대손님으로 참석하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요

답 : 예.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호(방명록)194) 제시.

문 : 이 방명록에 성남민청련 교선부장 한정덕이라
는 이름으로 기재한 부분이 김기설이 작성한 글씨이
지요

답 : 직접 쓰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글씨체로 보아

192) 총자료집 II책 792쪽 참조.

193) 총자료집 II책 824쪽 참조.

194) 총자료집 II책 791쪽 참조.

답 : 예.

문 : 김기설은 이효경과 원진레이온사태 외에는 별
다른 내용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은 증인에게 당시 분신자살에 대하여
의견을 물어보지 않던가요

답 : 예. 잠깐 했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에게 "자꾸 사람이 죽는데 그
렇게 죽어서 되느냐"는 말로 분신에 대하여 반대의 의
사를 표시하였고, 김기설은 "그래도 그게 아니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구체적인 분신계획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입을 떼지 않았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김기설의 분신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나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22호(사진) 제시.

문 : 이 사진이 당시 창립총회 때 찍어둔 사진이
맞는가요

답 : 예.

문 : 이 책상 위에 놓인 방명록은 문방구에서 흔히
팔고 있는 방명록이 아니라 대학노트를 방명록으로
사용한 것이 맞지요

답 : 예.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김시중이 방명록 찢어진 부분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나요

답 : 모릅니다.

문 : 검찰조사시 증인은 방명록 찢어진 부분에 관
해 어떻게 진술했나요

답 : 증인도 찢지 않았고 찢어진 채로 받았다고 진
술하였던 것 같습니다.

수사기록 840면195) 제시.

문 : 여기 밑에서 중간쯤에 검사가 "방명록은 책
전체를 가져다 주었냐"고 묻자 증인이 대답하기를

195) 총자료집 I책 499쪽 참조.

그런 것 같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이 한정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답 : 예.

문 : 이 방명록은 성남 터사랑 회원 김시중이 찾아
왔으며, 그때에 이미 속내용은 모두 찢어져 있는 상태
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 등은 방명록 노트를 전부 전민련에 보낼
것인지 김기설의 글씨가 씌여져 있는 부분만 보낼 것
인지 의논하다가 전부 보내기로 하였었지요

답 : 예. 의논이란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자로 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왜 찢어 왔느냐고 하자 복사하기
좋게 찢어 왔다는 등 하여 전부 보내는 것이 신빙성
이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이 대유공전학보에 기고한 사실
을 알고 있었기에 대유공전학보를 발간하는 대학신문
사에 방문하였던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런데 그때가 주말이라 신문사 문이 잠겨 있
었고, 총학생회에 있는 증인의 동생인 김병현의 친구
들로부터 확보원고는 그때 그때 다 없애버릴 것이라
는 말만 듣고 왔었지요

답 : 주말이었는데는 모르겠으나 신문사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고 총학생회 간부로부터 원고를 없앨 것
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 : 그때가 언제쯤이었나요

답 : 5. 20 전이었습니다.

문 : 그후 증인은 다시 가보지 않았는데 김시중이
원고를 찾아내 왔던 것이지요

답 :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 : 김기설은 1991. 5. 6. 21:00경 증인집으로 전화
하여 하룻밤 자고 갈 수 없느냐고 전화하여, 증인이
시청 앞 까뜨랑다방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김기설과
이효경을 잠깐 보고, 그곳에서 100미터쯤 거리에 있는
성남 터사랑사무실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정쯤 그곳에 온 김기설과 함께 걸어서 약
 10분 정도되는 거리에 있는 증인집으로 김기설과 함
 께 돌아와 새로 1:00경 취침하였다고 하였지요

"처음에는 김기설 부분만 갖다 주려다 전부 갖다 주는 게 좋다고 하여 찢어진 김기설의 대학노트를 같이 갖다 주었어요"라고 진술한 것이 맞나요

답: 예.

문: 증인이 처음 방명록을 봤을 때 찢어진 상태였나요

답: 예.

문: 찢어진 경위를 아는지요

답: 제출하기 편리하기 위해 찢어진 것으로만 알고 언제, 누구에 의해 찢어진 것인지는 당시에는 몰랐고 그후 그에 관해 물어보았는데 연습장으로 쓰기 위해서 또는 이사갈 때 찢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 누구에게 물어봤나요

답: 김시중에게 물어보자 찢어서 제출한 것이 편리하다고 해서 김시중이 찢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증인은 1991. 7. 3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김기설의 분신 및 필적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조서를 받은 후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는데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고 읽어본 후 무인하였나요

이때 검사는 증인에게 기록 제829-845정(196)을 증인에게 제시하다.

답: 예.

문: 증인은 1991. 5. 21. 점심 때 증인이 찾아낸 성남 터사랑청년학우회 출범식 때의 방명록과 김기설의 이력서 1통을 명동성당으로 가지고 가서 전민련 소속 이도래에게 건네주었나요

답: 김시중이 가져와 증인이 이도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문: 그 다음날인 1991. 5. 22. 9시쯤 명동성당에서 위 필적들을 다시 건네받아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지요

답: 예.

문: 그 방명록은 대학노트 1권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김기설의 글씨가 있는 부분만 복사, 제출하려는 생각에서 그 부분만 찢었다가 주변에서 주위사람들이 다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찢은 부분과 대학노트 1권 전체를 제출하였지요

답: 예. 그러나 찢을 때는 증인이 없었습니다.

문: 그 방명록은 처음 작성된 89. 10. 3 이후 91. 5. 21에 전민련에 제출할 때까지 누가 어디에 보관하였나요

답: 누가 어디에 보관했는지를 모릅니다.

문: 누가 어디서 찾아냈나요

답: 정확히 모릅니다.

문: 이 방명록은 증인이 보관했거나 증인이 찾아낸 것이 아니라는 얘긴가요

답: 예.

문: 증인은 김시중, 전현철을 알고 있는가요

답: 예.

문: 김시중은 같이 일하던 사람이고 전현철은 선생님이지요

답: 예.

변호인 제출 증1호(방명록)197) 제시.

문: 전현철의 진술에 의하면 위 방명록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앨범식 보통 방명록으로서 표지는 검정 비닐로 되어 있고 속의 종이는 보통 백지이었다는데 지금 증인의 진술이나 또 실제로 제출된 방명록과 서로 틀리지 않는가요

답: 이 방명록이 틀림없습니다.

문: 지난번 공판기일에 증인한 김시중의 진술에 의하면 위 방명록은 90년도 여름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여 방명록 중 서명한 부분을 찢어내어 다른 곳에 숨겨 두었다가 그뒤 다시 방명록 속에 끼어 넣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전민련에 제출할 당시 비로소 찢었다는 증인의 말과는 다르지 아니한가요

답: 전민련에 제출할 당시 비로소 찢었다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문: 그 여러 사람이 누구인가요

답: 모릅니다.

문: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 김시중에게 물었나요

답: 증인이 왜 찢어진 채로 가져왔느냐고 물었더

196) 총자료집 I 책 496쪽 참조.

197) 총자료집 II 책 791쪽 참조.

니 김시중이 이렇게 가져가도 되지 않느냐고 대답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91. 5. 21. 명동성당에 갔을 때 김시중과 함께 갔나요

답: 예.

문: 증인은 위 방명록과 김기설의 이력서 등 필적들을 이도래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김시중은 전번 기일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은 이도래뿐이었는데 이도래에게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진술(199)과는 다르지 아니한가요

답: 이도래에게 주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지 또 증인이 주었는지 김시중이 주었는지 모릅니다.

문: 결국 방명록이 앨범이나 노트나, 찢은 시기, 전민련측에서 넘겨받은 사람 등에 관하여 증인과 김시중, 전현철의 진술이 근본적으로 상이한데 그렇다면 변호인이 제출한 이 방명록이 89. 10. 3 김기설이 한 정덕이라는 가명으로 쓴 바로 그 방명록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요

답: 예.

문: 증인은 위 필적들을 제출하기 전에 민청련 소속 이효경으로부터 김기설의 필적을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서 찾아보았으나 별 것이 없어서 혹시 대유공전에 제출된 원고가 있을까 하여 찾아가 보았으나 역시 없다고 하여 되돌아온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이 제출한 방명록의 글씨와 유서를 비교 감정한 결과 서로간 이동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의 한계레신문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김시중이 방명록을 가져오면서 자기가 찢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답: 최근에 김시중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 찢은 경위에 대해 김시중으로부터 수사에 대비해서 찢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1991. 11. 26.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 증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655)

199) 총자료집 II 책 151쪽 참조.

☐자료 나-8-10 (공판기록 656~673)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8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평 1126 자살방조
91 고평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증 인 최경환
생년월일 1959. 7. 28생
주민등록번호
직업회사원
주거서울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
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증인은 피고인을 아나요.

답 : 신문이나 텔레비에서 보았으나 첫 대면입니다.

문 : 증인은 1991. 5. 8 분신자살한 김기설을 알고
있나요.

답 : 예.

문 : 증인인 1988. 9. 3 창립된 성남민주화청년연합
에서 1990. 1경 해체될 때까지 김기설과 함께 회원으
로 활동한 바 있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은 특히 성남에 거주하던 증인의 집에
거의 매주 일요일에 와서 증인의 아이와도 놀고 하면
서 증인 가족과 매우 가깝게 지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인 언젠, 어디서 처음 김기설의 분신소식
을 들었나요.

답 : 5. 8 회사출근하면서 8시 30분에서 9시 사이

에 CBS방송을 듣고 알았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의 분신소식을 듣고 곧 연대로
가 전민련 관계자 등으로부터 분신 당시의 상황을 듣
고, 증인이 알고 있는 김기설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알
려 주었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5. 8 전시무렵 연대 학생회관 3층내의
"푸른샘" 휴게실에서 있었던 김기설 분신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참관한 바 있나요.

답 : 예.

문 : 그때 김기설의 여자친구인 홍성은도 참석하였
나요.

답 : 예.

문 : 당시 기자회견 과정에서 홍성은이 김기설로부
터 분신 전날 받은 전민련 수첩 얘기도 나왔나요.

답 : 기자회견 과정에서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그
무렵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 : 당시 김기설이 한정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
도 하였으며 한양대 중퇴생으로 알려진 부분 등과 관
련하여 처음에는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점 등 서로 우
왕좌왕하며 경황이 없었지요.

답 : 예.

문 : 특히 김기설의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연락할
방도를 찾으라고 분주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러던 차에 증인과 마찬가지로 분신소식을
듣고 연대로 온 과거 성민청 회원으로 같이 일했던
이효경이 영안실과 학생회관을 왔다갔다 하다가 학생
회관 3층에서 증인을 만나게 되어 증인이 영안실 상
황이 어떠냐고 물으니 아직 가족들도 도착하지 않았
다고 대답하였나요.

답 : 예.

문 : 그래서 증인은 홍성은이 분신 전날 받았다는
김기설 수첩을 기억해내고, 전민련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택에게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 부분을 복
사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나요.

답 : 예.

문 : 그래서 김선택이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학생회
관 3층의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전민련 관계자로 보이

는 여자 한 사람이 김기설 수첩을 가지고 나와 이효
경과 함께 셋이서 복사기가 있다고 하는 3층내에 있
는 상황실로 갔지요.

답 : 예.

문 : 그런데 상황실 복사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여
증인 등은 학생회관 1층으로 내려와 그곳 복사실에서
김기설의 수첩중 떨어져 있는 전화번호란 기재부분 3
매를 2부 복사하여 한부는 증인이, 한부는 이효경이
받아 각자 전화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의 신
원을 확인하고 연락하기로 하였나요.

답 : 예.

문 : 당시 복사대금은 누가 지불하였나요.

답 : 증인이 지불하였습니다.

문 : 이효경은 위 복사본들을 영안실에 내려갔다
다시 학생회관 3층에서 증인을 만나 미확인된 부분
을 체크하였나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20-2호200) 제시.

문 : 이것이 증인이 당시 김기설의 수첩중 전화번
호란 기재부분 3매를 복사한 것이나요.

답 : 예.

문 : 위 복사본 중 "김진태 354 1030"이 기재되어
있는 복사본의 위 여백에 "홍성은 0친 사람 죽으면
연락부탁한 사람"이란 기재는 증인이 쓴 것이나요.

답 : 예.

문 : 언젠, 어떤 경위로 썼나요.

답 : 5. 8 오후 3시경 이효경과 앉아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효경이 홍성은에게 물어서 증인에게 얘기
해 주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문 : 위 복사본의 전화번호란 중 "최경환 자)308
6103 여광)762 4706"이란 부분이 있는데 증인을 가리
키는 것이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그후 계속하여 연대에 머무르면서 장
래관계일 등을 도왔나요.

답 : 예.

문 : 증인이 앞서의 수첩복사본을 변호인단에 제출
하게 된 경위가 어떤가요.

답 : 지난 달 20경 전민련 이동진이라는 사람이 제
출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 어떻게 위 복사본을 보관했나요.

답 : 그냥 회사 서랍 속에 넣고 있었습니다.

문 : 증인은 다리를 저는가요.

답 : 그렇지 않으나 가끔 노인네처럼 걷는다는 지적
을 받는데 83년에도 디스크가 있었는데 당시 의사가
무릎을 펴지 말고 허리를 구부리면서 걸으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는데 그 버릇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 : 그 당시 다리를 저는 남자가 있었나요.

답 : 못 보았습니다.

검사 송명식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이견 수첩이 검찰에 제출되기 전에 몇
차례에 걸쳐 몇부 복사되었는지 아는지요.

답 : 모릅니다.

문 : 이견 수첩사본(증제20호의 2)은 어디에 보관되
었다가 언젠 어떤 경로로 제출되었는지요.

답 : 증인이 다니는 여광출판사에 7월말경까지 보
관했다가 집으로 가져왔다가 10월 20일경 제출하였습
니다.

변호인 제출 증거서류 증제20호의 2(수첩사본) 제시.

문 : 이 수첩사본 중 "성남타사랑" 등 불펜 등으로
적힌 직장, 관계표시는 전부 증인의 필적인가요.

답 : 예.

문 : 위 표시는 모두 연락을 취한 후 또는 연락을
취하려고 증인이 기재한 것이나요.

답 : 김기설이 알게 된 관계를 확인한 후 기재한
것입니다.

문 : 이것을 가지고 연락한 적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위 수첩사본에서 한상렬이 있는 곳이 기재된
부분은 어느 곳인가요.

답 : 첫장 오른쪽 맨 위 부분입니다.

문 : 누가 기재했나요.

답: 증인이 기재했습니다.
 문: 진선생이 한상렬이라는 것을 누구로부터 들었
 나요
 답: 전민련 관계자인데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문: 증인 홍성은 등의 증언에 의하면 수첩사본중
 이 부분은 외부에 노출되면 안되는 사항이라 인재근
 등이 있는 곳에서 찢어내었다는데 오히려 증인이 제
 출한 사본에는 "한상렬 의장"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테까지 돌려 있지요
 답: 테까지 돌려 있는 것은 맞으나 이 부분이 외
 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는 듣
 지 못했습니다.
 문: 위 수첩사본을 증인의 회사 사무실에 가져 갔
 나요
 답: 예.
 문: 증인은 검찰에서 금년 5. 20. 문제의 수첩을
 제출받은 후 5. 8. 복사한 사본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
 한 사실을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김기설의 수첩이 조작되었다
 고 발표했고, 이에 대하여 전민련측에서 반박하였을
 때 바로 위 사본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사본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
 니다.
 문: 이 수첩 사본이 5. 8에 복사한 것이 사실이고
 증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수첩의 조작여부
 에 대해 중요한 증거가 아닌가요
 답: 당시는 수첩 조작시기가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문: 또한 승의여전 메모, 성남 터사랑청년학우회
 방명록, 원주 전교조창립식 방명록 등을 김기설의 필
 적이라고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도 이 수첩 사본을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요
 답: 모르겠습니다.
 문: 증인은 이견 수첩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기 전
 날인 금년 5. 19. 김현수 등이 서류상자 속에서 수첩
 을 찾아낸 후 전화번호란 20부를 복사, 이동진에게 준
 사실을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

문: 최재인, 이보은의 진술에 의하면 이견 수첩은
 5. 9. 낮에 최재인이 주민등록증과 함께 봉투에 넣은
 채 이보은에게 주어 이보은이 봉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5. 12. 김기설의 주민등록증을 꺼내려고 보니 최초
 보관시와는 달리 주민등록증이 수첩비닐카바에 들어
 있어 누군가 꺼내어 만진 흔적이 있는데, 누가 수첩을
 꺼낸 것인가요
 답: 모릅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변호인측 증거물 증제20호의 2(수첩사본) 제시.
 문: 이것이 5. 8에 복사한 것이 틀림없나요
 답: 복사본 첫장 뒷면에 "10일 6시 추모집회 ..."
 라고 기재되었는데 10일은 5. 10이고 증인이 추모집회
 에 참가한 것이 틀림없고 5. 10 이전인 9일이나 8일에
 기재한 것으로서 복사는 그 전에 한 것입니다.
 문: 그 당시 신문 등에서 유서조작 여부가 크게
 논란되고 있었는데 위 수첩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
 유는 무엇인가요
 답: 조작된 시점을 명확히 몰랐고 5. 8 이전에 조
 작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고 그렇다면 증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 조작되었다고 하는 수첩의 복사본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증인이 5. 8에 수첩을 복사하고 나서 그것이
 중요하다거나 증인에게 소용이 된다는 생각에서 책상
 서랍에 넣어둔 것인가요
 답: 김기설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줄 것에 대비하
 여 보관해 둔 것입니다.
 문: 전민련에서 잘 보관해 놓으라고 할 때 재판에
 쓰일 것으로 알았나요
 답: 직감을 했습니다.
 문: 전민련에서 복사본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경위
 를 아는가요
 답: 인재근씨가 증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인재근이 증인에게 증인 이외에 5. 8. 복사본
 을 소지하고 있는나고 물었나요
 답: 예. 그래서 증인이 증인 외 이효경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왜 수첩을 복사했나요
 답: 영안실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김기설이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복사했습니다.
 문: 원본을 가지고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
 가요
 답: 원본을 보관하던 전민련 관계자가 원본을 중요
 시 여겨 복사만을 하도록 허락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문: 91년 7월 말까지 복사본을 보관한 이유는 무
 었인가요
 답: 장례식 이후 추모제, 삼오제, 사구제 등으로 김기
 설과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보관했습니다.
 문: 수첩 복사본을 보고 직접 연락하였나요
 답: 증인이 연락하진 않고 이효경이 연락하도록
 했습니다.
 문: 그 후에도 위 사본으로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
 나요
 답: 사본으로 직접 연락한 일은 없고 증인의 다른
 수첩으로 연락했습니다.
 문: 수첩 사본 첫장 뒷면의 "복동"이라는 기재는
 누가 썼나요
 답: 증인 아버지가 기재하였습니다.
 문: 복사본은 어디에 넣어둔 것인가요
 답: 책상 위 연필꽂이에 넣어 두었습니다.
 문: 몇시에 복사하였나요
 답: 기자회견 후 2-3시경이었습니다.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인재근이 전화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답: 7월 말경이었습니다.

문: 그때 인재근이 복사본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고 물었나요
 답: 예.
 문: 그렇다면 증인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전에도 인재근이 알고 있었던 것인가요
 답: 예. 그 경위는 모르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
 다.
 문: 인재근이 잘 보관해 두라고 하여 증인집에 가
 저와 증인 책상 위 연필꽂이에 놓아두었는데 증인 아
 버지가 낙서를 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홍성은이 5. 7. 김기설로부터 수첩 원본을 받
 았고 5. 8. 12:00경에 전민련에 넘겨주었으며 그날 오
 후 2시경에 조작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진 않았다.

1991. 11. 20.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 증인 선서서 생략 <생략> (공판기록 674)

(공판기록 675~678)

* 증인(김병희, 임무영, 이효경) 소환장 우편송달보고서
<생략>

재판장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피고인 별 의견 없음.
 재판장 변론 속행.

1991. 11. 27.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자료 나-9-2 (공판기록 682~696)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9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91 고탐 1126 자살방조
 91 고탐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증인 이효경
 생년월일 1963. 6. 15생
 주민등록번호
 직업 학원 직원
 주거 경기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증인은 1988. 6경부터 상남민주화청년연합("성민청")의 준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지요

답 : 예.

문 : 성민청은 1988. 9. 3 창립되었는데 창립대회 당일 김기설이 회원으로 입회하여 1990. 1. 해체될 때까지 같은 회원으로 가깝게 지냈지요.

답 : 예.

문 : 성민청 회원으로 일하면서 김기설이 특히 증인을 누나라고 부르며 따랐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성민청이 해체된 이후에는 김기설을 만나지 않았나요.

답 :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만났습니다.

문 : 증인은 언제, 어디서 처음 김기설의 분신자살 소식을 알았나요.

답 : 5. 8 오전 10시 뉴스를 듣고 알았습니다.

문 : 당시 증인은 분신자살한 사람이 증인이 알고 있는 김기설이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었나요.

답 : 반신반의 했고 특히 뉴스에서는 나이가 어리게 나왔기 때문에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 언제, 어디서 분신한 사람이 김기설이라는 것을 알았나요.

답 : 그때 바로 택시를 타고 연대 영안실에 갔었는데 영안실에서 확인 못하고 상황실로 가보라고 하여 11시 좀 되어서 상황실에 가서 유서사본을 보고 알았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의 분신소식을 듣고 바로 연대로 와서 장례식 당일까지 김기설 분신대책위원회가 주관한 분신사후 일을 도왔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본 분신당일 상황은 전민련 관계자를 비롯하여 모두 엄청난 충격으로 우왕좌왕하며 경황이 없었지요.

답 : 예.

문 : 특히 분신 당일 초기에 김기설 가족을 비롯하여 가까운 친지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증인이 처음 영안실에 왔을 때는 텔레비를 보고 온 친구라고 하며 몇 사람이 있었을 뿐 조객이 많지 않았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그 무렵 영안실과 대책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연대 학생회관 3층 내의 총학생회 사무실 등을 왔다갔다 하며 영정준비 관계 일을 돕고 있던중, 위 학생회관 3층에서 성민청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최경환을 만났지요.

답 : 예.

문 : 최경환이 증인에게 영안실 상황을 물어 증인이 아직 가족들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니, 최경환이 마침 총학생회실쪽으로 들어가는 전민련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김기설 수첩을 복사하여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나요.

답 : 예.

문 : 그랬더니 그 전민련 관계자가 그렇게 하자고 하고 총학생회실 옆방으로 들어 갔는데, 이어서 파마머리를 하고 안경을 쓴 키가 작은 편인 젊은 여자가 수첩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학생회관 3층 내의 범국민대책회의 상황실로 갔나요.

답 : 예.

문 : 그래서 증인등 세 사람이 상황실에서 수첩을 복사하려고 하였는데, 복사기가 고장났다고 하여 학생회관 1층으로 내려가 그곳 복사실에서 수첩 뒷부분의 떨어져 있는 전화번호 기재부분 3매를 복사하였나요.

답 : 예.

문 : 그곳에서 수첩 전화번호 기재 부분 3매에 대한 복사를 2부하여 증인이 1부, 최경환이 1부 가졌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중제 20-1호201) 제시

문 : 이것이 당시 수첩을 복사하여 증인이 소지한

201) 총자료집 II책 854쪽 참조.

복사본인가요.

답 : 예.

문 : 이 복사본의 전화번호 기재중 "이효경 (0342) 46. 7604 학)755. 4256"은 증인의 연락처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위와 같이 수첩을 복사하기 이전에 김기설의 수첩을 본 일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위 복사본을 가지고 영안실로 내려가 당시 영안실에 있던 한송흠 등 김기설의 친구 및 성남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며, 다시 학생회관 3층으로 가 최경환과 같이 총학생회실 소파에 앉아 서로의 복사본을 보며 미확인사항을 체크해 나갔지요.

답 : 예.

문 : 위 복사본에 보라색 펜으로 기재되어 있는 "터사랑", "민청", "성남", "전민련" 등의 표시는 당시 확인과정에서 증인이 표시한 것인가요.

답 : 예.

문 : "대유", "건대", "파주친구" 등의 글씨는 어떤

가요.
 답 : 확인과정에서 "대유", "건대"는 권범제가 썼고 "파주친구"는 한송흠이 썼습니다.

문 : 증인은 당시 전화번호란의 사람이름 위에 있는 동그라미 표시와 동그라미 속에 빗금친 것 등이 무슨 뜻인지도 확인하였나요.

답 : 예.

문 : 어떻게 확인하였나요.

답 : 홍성은이 0은 연락을 해 주어야 할 사람, 빗금친 부분은 꼭 연락해 주어야 할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문 : 그리고 이 복사본중 "박경민 236. 1230 교270" 기재부분 윗쪽이 찢어져 나간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 : 진선생이 누군가 이상해서 물었더니 전민련 관련 남자가 "한상렬 의장님인데 수배중이니 찢는 게 좋다"고 하여 찢었습니다.

문 : 증인은 위 복사본을 이용하여 김기설 장례 전까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였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그후 위 복사본을 계속 소지하고 있다
가 10월 초순경 전민련의 인재근이 증인에게 수첩 복사본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 가지고 있다고 확인해준 적이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그동안 수첩 복사본을 계속 소지하게 된 경위가 어떤가요

답 : 김기설의 다음 주기 기념때 다시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소지하였습니다.

문 : 그러다가 10. 24 전민련의 이동진을 만나 동인을 통하여 변호인단에 제출하였지요

답 : 예.

문 : 당시 이동진이 증인에게 전민련도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필적자료 정리 관계로 수첩 복사본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이 수감된 후 수첩 복사본을 찾으라고 하여 그때부터 수첩 복사본 소지자를 찾게 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해준 바 있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이동진을 만날 때까지는 이견 수첩 복사본이 어째서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있었지요

답 : 예.

문 : 즉 증인은 그동안 이 사건에 관하여 전민련 관계자 등으로부터 특별히 듣거나 접촉한 바가 없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형편에서, 수첩이 조작되었다는 검찰 발표도 피고인이 수첩을 베껴써서 조작하였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증인이 가지고 있는 복사본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5. 8 연대 가서 김기설 어머니를 만난 일이 있나요

답 : 예.

문 : 그때 김기설 어머니가 김기설에 관해 얘기해 주었나요

답 : 예. 어머니는 몹시 슬픈 표정이었는데 김기설을 4-5살 때부터 키웠는데 옆에 끼고 자면 잘 잤으며, 없는 형편이어서 돈을 안주면 학교에 안가곤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 송명식

증인에게

문 : 이견 수첩이 검찰에 제출되기 전에 몇차례 걸쳐 몇부 복사되었는지 아는지요

답 : 모릅니다.

문 : 이견 수첩 사본(중제20호의 1)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가 언제 어떤 경로로 제출되었는지요

답 : 5. 8부터 5. 12까지 증인 가방속에 넣어두었다가 5. 12부터 증인 책상서랍에 넣어 보관하였으며 10. 24 전민련의 이동진씨에게 전화연락이 와서 사무실에 가서 주었습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중제20호의 1 제시

문 : 이 수첩사본 옆에 붙편 등으로 쓰인 부분은 왜 기재한 것이지요

답 : 기설이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 : 위 수첩사본에 증인의 이름도 있고 그 옆에 "민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누가 기재하였나요

답 : 모릅니다.

문 : 그렇다면 증인 손에서 떠났었나요

답 : 권법계, 한송홍 등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증인은 그 자리에 항상 있었으므로 증인의 손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문 : 뒷장 후상단을 찢을 때 최경환이 옆에 있었나요

답 : 없었습니다.

문 : 증인은 홍성은 등이 증언에 의하면 수첩 사본 중 한상렬이 있는 곳이 기재된 부분은 외부에 흘러나 가면 안되는 사항이라고 전민련 관계자가 내었다는데, 다른 수첩사본도 찢었나요

답 : 모릅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중제20-2호(202) 제시

문 : 최경환이 보관하였다는 이 수첩 사본은 찢어 지지도 않고 오히려 한상렬 의장이라고 되었는데 이것은 외부에 흘러나가면 안된다고 하여 찢었다는데, 그렇다면 왜 최경환이가 사본했다는 부분에는 왜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의심이 안 생기나요

답 : 모르겠습니다.

문 : 증인은 중앙대학에 다니는 김병희에게 5월경

202) 총자료집 II책 858쪽 참조.

전화로 김기설의 필적을 찾아보라고 한 사실이 있는
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검찰에서 금년 5. 20. 문제의 수첩을 제출받은 후 절취선이 안 맞는 것을 확인하고 5. 8. 이 사본한 것도 제출해 달라고 전민련측에 요구한 사실을 아는지요

답 : 모릅니다.

문 : 증인은 검찰에서 망 김기설의 수첩이 조작되었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하여 전민련측에서 반박하였을 때 바로 위 사본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
가요

답 : 이 사건에 대하여 누구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증인 혼자 신문을 통해 알았는데 피고인이 자기 수첩을 김기설의 수첩이라고 제출한 것으로 알았으며 그것이 조작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 강기훈이 자기 수첩을 김기설 것으로 제출하였다고 증인이 이해했다면 수첩 사본에는 김기설이 아
는 사람들이 적혀 있었으므로 김기설의 것이 명백하므로 전민련에 갖다 주어 공개했어야 되질 않은가요

답 : 서준식이 수첩은 강기훈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한 신문을 보았으며 전민련측에서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또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문 : 또한 송의여전 메모, 성남 터사랑청년학우회 방명록, 원주 전교조창립식 방명록 등을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도 이 수첩 사본을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요

답 : 이동진을 만났는데 이동진씨가 자기들도 수첩에 대하여는 착안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이견 수첩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기 전 날인 금년 5. 19. 김현수 등이 서류상자속에 이견 수첩을 찾아낸 후 전화번호란 20부를 복사, 이동진에게 준 사실을 아는지요

답 : 모릅니다.

문 : 그후 명동성당에서 이동진이 수첩 원본을 받아 또다시 여러부 복사한 사실을 아는지요

답 : 모릅니다.

문 : 최재인, 이보은의 진술에 의하면 이견 수첩은 5. 9. 낮에 최재인이 주민등록증과 함께 봉투에 넣은 채 이보은에게 주어 이보은이 봉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5. 12 김기설의 주민등록증을 꺼내려고 보니 최초 보관시와 달리 주민등록증이 수첩비닐카바에 들어 있어 누군가 꺼내어 만진 흔적이 있는데, 증인이 5. 9.에서 5. 12. 사이 범대위 주변에 있으면서 누가 수첩을 꺼낸 것을 본 일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5. 8 연대 상황실에 가서 유서 사본을 보고 사망한 사람이 김기설이라고 확인했다고 진술했는데, 평소 김기설의 글씨를 많이 보아 오고 확인하였나요

답 : 예. 88년부터 성민청에서 90년까지 김기설과 함께 일했는데 김기설은 홍보부원 및 교선부장으로 함께 홍보물을 봉투에 써 붙이기도 했고 대자보도 같이 쓰고 김기설이 상황일지를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어 김기설의 글씨를 알고 있습니다.

문 : 김기설의 정자체와 흘림체를 다 아는지요

답 : 예.

문 : 어느 때 정자체를 쓰고 어느 때 흘림체를 쓰는
가요

답 : 대자보 등 큰 글씨와 글씨 적을 때는 정자체를 쓰고 사적인 글을 쓸 때는 흘림체를 씁니다.

문 : 진선생에 관해 의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진선생을 의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

답 : 전화번호가 이상하게 0002라고 기재되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문 : 이동진이 증인이 수첩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요

답 : 인재근이 증인이 가졌다고 얘기했다고 이동진이 말했습니다.

문 : 인재근과 증인은 평소 접촉이 있었나요

답 : 없었습니다. 증인은 인재근을 알고 있으나 인재근이 증인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치 않았는데 인재근이 최경환을 통해 증인이 수첩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문 : 수첩 원본을 찢었나요

답 : 모릅니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수첩 사본 옆에 보라색으로 쓴 것은 증인이 전부 쓴 것이 아니라 권범재, 한송흠 등과 확인하는 과정에서 표시하기 위해 나누어쓴 것이지요

답 : 예.

문 : "민청"이라는 것은 증인이 쓰지 않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쓴 것인가요

답 : 예.

1991. 11. 27.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 증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697>

서울형사지방법원 통역인 신문 조서

사 건 91 고평 1126 자살방조
91 고평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피 고 인 강 기 훈

재판장판사 노 원 옥

판 사 정 일 성

판 사 이 영 대

법원사무관 맹 일 순

일 시 1991. 11. 27. 10:00

장 소 417호 법정

신문에 참여한 사람

검 사 신상규, 송명석, 임철, 조균석

피고인 강 기 훈

변호인 김창국, 박연철, 이석태, 유현석

통역인 허 초

생년월일 1935. 8. 15생

직 업 사법연수원 강사

주 거 서울 종로구 부암동 362-17

재판장

통역인(번역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 149조에 해당하는가에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허위 통역(번역)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재판장

통역인에게

문 : 통역인의 학력 및 경력은 어떠한가요

답 : 1970. 3.에 일본 동경대학원 일본문화과를 졸업하고 1971년부터 1987년까지 국제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1971년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일본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 :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의 통역을 한 경험이 있나요

답 : 여러번 부탁을 받았으나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문 : 법정용어에 대하여는 잘 아는지요

답 : 예, 약 21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들에게 일본 판례 등을 번역해 가르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문 : 이건 일본 증인 오오니시 요시오의 증언을 통역할 수 있는가요

답 : 예,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증인 오오니시 요시오에 대한 통역 감정을 명하니

통역인

위 명에 응락하다

1991. 11. 27.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 통역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670)

☐자료 나-9-4 (공판기록 701~749)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9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교합 1126 자살방조
91 교합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증 인 오오니시 요시오 (大西芳雄)
생년월일 1918. 8. 21. 생
주민등록번호
직 업 동경 국립박물관 고문
주 거 日本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
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 증인은 1942년에 와세다대학 문학부를, 1948년
에 동 대학원 예술학과를 각 졸업하고 그해 4월에 동
경국립박물관 문부기간으로 들어가 1982년 퇴직시까
지 근무하였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답 : 예.
문 : 위 박물관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습니까.
답 : 외부로부터 박물관으로 미술품을 사들이고 그
것이 진짜나 가짜나 여부를 감정을 하였습니까.

문 : 고문자 감정도 했나요.
답 : 예. 일기장, 편지, 액자 등을 감정했습니다.

문 : 증인은 대학에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언제 어느 대학에서 무슨 강의를 하였습니까.

답 : 1970년 후반기부터 지바공업대학에서 예술과
미술사를 강의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일본국 재판소 또는 수사기관의 의뢰
를 받아 필적감정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답 : 예.
문 : 언제부터 그와 같은 감정을 하였으며 지금까
지 대략 몇건이나 하였습니까.

답 : 1951년부터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문 : 1년에 몇 건이나 하나요.

답 : 최근에는 30여건 정도 하였습니다.
문 : 지금도 재판소나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필
적감정을 하고 있습니까.

답 : 예, 하고 있습니다.
문 : 일본에서 필적감정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
이 있습니까.

답 : 예.
문 : 일본에서 필적감정 업무에 종사하려면 자격시
험에 합격하거나 면허를 받아야 합니까.

답 : 없습니다.
문 : 일본국 경시청은 산하에 필적감정을 전담하는
감정기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 : 예.
문 : 증인은 1974년 일본국 경시청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경시총감의 감사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
까.

답 : 예.
문 : 당시 필적감정에 대한 증인의 공로 때문에 감
사장을 받은 것입니까.

답 : 예.
문 : 당시 필적감정인으로서 증인 외에 또 감사장
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답 : 없었습니다.
문 : 증인은 피고인 강기훈과 지난 5월 8일 자살한
김기철을 알고 있습니까.

답 : 모릅니다.
문 : 언제 누구로부터 위 두 사람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까.

답 : 없습니다.
문 : 이 감정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지요.

답 : 예.
문 : 언제 어떻게 입수하였습니까.

답 : 약 한달전에 일본기독교협의회에서 주어 받았
습니다.
문 : 그 내용을 검토하였나요.

답 : 예.
문 : 위 감정서의 자료로 한 필적의 사진들로
서 감정서에 첨부한 것이지요.

답 : 예.
문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홍콩에 본부를
둔 아시아기독교협의회에 감정을 의뢰하고, 아시아기
독교협의회는 일본기독교협의회에 의뢰하였으며, 일본
기독교협의회에서 증인에게 의뢰하여 이건 감정을 하
게 된 것이지요.

답 :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 이 감정서는 1991년 7월 9일에 작성하였는데
증인이 감정의뢰를 받아 감정서를 작성하기까지 며칠
이나 걸렸습니까.

답 : 약 15일간 걸렸습니다.
문 : 그 감정을 하는 동안 다른 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이건 감정만을 하였습니까.

답 :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문 : 위 감정을 하는데 사용한 기구나 도구는 무엇
이었으며 보조자도 있었습니까.

답 : 확대경, 실체현미경 그리고 증인이 직접 합성
수지판으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였으며, 재일 한국인 4
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2인 1조로 하여 2개조를
불러서 보조하게 하였습니다.
문 : 증인이 감정한 필적자료중 '유언서' '수첩'
'이력서'는 각 사본이었고 나머지는 원본이었지요.

답 : 예.
문 : 사본에 의하여도 필적감정이 가능합니까.
답 : 예.
문 : 원본이 아니면 필적감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까.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위 감정자료가 3개가 사본이었기 때문
에 감정에 특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답 : 없었습니다.
문 : 증인은 한글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었습니까.
답 : 없었습니다.
문 : 증인은 일본어가 아닌 다른 문자의 필적에 대
한 감정을 하여 본 사실이 있습니까.
답 : 예.

203) 총자료집 I 책 854쪽 참조.

문 : 어느나라 글자를 몇번이나 감정하였나요.
답 : 영어감정을 10번 이상 했습니다.

문 : 위 필적들이 한글이었기 때문에 감정에 특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답 :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문 : 위 필적자료들이 한글이었기 때문에 일본어
필적감정을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지는 않았습
니까.

답 : 거의 같은 시간에 되었습니다.
문 : 감정자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인이
일본어 필적을 감정하는데 한건당 보통 얼마의 시간
을 소요합니까.

답 : 10일에서 2주일 걸립니다.
문 : 증인의 감정서를 보면 감정사항, 감정주문, 감
정이유, 결론 등의 항목구분과 감정내용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일본에서 통상 사용하고 있
는 감정서의 방식입니까.

답 : 예.
문 : 증인의 감정서중 감정이유에 의하면 1)사선의
필법 2)'ㄹ'의 필법 3)'ㅈ', 'ㅊ'의 필법 4)'ㄱ'의 필
법 5)'ㅂ'의 필법 등 5개의 비교항목을 제시하고 있
는데 그 5개 항목의 필법비교 결과만을 기재한 이유
가 있습니까.

답 :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본어도 5개
항목만 하면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 : 증인은 1)유언서의 필적은 2)수첩 및 5)송의여
전 메모 6)방명록 노트 7)상황일지 8)봉투 9)이력서를
쓴 김기철의 필적과 같다고 감정하였는데 그와 같
은 결론을 얻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 김기철의 유언서 필적과 다른 김기철이 쓴 감
정자료와 비교하면 감정자료에 대한 특징이 감정서에
써 있는 바와 같습니다.
문 : 증인은 한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
한 감정서를 보았습니까.
답 : 예.
문 : 언제 어떻게 입수하였습니까.
답 : 약 한달전에 일본기독교협의회에서 주어 받았
습니다.
문 : 그 내용을 검토하였나요.

답 : 예.
문 : 증인의 감정서중 감정이유에 의하면 1)사선의
필법 2)'ㄹ'의 필법 3)'ㅈ', 'ㅊ'의 필법 4)'ㄱ'의 필
법 5)'ㅂ'의 필법 등 5개의 비교항목을 제시하고 있
는데 그 5개 항목의 필법비교 결과만을 기재한 이유
가 있습니까.

답 :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본어도 5개
항목만 하면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 : 증인은 1)유언서의 필적은 2)수첩 및 5)송의여
전 메모 6)방명록 노트 7)상황일지 8)봉투 9)이력서를
쓴 김기철의 필적과 같다고 감정하였는데 그와 같
은 결론을 얻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 김기철의 유언서 필적과 다른 김기철이 쓴 감
정자료와 비교하면 감정자료에 대한 특징이 감정서에
써 있는 바와 같습니다.
문 : 증인은 한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
한 감정서를 보았습니까.
답 : 예.
문 : 언제 어떻게 입수하였습니까.
답 : 약 한달전에 일본기독교협의회에서 주어 받았
습니다.
문 : 그 내용을 검토하였나요.

답 : 예.
문 : 증인의 감정서중 감정이유에 의하면 1)사선의
필법 2)'ㄹ'의 필법 3)'ㅈ', 'ㅊ'의 필법 4)'ㄱ'의 필
법 5)'ㅂ'의 필법 등 5개의 비교항목을 제시하고 있
는데 그 5개 항목의 필법비교 결과만을 기재한 이유
가 있습니까.

답 :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본어도 5개
항목만 하면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 : 증인은 1)유언서의 필적은 2)수첩 및 5)송의여
전 메모 6)방명록 노트 7)상황일지 8)봉투 9)이력서를
쓴 김기철의 필적과 같다고 감정하였는데 그와 같
은 결론을 얻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 김기철의 유언서 필적과 다른 김기철이 쓴 감
정자료와 비교하면 감정자료에 대한 특징이 감정서에
써 있는 바와 같습니다.
문 : 증인은 한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
한 감정서를 보았습니까.
답 : 예.
문 : 언제 어떻게 입수하였습니까.
답 : 약 한달전에 일본기독교협의회에서 주어 받았
습니다.
문 : 그 내용을 검토하였나요.

답 : 예.
문 : 증인의 감정서중 감정이유에 의하면 1)사선의
필법 2)'ㄹ'의 필법 3)'ㅈ', 'ㅊ'의 필법 4)'ㄱ'의 필
법 5)'ㅂ'의 필법 등 5개의 비교항목을 제시하고 있
는데 그 5개 항목의 필법비교 결과만을 기재한 이유
가 있습니까.

답 :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본어도 5개
항목만 하면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 : 증인은 1)유언서의 필적은 2)수첩 및 5)송의여
전 메모 6)방명록 노트 7)상황일지 8)봉투 9)이력서를
쓴 김기철의 필적과 같다고 감정하였는데 그와 같
은 결론을 얻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 김기철의 유언서 필적과 다른 김기철이 쓴 감
정자료와 비교하면 감정자료에 대한 특징이 감정서에
써 있는 바와 같습니다.
문 : 증인은 한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
한 감정서를 보았습니까.
답 : 예.
문 : 언제 어떻게 입수하였습니까.
답 : 약 한달전에 일본기독교협의회에서 주어 받았
습니다.
문 : 그 내용을 검토하였나요.

답 : 예.
문 : 증인의 감정서중 감정이유에 의하면 1)사선의
필법 2)'ㄹ'의 필법 3)'ㅈ', 'ㅊ'의 필법 4)'ㄱ'의 필
법 5)'ㅂ'의 필법 등 5개의 비교항목을 제시하고 있
는데 그 5개 항목의 필법비교 결과만을 기재한 이유
가 있습니까.

답 :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본어도 5개
항목만 하면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 : 증인은 1)유언서의 필적은 2)수첩 및 5)송의여
전 메모 6)방명록 노트 7)상황일지 8)봉투 9)이력서를
쓴 김기철의 필적과 같다고 감정하였는데 그와 같
은 결론을 얻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 김기철의 유언서 필적과 다른 김기철이 쓴 감
정자료와 비교하면 감정자료에 대한 특징이 감정서에
써 있는 바와 같습니다.
문 : 증인은 한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
한 감정서를 보았습니까.
답 : 예.
문 : 언제 어떻게 입수하였습니까.
답 : 약 한달전에 일본기독교협의회에서 주어 받았
습니다.
문 : 그 내용을 검토하였나요.

답 : 예.
문 : 증인의 감정서중 감정이유에 의하면 1)사선의
필법 2)'ㄹ'의 필법 3)'ㅈ', 'ㅊ'의 필법 4)'ㄱ'의 필
법 5)'ㅂ'의 필법 등 5개의 비교항목을 제시하고 있
는데 그 5개 항목의 필법비교 결과만을 기재한 이유
가 있습니까.

답 :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본어도 5개
항목만 하면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 : 증인은 1)유언서의 필적은 2)수첩 및 5)송의여
전 메모 6)방명록 노트 7)상황일지 8)봉투 9)이력서를
쓴 김기철의 필적과 같다고 감정하였는데 그와 같
은 결론을 얻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 김기철의 유언서 필적과 다른 김기철이 쓴 감
정자료와 비교하면 감정자료에 대한 특징이 감정서에
써 있는 바와 같습니다.
문 : 증인은 한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
한 감정서를 보았습니까.
답 : 예.
문 : 언제 어떻게 입수하였습니까.
답 : 약 한달전에 일본기독교협의회에서 주어 받았
습니다.
문 : 그 내용을 검토하였나요.

204) 총자료집 I 책 860쪽 참조.

답 : 예.

문 :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론은 증인의 감정 결과와 반대인데 증인은 증인의 감정결론이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답 : 예.

문 : 증인은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중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몇가지만 지적해 줄 수 있습니까.

증인이 제출한 별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사본을 보이면서

답 : 이 사본에 증인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자살한 사람의 글씨이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강기훈의 글씨인데 우선 첫 장을 보면 자살한 사람의 글씨는 종획이 사선인데 강기훈은 직선이며 들쭉장을 보면 "위"자의 "ㄷ" 중 "1"부분을 자살한 사람은 "V"처럼 날카롭게 빠치거나 "1"처럼 그대로 서 있는 반면 강기훈은 "J"처럼 아래로 빠치거나 "L"처럼 천천히 빠친 점이 다른 바와 같이 자살한 사람의 글씨와 강기훈의 글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서는 두 글씨가 같다고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변호인 유현식

증인에게

문 : 필적감정은 문자의 형태에 대한 특징을 검사하는 작업인데 그 글자의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글자의 형태나 필법이 문제이기 때문에 글자가 영어이든 한글이든 한자이든 발음을 할 줄 모르더라도 감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답 : 예.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할 때 현미경, 확대투영기, 비교확대기,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 등을 사용했다고 쓰여 있는데 일반적으로 필적 감정하는데 이런 기계가 필요하고 사용되는 것인가요.

답 : 현미경은 필적감정하는데 쓰이나 나머지 기구들은 쓰이지 않으며 도장감정할 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검사 송명식

증인에게

문 : 증인이 감정한 감정자료 4항(강기훈의 필적 및 8항(봉투)는 현재 변호인단에 의하여 제출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디에 있나요.

답 : 감정을 마치고 일본 기독교협의회에 돌려주었습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9-1호(감정서) 제2면 제1항부터 제12항(205)까지 제시

문 : 증인은 수첩, 승의여전 메모, 방명록 노트, 상황일지, 봉투, 이력서 등 6가지 필적이 모두 김기설이 쓴 필적이라는 것을 전제 한 후 유서와 대조감정하였지요.

답 : 예.

문 : 위 6가지 필적 등이 김기설 한 사람의 동일 필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감정을 하지 않았지요.

답 : 감정하였습니다.

문 : 그렇다면 왜 감정서에 위 6가지 필적이 감정의뢰 사항으로 "김기설의 필적이다"라고 전제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의 감정주문에 위 6가지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인지에 대하여 주문으로 나와 있지 않은가요.

답 : 위 6가지의 필적은 김기설의 필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감정하였습니다.

문 : 그렇다면 위 6가지 필적은 김기설의 필적이라는 전제 아래 감정한 것이고 위 6가지 필적이 과연 김기설 한 사람의 필적인지에 대하여는 감정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답 : 예. 이미 김기설의 필적이라는 것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그에 관한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 : 누가 위 6가지가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증인에게 알려주었지요.

답 : 일본의 성명불상 NCC 관계자가 알려주었습니다.

문 : 위 6가지 필적중 특히 수첩, 승의여전 메모,

205) 총자료집 I 책 576쪽 참조.

방명록노트의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검증하였는지요.

답 : 그런 사실은 모르고 감정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유서와 이력서 및 수첩은 각 사본을 감정자료로 삼아 감정하였지요.

답 : 예.

문 : 원래 사본으로 감정을 하면 필기구의 종류나 복사기의 성능, 상태에 따라 필압의 형태나 필적의 미세한 특징이 잘 현출되지 아니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있지요.

답 : 예.

문 : 원래 필적감정에 있어서는 필기구의 종류에 따라 종이에 닿는 각도 등에 차이가 있어 필적의 변화상태가 현출되게 마련이므로 필기구가 무엇인가는 필적감정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답 : 필기구의 굵기에 따라 약간 다르나 필법 자체는 그다지 다르지 않아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적이 필기구에 따라 조금 변하는데, 연필과 볼펜은 같고 붓, 만년필의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9-1호(감정서) 제3면 3항(206)을 제시

문 : 증인은 2통의 유서의 필적은 "만년필과 같은 필기구"로 썼다고 감정서에 기재하였지요.

답 : 예.

검찰측 압수물 증제1-6호(유언서 2장)을 제시

문 : 이 유서가 만년필과 같은 필기구로 쓰였는지 아니면 싸인펜으로 쓰였나요.

답 : 싸인펜으로 쓰였습니다.

문 : 왜 위 유서의 필기구에 관하여 싸인펜으로 쓰였음에도 "만년필과 같은 필기구"로 쓰였다고 감정하였나요. 실수인가요, 아니면 고의인가요.

답 : 원본을 보지 못하고 사본으로 감정하였기 때문에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9-1호(감정서) 3면 16항(207)을 제시

문 : 증인은 감정자료 중 수첩은 "볼펜과 같은 필기구"로 "그때그때" 써넣은 것이라 감정하였지요.

206) 총자료집 I 책 577쪽 참조.

답 : 예.

검찰 압수물 증제 11-1호(전민련 제출 수첩) 4월22일부터 28일까지의 일정표란(208)과 "경실련", "이동진"으로 시작된 전화번호란(209)을 제시

문 : 증인은 이 수첩원본중 이면이 증인이 감정자료로 쓴 면은 증인의 눈으로 확인하고 과연 필기구가 증인이 감정한 것처럼 볼펜인가요, 아니면 연필, 하이테크포인트펜, 만년필인지 답변해 주시요.

답 : 연필, 곤색볼펜, 녹색볼펜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문 : 전화번호 기재한 것이 만년필이 아닌가요.

답 : 만년필이 아닙니다.

문 : 증인이 방금 확인한 전화번호란 기재부분이 과연 증인이 감정한 것처럼 "그때그때"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동시에 한꺼번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지 증인의 입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전화번호는 한번에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 왜 수첩의 필기구와 전화번호란의 기재형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감정하게 되었나요.

답 : 사본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9-1호(감정서) 3면 21항(210)을 제시

문 : 증인은 승의여전메모가 "볼펜"으로 기재한 것으로 감정서에 기재하였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 5호(메모)211) 제시

문 : 증인은 위 승의여전메모를 증인의 눈으로 확인하고 사용된 필기구가 증인이 감정한 것처럼 볼펜인가요, 아니면 하이테크포인트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볼펜인 것 같습니다.

문 : 볼펜으로 쓰면 이렇게 퍼질 수가 있나요.

답 : 처음 쓸 때는 가늘지만 자꾸 쓰다보면 굵어져 퍼질 수도 있습니다.

문 : 볼펜으로 쓰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207) 총자료집 I 책 577쪽 참조.

208) 총자료집 I 책 717쪽 참조.

209) 총자료집 I 책 774쪽 참조.

210) 총자료집 I 책 577쪽 참조.

211) 총자료집 II 책 798쪽 참조.

답 : 기구가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문 : 일본에서 메모 원본을 감정할 때 기구를 가지고 감정하였나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9-1호(감정서) 3면 23행²¹²⁾ 제시

문 : 증인은 자료 6의 노트가 "볼펜"으로 쓴 것이라고 감정하였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호(방명록)²¹³⁾ 제시

문 : 증인은 위 노트중 증인이 감정한 부분, 즉 연필로 테를 두른 부분이 증인이 감정한 바와 같이 볼펜으로 쓴 것인가요, 아니면 하이테크포인트펜으로 쓴 것인가요

답 : 증인은 하이테크포인트펜이란 말을 이 범정에서 처음 들었는데, 이 방명록은 하이테크포인트펜으로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 증인은 하이테크포인트펜이라는 말은 이 범정에서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위 노트중 연필로 쓰인 부분이 하이테크포인트펜인지 바로 알고 볼펜과 구분, 답변하였는가요

답 : 육안으로 보아도 볼펜은 끝에 불이 있고 하이테크포인트펜은 불이 없습니다. (이때, 재판장이 통역인에게 증인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언하였으니 말을 이리저리 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증언토록 주의를 환기시키라고 지시)

문 : 증인은 위 승의여전 메모와 방명록 노트 원본을 가지고 감정하였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 19-1호(감정서) 제3면 8행 및 17행, 18행²¹⁴⁾ 등을 제시

문 : 증인은 한글을 해서체와 행서체로 구별하고 이를 기초로 감정하였지요

답 : 예.

문 : 어떤 기준으로 한글을 해서체와 행서체로 구분하였는가요

답 : 제일 한국인한테 한글에 정자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212) 총자료집 I책 577쪽 참조.

문 : 한글에는 증인이 구별한 바와 같은 해서체와 행서체라는 필체의 구분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 마음대로 해서체와 행서체를 구분하여 가정할 수 있는가요

답 : 제일 한국인 말이 활자체로 정성껏 쓴 것이 있고 흘려서 쓴 것이 있다고 하여 일본 글씨를 구분하듯이 해서체와 행서체로 구분하였습니다.

문 : 증인이 작성한 감정서 3면 밑에서 3행에 보면 "방명록용 노트에 ... 속필을 사용하여 정성껏 행서체로 쓰고 있다"고 감정되어 있는데, 정성껏 쓴 것이 흘려쓴 것이라는 말인가요

답 : 정성껏 쓴 것인데 행서체라는 뜻입니다.

문 : 그렇다면 증인이 감정시에 사용한 해서체와 행서체라는 의미는 정서체와 흘림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한글에 해서체와 행서체라는 별개로 구분되는 필체가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전제해 놓고 감정한 것이 아닌가요

답 : 한글에도 해서체와 행서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감정을 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종선의 방향을 이번 필적감정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 19-1호(감정서) 제3면 13행, 14행²¹⁵⁾ 제시

문 : 증인은 유서의 종선에 대하여 "수직과 좌하방으로 사선을 그어내리는 2가지의 필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감정하였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9-2호(감정물건 사진첩) 제2면, 제5면²¹⁶⁾을 제시

문 : 그리고 유서중 좌하방으로 그어내리는 종선을 16군데 표시하였지요

답 : 예.

검찰 압수물 증제1-6(유서) 앞장 제시

문 : 증인은 이 유언서 앞장의 4행 "계", 13행 "이",

213) 총자료집 I책 577쪽 참조.
 214) 총자료집 I책 577쪽 참조.
 215) 총자료집 I책 577쪽 참조.
 216) 총자료집 I책 586쪽 참조.

"가"의 종선이 좌하방으로 된 것인지 우하방으로 된 것인지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요

답 : "계"는 수직이고 "이", "가"는 우하방입니다

검찰압수물 증제 1-6호(유서) 뒷장 제시

문 : 증인은 이 유언서 뒷장의 1행 "아", 4행 "가", 7행 "계", 8행 "됨", 14행 "기"의 종선이 좌하방으로 된 것인지 우하방으로 된 것인지 확인하고 대답하시요

답 : 전부 우하방입니다.

문 : 이와 같이 유서에도 종선이 우하방으로 된 부분이 무려 28군데가 발견되는데, 증인은 왜 16군데 좌하방으로 종선을 긋는 부분만 찾아 표시한 후 유언서에는 종선이 수직과 좌하방의 2가지 필법만이 있다고 감정서에 기재하였는가요

답 :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었기 때문이고 사본을 어느 방향으로 했는지 또한 종이를 어떤 방향으로 놓고 썼는지 몰라 우하방으로 된 것은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 19-2호 감정물건 사진첩 증 유서 사본 사진²¹⁷⁾ 제시

문 : 이 중에 우하방이 없는가요

답 : 있습니다.

문 : 증인이 감정한 감정물건 사진첩 사본 사진에도 우하방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원본을 보지 않고 사본을 보아 우하방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는 진술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그러면 왜 감정서에 우하방이 있다는 것을 기재하지 않았나요

답 : 피센트로 좌하방이 많기 때문입니다.

문 : 감정서에는 좌하방과 수직 2가지만 있다고 쓰였는데 우하방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서 무시하고 그랬는가요, 아니면 우하방이 있는 것을 몰랐는가요

답 : 감정서에도 우하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 : 그러면 사실과 다르게 감정한 것이 아닌가요

답 : 비율이 좌하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문 : 당시에는 비율 문제를 논하지 않다가 이제와

217) 총자료집 I책 585쪽 참조.

서 비율을 얘기하나요

답 : 감정 방법을 쓸 때 항상 비율을 써넣어 놓지는 않습니다.

문 : 증인의 시력과 경력으로는 우하방으로 긋는 종선을 찾아내지 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찾고서도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고의로 이를 묵살한 것인가요

답 : 수직과 좌하방이 많은 것이 특징이어서 그렇게 감정하였습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9-1호(감정서) 4면 5행²¹⁸⁾ 제시

문 : 증인은 '김기설이 쓴 각 문자의 필법을 보면 ... 종선에서는 "수직과 좌하방"으로 경사하는 필법을 쓰고 있다'고 감정하였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5호(메모)²¹⁹⁾ 제시

문 : 증인은 김기설이 쓴 것을 전제로 감정한 이 메모중 4행 "지", 7행 "회", 9행 "회", 10행 "기" 등의 종선이 증인이 감정한대로 좌하방으로 되어 있으나, 아니면 우하방으로 되어 있나요

답 : 우하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 위 메모만 예로 들어도 우하방으로 종선이 내려가는 것이 17군데나 나오는데, 증인은 우하방이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위 메모의 종선의 필법이 수직 또는 좌하방으로 경사되어 있다고 감정하였는가요

답 : 감정 당시에는 수직 또는 좌하방만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했습니다.

문 : 글자 한자 한자 세심히 보고 감정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별하여 감정한 것인가요

답 : 전체적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 19-2호(감정물건 사진첩) 14면²²⁰⁾ 제시

문 : 그렇다면 증인이 한자 한자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지요

답 : 방안지라는 기구에 대고 본 것인데, 한자 한자 본 것은 아닙니다.

218) 총자료집 I책 588쪽 참조.
 219) 총자료집 II책 798쪽 참조.
 220) 총자료집 I책 599쪽 참조.

문 : 증인은 위 메모중 9행 "전농장립 1주년 기념 대회"에서 "1"자가 좌하방으로 기울었다고 표시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왜 "1"자가 한글 글자가 아니고 아라비아 숫자라는 사실을 아는가요

답 : 예.

문 : 아라비아 숫자 "1"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좌하방으로 쓰는 사실을 아는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9-1호(감정서) 제4면 15행²²¹⁾을 제시

문 : 증인은 강기훈이 쓴 것을 전제로 감정한 옥증편지의 종선에서는 "수직과 우하방으로" 경사하는 필법을 사용한다고 감정하였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5-10호(엽서)²²²⁾ 제시

문 : 이 봉합엽서중 2면 13행에 "에" 및 20행 "해" 등이 우하방으로 되어 있으나, 아니면 좌하방으로 되어 있나요

답 : 모두 좌하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 증인이 위 봉합엽서중 좌하방으로 경사된 종선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를 발견하고도 은폐한 것인가요

답 :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필세에 따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강기훈에게 1991. 5. 명동성당에서 시필한 유서내용 사본²²³⁾을 제시하고 당시 자필로 시필한 것임을 확인한 후 증인에게 제시

문 : 이 사본중 제2행 "어", 제5행 "계", 제9행 "해", 제11행 "어" 등의 종선이 우하방으로 내려 그어 있으나, 아니면 좌하방으로 내려 그어 있나요

답 : 모두 좌하방입니다.

문 : 강기훈의 필법에도 종선을 좌하방으로 내려 긋는 부분이 13개소 발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필세에 따라 좌하방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문 : 결국 종선의 필법에 관하여 보면 증인의 감정

221) 총자료집 I 책 578쪽 참조.

내용과는 달리 유서이든 강기훈의 글씨이든 모두 직선, 좌하방 및 우하방의 필법이 병존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결국 종선의 필법이 이견 필적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요

답 : 그와 같이 병존하는 것은 알았으나 종선의 필법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문 : 증인이 종선의 방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면 감정서의 다른 경우와 같이 정확히 퍼센트를 내는 등 성실하게 감정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 : 정성을 다해 감정했습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9-1호 4면 8행²²⁴⁾ 제시

문 : 증인은 감정자료중 강기훈이 썼다는 옥증편지의 봉투 소인이 "1987년 6월 8일과, 동년 5월 7일"이라고 감정서에 기재하였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5-8호 및 15-10호(각 엽서)²²⁵⁾ 제시

문 : 증인이 감정한 엽서가 이것인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이 봉투의 소인은 각 몇일자 소인인가요

답 : 하나는 87. 6. 8이고, 또 하나는 87. 5. 9자 소인입니다.

문 : 그 봉투의 소인중 하나는 87. 5. 9자 소인임에도 87. 5. 7자 소인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증인 감정서 원고에는 5. 9. 이라고 했는데, 잘못 인쇄된 것입니다

문 : 감정서 원고와 제출된 감정서를 비교하고 보낸 것이 아닌가요

답 : 보내고 나서 비교했습니다.

문 : 일본에서도 확인 안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일본에서는 확인하고 보내고, 다른 나라에 보낸 이 감정서는 확인하지 않고 보낸 것은 불성실한 태도가 아닌가요

222) 총자료집 II 책 848쪽 참조.
223) 총자료집 I 책 293쪽 참조.
224) 총자료집 I 책 582쪽 참조.
225) 총자료집 II 책 848쪽 참조.

답 : 소인은 보지 않고 그 내용을 보고 감정하였습니다.

문 : 감정대상 문서가 언제 작성된 것이냐는 감정에 있어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잘못 본 것은 실수가 아닌가요

답 :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문 : 증인이 이와 같이 명백한 부분도 감정서에 잘못 기재한 것은 신중하지 않게 감정한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답 : 실수한 것은 인정하나,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9-1호(감정서) 4면 13행, 14행²²⁶⁾을 제시

문 : 증인은 감정자료중 강기훈이 쓴 옥증편지 2통 등이 "가로 일직선으로" 써여 있다고 감정하면서 이는 유서가 가로 일직선, 말미를 올리는 것, 내리는 것의 3종이 있는 것과 다르다는 취지로 감정하였지요

답 : 예.

문 : 이것은 강기훈의 편지와 최근 필적이 패선이 있는 종이에 썼기 때문에 가로 일직선으로 써여 있었고, 유서는 패선이 없는 백지에 썼기 때문에 가로 일직선이 되거나 말미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등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요

답 :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변호인단 제출의 증제15-8호(엽서) 추신란²²⁷⁾ 제시

문 : 증인은 1987. 3. 6자 소인이 찍힌 옥증편지중 패선이 없는 부분에 쓰인 추신란을 보고 위 배자형태가 증인이 강기훈의 필적의 특징이라고 지적한대로 "가로 일직선"인지 아니면 올라가다가 내려갔는지 답변하시요

답 :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 19-1호 감정서 4면 18행, 19행 및 그 이하 제시

문 : 증인은 고유필법을 사용, 항상성이 나타나 개성 표현이 된 글씨로 「ㄹ」, 「ㅁ」, 「ㅂ」, 「ㅎ」, 「ㄱ」, 「ㄴ」 등을 감정서에 예시하였지요

답 : 예.

리울자에 관하여

226) 총자료집 I 책 578쪽 참조.

문 : 증인은 한글 받침 리울자의 형태가 몇가지로 썩여지며 그것들이 어떠한 빈도로 나타나는지 아닌지요

답 : 예.

문 : 설명할 수 있나요

답 : 적어도 3가지가 있습니다.

문 : 더 정확히 몇가지가 있고 종류별 빈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 5종류 이상으로 그 빈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198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보 246면²²⁸⁾ 제시

문 : 증인은 한글 받침에 리울자가 10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ㄹ」이 25%, 「ㄺ」이 20.3%, 「ㄻ」이 15.6%, 「ㄼ」이 10.9%, 「ㄽ」이 7.8%, 「ㄾ」이 5.4%, 「ㄿ」이 4.6%, 「ㅀ」이 4.6%, 「ㅁ」이 3.1%, 「ㅂ」이 2.3% 나타나는 사실을 아는가요

답 : 모릅니다.

문 : 리울자가 어떠한 빈도로 어떤 형태로 썩여지는지 모르고 제대로 감정할 수 있는가요

답 : 증인은 제일 한국인 4명의 도움을 받아서 감정하였습니다.

문 : 그 사람들이 필적감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가요, 아니면 한글만 아는 사람들인가요

답 : 어느 정도 감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단 제출의 증제19-1호(감정서) 제23행, 제24행, 제25행²²⁹⁾을 제시

문 : 증인은 김기철이 받침 리울자는 모두 제2의 획선을 생략하고 1획으로 「ㄹ」과 같이 쓴다고 감정하였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2호(이력서)²³⁰⁾ 제시

문 : 이력서 제2행 "김기철"의 "철"자에 쓰인 받침 리울에는 제2의 획선이 없는가요 있는가요

답 : 있습니다.

문 : 이와 같이 증인이 감정자료로 사용한 것중 김

227) 총자료집 II 책 844쪽 참조.
228) 총자료집 III 책 116쪽 참조.
229) 총자료집 I 책 576쪽 참조.
230) 총자료집 II 책 792쪽 참조.

기설이 쓴 이력서의 리올자에도 분명히 제2의 횡선이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김기설이 쓴 리올자는 모두 제2횡선을 생략하고 한 획으로 'ㄷ'과 같이 쓰고 있다고 감정한 것은 명백한 오감정이 아닌가요

답 : 그렇지 않고, 맨위 리올자는 무시하고 감정한 것입니다.

문 : 이력서는 리올자가 모두 4자인데 이를 세어 놓고도 무시하고 감정한 것이 말이 되는가요.

답 : 그것은 숫자 계산을 잘못된 것입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9-1호(감정서) 5면 25행, 231) 제6면 제1행(232)을 제시

문 : 증인은 강기훈이 쓴 받침 리올자는 어느 것이나 제2의 횡선을 가필하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감정한 것이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5-8호(엽서)233)를 제시

문 : 이것이 증인이 감정한 엽서이지요.

답 : 예. 문 : 이 엽서 2면 17행 "출", 18행 "를", 20행 "을", "을"의 받침 리올자에 제2의 횡선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이 감정자료로 사용한 것중 강기훈이 쓴 편지의 받침 리올자에 제2의 횡선이 없는 것이 4자 씩이나 명백히 존재함에도 강기훈의 받침에 쓴 리올자는 어느 것이나 모두 제2의 횡선이 있다고 감정한 것은 역시 명백한 오감정이 아닌가요

답 :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검찰 압수물 증제8-1호(진술서)234) 제시

문 : 이것은 피고인 강기훈이 수사기관 앞에서 자필로 쓴 진술서인데, 첫장에는 제2의 횡선이 있는 'ㄷ'이 16개소, 제2의 횡선이 없는 'ㄷ'이 5개소 나타나지만 다소 속필체로 이행하는 둘째장에서는 모두 제2의 횡선이 없는 'ㄷ'의 형태만이 24개소 나타나고 있지요

답 : 예.

문 : 결국 지금까지 받침 리올자에 나타난 바를 종합해보면 강기훈도 유서필체와 같이 제2의 횡선을 생

략한 'ㄷ'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증인의 감정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정서와 속필에 따른 리올자의 변화상태를 간과하고 김기설만 받침 리올자를 유서와 같이 제2의 횡선을 생략하고 쓰는 것으로 증인 멋대로 감정한 것이 아닌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강기훈의 진술서에는 처음에는 횡선에 있는 것으로 썼다가 나중에 없는 것으로서 쓰여진 것입니다.

문 : 강기훈이 리올자를 횡선없이 한번에 쓴 것을 이렇게 보고도 강기훈의 글씨중 횡선 있는 'ㄷ'로 쓰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하나요

답 : 처음 쓸 때는 횡선있는 'ㄷ'이 나오므로 나중에 횡선없는 'ㄷ'자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강기훈의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 처음 또박또박 쓸 때와 빨리 쓸 때중 어느 때에 글씨의 특징이 잘 나타나나요

답 : 첫째줄에서 둘째줄까지는 잘 쓰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그 후 다섯째 줄까지만 감정하며 나중의 것도 서둘러 쓴 것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일 본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문 : 그렇다면 이건 감정에서는 그러한 구별없이 즉 첫째줄, 둘째줄을 빼고 다섯째 줄 이하도 빼고 나머지 리올자만 세어 감정한 것이 아니고 리올자를 전부 세어서 감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유언서 등 여러가지 자료는 침착하게 쓴 것을 보여 전부 감정한 것입니다.

문 : 강기훈이 속필로 쓰면 횡선없는 리올자를 쓰는 것을 인정하는가요

답 : 인정합니다.

문 : 증인의 감정서에도 유언서는 속필로 쓴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유언서는 속필로 쓴 것을 인정하나요

답 : 예.

변호인단 제출의 증제19-1호(감정서) 5면 22행(235)을 제시

232) 총자료집 I책 582쪽 참조.
233) 총자료집 II책 844쪽 참조.
234) 총자료집 I책 109쪽 참조.
235) 총자료집 I책 580쪽 참조.

231) 총자료집 I책 581쪽 참조.

문 : 증인은 자료 2 승의여전 메모 받침 리올이 4개 있다고 감정한 것이요

답 : 예. 변호인단 제출의 증제5호(메모)236)를 제시

문 : 이것이 증인 감정한 메모이지요

답 : 예.

문 : 여기에 받침 리올이 모두 6군데 나오지요

답 : 예.

문 : 이와 같이 받침 리올의 숫자마저 틀리게 감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비읍자에 관하여

문 : 증인은 한글 받침에 비읍자의 형태가 몇가지로 썩어지고 어떠한 빈도로 나타나는지 아는가요

답 : 5개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빈도는 모릅니다

위 연보 246면(237)을 제시

문 : 증인은 한글 받침에 비읍자가 'ㅃ'이 40.9%, 'ㅅ'이 14.7%, 'ㄷ'이 13.1%, 'ㄹ'이 9.8%, 'ㄴ'이 6.5%, 'ㄷ'이 4.9%, 'ㄹ'이 4%, 'ㄴ'이 2.4%, 'ㄹ'이 2.4%, 'ㄷ'이 1%의 빈도로 나타나는 사실을 아는가요

답 : 모릅니다. 한글을 가르쳐준 제일한국인이 알 것입니다

문 : 비읍자가 어떤 형태로 어떠한 빈도로 썩어지는지 모르고 고유한 개인 특성을 찾아내어 감정한 수 있는가요

답 : 증인은 몰라도 증인을 도와준 제일한국인이 가르쳐 주어 감정한 수 있었습니다

문 :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증인에게 감정을 맡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그 사람은 전문으로 감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 : 그러면 증인의 필적 감정 지식과 제일한국인의 한글 지식과 합하여 증인 이름으로 감정한 것인가요

답 : 예. 문 : 감정을 하고 결론을 내린 사람은 증인인가요, 제일한국인의 결론인가요

236) 총자료집 II책 798쪽 참조.

답 : 증인의 결론입니다

변호인단 제출의 증제19-1호 감정서 제7면 제18행부터 제21행(238)을 제시

문 : 증인은 김기설이 쓴 비읍자에 관하여 "어느 것이나"제 1, 2획의 종선을 곡선적 필치로 안쪽으로 굽혀 내려 굵고 제2획에서 3, 4획을 연속필기하고 종필을 제2획보다 우의측으로 돌출, 빠져 올리는 필법을 쓰고 있다(즉)고 감정한 것이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2호(이력서)239) 제시

문 : "본인"의 "본"에 비읍자가 그러한 필법인가요

답 : 위 필법과 다릅니다.

문 : "부" 및 "업", "입"의 비읍자가 우상방으로 돌출하였는가요

답 : "부" 및 "업"의 비읍자는 내려가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입"의 비읍자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

다. 검찰 압수물 증제11-1호(전민련 제출의 수첩) 4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일정표(240)을 제시

문 : 24일자 "증집"의 "집"에 비읍자가 그러한 필법인가요

답 : 그것은 비읍자인지 몰라 감정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았습니

다. 문 : 지금 보면 어떤가요

답 :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

다. 문 : 같은 날짜 "국보"의 "보"에 비읍자가 우상방으로 돌출하였나

답 : 아닙니다.

문 : 25일자 "삼백"의 "백"에 비읍자가 그러한 필법인가요

답 : 아닙니다.

문 : 26일자 "반통일적"의 "반"에 비읍자가 그러한 필법인가요

답 : 아닙니다.

237) 총자료집 III책 116쪽 참조.
238) 총자료집 I책 582쪽 참조.
239) 총자료집 II책 792쪽 참조.
240) 총자료집 I책 728쪽 참조.

문 : 27일자 "정집"의 "집"에 비유자가 그러한 필법인가요

답 : 아닙니다.

검찰 압수물 증제11-1호(전민련 제출의 수첩) "경실련" 전화번호(241)를 제시

문 : "민변"의 "변"에 비유자가 그러한 필법인가요

답 : 아닙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5호 메모(242)를 제시

문 : "국보"의 "보"에 비유자가 우상방으로 의측 돌출되었나요

답 : 비유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 제출의 증제7호(상황일지)(243)를 제시

문 : 9월 25일자 전국 및 지역동향란 중 "집회"의 "집", "교선부"의 "부"의 각 비유자가 우상방으로 돌출되었는가요

답 :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문 : 이와 같이 증인이 김기설이 쓴 것이라는 전제로 감정한 비유자에 분명히 제 1, 2회의 종선을 곡선적 필치로 안쪽으로 굽혀 내려 굿고 제 2회에서 제 3, 4회를 연속 필기하고 종필을 제2회보다 우의측으로 돌출, 뺄어올리는 필법(즉, ㄴ의 형태)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무수히 존재함에도 김기설이 쓴 비유자는 모두 이러한 필법을 쓴다고 감정한 것은 증인이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실수한 명백한 오감정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로 이를 은폐, 조작한 것인가요

답 : 증인이 감정한 대체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문 : 그러면 일본어로 "어느 것이나", "모두"라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답 : 예. 오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문 : 오버란 무슨 뜻인가요

답 : 대체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일본어 "이즈레모"가 그런 뜻인가요

답 : 감정서에서 "이즈레모"를 빼버리겠습니다. 지나치게 오버해서 잘못 표현한 것입니다.

변호인 제출의 증제19-1호 감정서 제7면 22행부터 26행(244)을 제시

문 : 증인은 강기훈이 쓴 비유자의 필법에 관하여 제1, 2회를 우하방으로 직선적 필치로 그어 내리고,

제3, 4회를 행서체의 속필로 쓰고 종필을 제2회의 사선상에 가압하여 매듭짓는 필법(즉, ㄴ의 형태)이라고 감정한 것인가요

답 : 예.

변호인 제출의 증제 15-8호(245)를 제시

문 : 이 편지 2면 4행 "하심시오"의 비유, 5행 "받느"의 비유, 7행 및 8행 "드립니다"의 비유, 17행 "합니다"의 비유의 필법이 위 필법과 같은가요

답 : 그렇지 않고 끝이 나와 있습니다.

변호인 제출의 증제15-10호(246)를 제시

문 : 이 편지 2면 3행 "없이"의 비유, 6행 "읍니다"의 비유, 14행 "바라고"의 비유가 위 필법인가요

답 : 아닙니다. 끝이 나와 있습니다.

검찰 압수물 증제8-1호 기록 제308장(247)을 제시

문 : 이 진술서는 피고인 강기훈이 수사기관 앞에서 자필로 쓴 진술서인데, 3행 "별로"의 비유, 8행 "분"의 비유, 19행 "분"의 비유 등은 어떤가요

답 : "별로"의 경우는 나오진 않고 위로 그어 있으며 "분", "분"의 경우에는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 : 이와 같이 증인 강기훈이 쓴 것이라는 전제로 감정한 자료 3, 4의 비유자에 분명히 제1, 2회를 우하방으로 직선적 필치로 그어 내리고 제3, 4회를 행서체의 속필로 쓰고 종필을 제2회의 사선상에 가압하여 매듭짓는 필법(즉, ㄴ의 형태)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무수히 존재함에도 강기훈이 쓴 비유자는 모두 이러한 필법을 쓴다고 감정한 것은 오감정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로 이를 은폐한 것인가요

답 : 그 다른 필체는 강기훈 필체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했습니다.

변호인 제출의 증제19-1호 감정서 8면 1행부터 2행(248)을 제시

문 : 증인은 유서의 비유의 필법이 어느 것이나 제 1, 2회의 종선을 곡선적 필치로 안쪽으로 굽혀 내려

- 242) 총자료집 II책 798쪽 참조.
- 243) 총자료집 II책 800쪽 참조.
- 244) 총자료집 I책 580쪽 참조.
- 245) 총자료집 II책 844쪽 참조.
- 246) 총자료집 II책 848쪽 참조.
- 247) 총자료집 I책 109쪽 참조.
- 248) 총자료집 I책 582쪽 참조.

241) 총자료집 I책 774쪽 참조.

굿고 제 2회에서 3, 4회를 연속 필기하고 종필을 제2회보다 우의측으로 돌출, 뺄어 올리는 필법을 쓰고 있다(즉, ㄴ)고 감정한 것인가요

답 : 예.

검찰 압수물 증제 1-6호(유서)를 제시

문 : 증인은 "변혁"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 "한번도"의 비유가 모두 종필을 우의측으로 돌출, 뺄어 올린 것으로 감정한 것인가요

답 : 예.

문 : 이 글자들은 비유가 "ㄴ"자와 "ㄷ"자와 연결된 글자인데, 이 경우에도 비유가 우의측으로 돌출, 뺄어 올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증인이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한 잘못이 아닌가요

답 : 잘못이 아닙니다.

문 : "아버지"의 "버"를 "비"로, "어버이"의 "버"를 "비"로 "한번도"의 "번"을 "빈"으로 알고 감정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와 같이 감정한 것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한 것인가요

답 : 증인은 한글을 잘 몰라서 들은대로 하였습니다.

문 : "비"와 "버"를 구별할 수 있나요

답 : 못합니다.

문 : 위 유서중 "해보지"의 비유, "목숨보다"의 비유는 모두 비유의 필법이 다르지요

답 : "해보지"의 경우는 비유자인지 모르겠고, "목숨보다"의 경우엔 다릅니다.

문 : "해보지"의 비유자를 빼면 비유자가 증인이 감정서에 기재한 것처럼 11개가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 : 지금은 모르나, 그 때는 제일 한국인이 가르쳐준대로 비유자로 넣었습니다.

문 : 그 한국인들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며 비유인지 아닌지 모르지요

답 : 예. 모릅니다.

문 : 결국 지금까지 비유자에 나타난 바를 종합해보면 강기훈도 유서 필체와 같이 비유자를 씌어 있어 제3, 4회를 연속필기, 우의측으로 돌출, 뺄어 올리는 유서와 같은 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증인의 감정은

김기설이 쓴 비유자의 다른 형태, 유서에 나온 비유자의 다른 형태를 모두 무시하고 김기설의 쓴 비유자만 유서와 같은 형태라고 멋대로 감정한 것이 아닌가요

답 :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용자의 제1회 사선의 필법에 관하여

문 : 자료 7 상황일지의 히용이 필법에 관하여는 감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7호(상황일지) 중 89. 9. 25. 지(249) 면을 제시

문 : 이것이 증인이 감정한 자료 7 상황일지가 틀림없나요

답 : 예.

문 : 위 부분중 증인이 감정한 연필로 테를 두른 부분에서 히용자가 모두 몇개인가요

답 : 6개입니다.

문 : 위 부분에 히용자는 모두 8개인데 왜 6개라고 하는가요 "오후"의 히용자 2개는 히용인지 모르는가요

답 : 알겠습니다.

문 : 위 부분에 나타난 8개의 히용자는 유서와 달리 모두 좌하방으로 된 것은 없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유서와 달리 모두 우하방으로 내려가는 필법을 사용한 자료 7 김기설이 썼다는 상황일지의 히용자의 숫자를 감정서에서 빼버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인의 부주의에 의한 누락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빼버린 것인가요

답 : 부주의에 의한 누락으로 생각합니다.

문 : 결국 김기설의 필적인지 논란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자료 7. 상황일지와 자료 9. 이력서에는 히용자를 좌하방으로 내려 가는 필법을 사용한 것은 없어 유서와는 다르지요

답 : 좌하방으로 내려 가는 필법은 없습니다만 상황일지와 이력서는 안정된 상태에서 쓴 것이고, 유서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필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 : 안정된 상태에서 썼는지 불안정한 상태에서 썼는지에 관한 진술은 증인의 추측에 의한 판단인가요

249) 총자료집 II책 803쪽 참조.

답 : 예.
 미음자에 관하여
 문 : 증인은 한글에 미음자의 형태가 몇가지로 썩여지고 어떠한 빈도로 나타나는지 아는가요.
 답 : 감정 당시 들었는데 5가지 이상이 있고 빈도는 모릅니다.
 문 : 미음자가 어떤 형태로 어떠한 빈도로 썩여지는지 모르고 개인의 고유 필법을 가려내서 제대로 감정할 수 있는가요.
 답 : 도와준 제일한국인들의 도움으로 감정할 수 있었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이 썼다는 전제로 감정한 자료에서 미음자중 「1」과 같이 2획으로 쓴 것이 15개, 「2」과 2, 3획을 전중하여 쓴 것이 13개, 「ㄱ」과 같이 해서체로 쓴 것이 4개라고 감정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리고 강기훈이 썼다는 전제로 감정한 자료에서는 「1」과 같이 2획으로 쓴 것이 46개, 「2」과 같이 2, 3획을 전중하여 쓴 것이 76개로 감정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유서에는 모두 42개의 미음자가 있는데, 「1」과 같이 2획으로 쓴 것이 32개, 「2」과 같이 2, 3획을 전중하여 쓴 것이 10개로 감정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래서 증인은 2획으로 쓴 미음자의 비율이 김기설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에서 같고, 강기훈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에서 다르다고 감정하였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5-8호(옥증편지)250) 제시
 문 : 이 옥증편지를 예로 미음자를 살펴보면 「1」과 같이 2획으로 쓴 것이 17개, 「2」과 같이 2, 3획을 전중하여 쓴 것이 13개, 전중인지 2획으로 쓴 것인지 불명확한 것이 4개소 있는데 어떤가요.
 답 : 숫자는 맞으나, 불명확한 것 4개는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문 : 이 비율에 의하면 이 옥증편지만을 감정자료로 삼았을 경우 강기훈의 미음자가 비율로 보아 김기설의 미음자보다 2획으로 쓴 자가 오히려 유서와 비

율상 더 가깝지 않은가요.
 답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제출의 증제19-1호 감정서 7면 13행부터 15행251) 을 제시
 문 : 증인은 유언서에 미음자가 모두 42개조 나오고 2획으로 쓴 「1」이 32개조, 2, 3획이 전중된 「2」이 10개조 나온다고 감정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런데 유서의 미음자를 정확히 세어보면 모두 44개인데, 확인해 보시오.
 답 : 44개입니다.
 문 : 유서의 미음자의 숫자가 틀리는데 이것은 증인의 한글을 모르는데서 오는 실수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답 : 제일 한국인이 잘못 세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 증인의 감정을 도와준 제일 한국인중 이름을 알고 있나요.
 답 : 말할 수 없습니다.
 문 : 이름은 알고 있는가요.
 답 : 일본 N.C.C. 사람이 데려온 사람인데, 이름을 모릅니다.
 문 : 일본 N.C.C.에서 그 한국인들을 데려다준 것인가요.
 답 : 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문 : 증인이 스스로 오라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일본 N.C.C.에서 데려다준 것인가요.
 답 : 일본 N.C.C.가 데려다준 것입니다.
 문 : 그 사람들이 그 당시 한국에서 일본에 간 사람인지 아니면 일본에 계속 거주하던 사람들인가요.
 답 : 말하는 것을 보면 어릴 적부터 일본에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 : 미음자 모양의 비율을 가지고 필적이동을 논하는 마당에 유서에 있는 미음자의 숫자마저 틀린다는 것은 비율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답 : 두개 정도 틀려도 비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 : 10개쯤 틀리면 비율이 달라지나요.

250) 총자료집 II책 844쪽 참조.

251) 총자료집 I책 812쪽 참조.

답 : 예.
 문 : 10개쯤 틀리던 2개가 틀리던 비율의 신빙성이 떨어뜨리지 않는가요.
 답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 유언서 두째장(부모님께 남긴 부분)에 나오는 '뱀'의 미음자, '위임'의 미음자, '위원장님'의 미음자, '목숨'의 미음자는 증인이 표현한 대로라면 2, 3획을 전중시켜 「2」의 형태로 2번에 쓴 것이 아니고 1, 2, 3획을 모두 연결, 1번에 쓴 것으로 전혀 다른 형태가 아닌가요.
 답 : 예.
 검찰 압수물 증제8-1호 기록 제307정, 제308정252) 을 제시하고
 문 : 이것은 피고인 강기훈이 수사기관 앞에서 자필로 쓴 진술서인데, 이곳에는 유서와 같이 1, 2, 3획을 모두 연결, 1번에 쓴 「1」자가 많이 있지요.
 답 : 예.
 「1」의 필법에 관하여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9-1호(감정서) 제6면 제13행-16행253) 제시
 문 : 증인은 강기훈이 쓴 「1」는 횡선이 모두 위로 빠져 올라갔고 유서에 쓰여 있는 「1」는 횡선이 모두 수평이거나 우하로 내려간 것으로 감정하고 따라서 강기훈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은 상이하다고 감정하였지요.
 답 : 예.
 유서 제시
 문 : 이 유서의 4행 '다'의 「1」의 필법이 위로 빠져 올라간 것인가요, 우하로 내려간 것인가요.
 답 : 조금 위로 올라갔습니다.
 문 : 이 유서의 8행의 '자'의 「1」 필법이 위로 빠져 올라간 것인가요, 우하로 내려간 것인가요.
 답 : 조금 위로 올라갔습니다.
 문 : 이 유서에 「1」의 필법이 위로 빠져 올라간 것이 무려 25개조나 되는데 어떤가요.
 답 : 위로 올라간 것이 17개, 수평이 8개이며, 아래로 내려간 것은 없습니다.
 문 : 그 당시에도 위로 빠져 올라간다는 것을 보았

나오
 답 : 예.
 문 : 이를 목살하고 유서는 「1」, 「1」의 횡선을 수평 또는 우하로 내려간 것처럼 감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전부해서 83개조가 있고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문 : 감정서 중 기재 중 범표가 있는 것은 종지법으로 「1」, 「1」에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뜻이 아니지 않은가요.
 답 : 일단 중지되었지만 계속된 것입니다.
 문 : 결국 유서에도 「1」, 「1」의 횡선이 강기훈의 필적처럼 위로 빠져 올라간 것이 많은 것을 은폐한 것은 강기훈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다르다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고의적인 감정방법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떤가요.
 답 : 다릅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9-2호(감정물건 사진첩) 제46면 ②-3 사진254) 제시.
 문 : 증인은 이 사진 2째줄의 '지자체' 중 「1」의 필법을 발견, 표시하였는데 어느 부분에서 특징 있는 「1」의 필법을 발견하였나요.
 답 : 광역지자체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문 : 증인은 지금 지적한 부분이 「1」자가 아니라 「1」자라는 사실을 모르는가요.
 답 : 모릅니다.
 문 : 증인은 이 부분을 '지자체'가 아니라 '자사체'로 판독하고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아는가요.
 답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 : 증인이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감정이 나오지 않는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의 감정을 지금까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증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첫째, 김기설의 글씨라고 볼 수 없는 수첩, 송의여전 메모, 방명록 노트 등에 대하여 과연 그것이 김기설의 글씨인지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감정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253) 총자료집 I책 811쪽 참조.

254) 자료집 I책 622쪽 참조.

252) 총자료집 I책 109, 110쪽 참조.

감정을 함으로써 출발점인 전제가 잘못된 점, 둘째, 감정의 중심인 유서 등은 사본을 자료로 감정하여 결국 세밀한 특징 및 필압 등을 검토할 수 없었던 점, 셋째, 유서, 수첩, 승의여전 메모, 방명록 등의 필기구를 전혀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결국 필기구에 따른 필적의 변화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던 점, 넷째, 증인이 전혀 한글을 모르고 한글필적감정의 경력도 없이 한글에 없는 해서체, 행서체의 구분을 멋대로 하고, 「ㄹ」, 「ㄱ」, 「ㅎ」, 「ㅏ」, 「ㅑ」 등 자모의 형태를 감정하면서도 어떠한 형태가 회소성이 있는 개인의 고유한 특징인지 전혀 판단할 수 없었던 점, 다섯째, 심지어 증인은 위 자모의 형태를 통계로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에도 한글을 몰라 자모의 숫자를 잘못세고 엉뚱한 부분을 비교하고 또한 그 계산을 잘못하는 등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점, 여섯째, 한글 자모가 총 24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위 6가지의 자모만을 통계로 비교하고 또한 필적감정의 기본이 되는 필세, 필의 각도, 간격, 기필과 종필의 처리부분, 개인의 잠재습성 등을 감정의 기초로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일곱째, 증인은 누군지도 모르는 관계자가 세준 자모를 기초하였고 이제 범정에 와서 잘못 세준 것을 무수히 발견한 점 등을 볼 때 증인은 양심에 비추어 이건 감정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요.

답 : 감정을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다. 다만 증인을 도와준 사람들이 잘못 세준 자모를 기초로 감정한 것은 증인의 실수입니다.

문 : 증인은 동경국립박물관 명예관원으로서 고문서 정리를 주업으로 하였고, 필적감정 전문가는 아니지요.

답 : 필적감정 전문가입니다.

문 : 증인이 필적감정을 무수히 했다는데 그 감정이 틀리거나 범정에서 채택되지 않거나 감정과 다른 판결을 한 것이 있나요.

답 : 전혀 없습니다.

문 : 증인은 과거 "사야마"시에서 발생한 유괴사건의 혐의자 "이시기와 가즈오"가 보낸 협박장에 관하여 혁신계의 의뢰를 받아 감정한 일이 있지요.

답 : 그런 감정한 적이 없습니다.

문 : 위 사실은 의무부와 주일대사관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인데, 어떤가요.

답 : 전혀 없습니다.

문 : 그 사건은 알고는 있나요.

답 :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문 : 일본 문서감정의 권위자로서 일본 동경경시청 문서분석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요시다(吉田公一)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의 필적감정을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글 감정을 한 것은 매우 경솔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를 아는가요.

답 : 모릅니다.

1991. 11.27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 증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950)

☐자료 나-10-1 (공판기록 957~960)

제 10 회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판 조서

사 건 91 고평합 1126 자살방조
91 고평합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판사 정 일 성
판사 이 영 대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피 고 인 강 기 훈

검 사 신상규, 송명석

변호인 변호사 김창국, 박연철, 이석태, 유현석

중 인 오오니시 요시오

통 역 인 허 초

기 일 1991. 11. 28. 10:00

장 소 제 523 호 법정

법정의 공개여부 공 개

고지된 다음 기일 1991. 12. 4. 14:00

출 석

각 출 석

각 출 석

출 석

출 석

재 판 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하거나 이의할 점이 없다는 진술
 재 판 장 출석한 증인 별지조서와 같이 신문
 재 판 장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 (변호인)
 재 판 장 피고인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피 고 인 별 의견 없음
 재 판 장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여러 필적들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변호인단의 의견을 물은 즉
 변 호 인 들 공소사실의 입증은 검사의 책임이며 변호인들은 다만 반증으로 제출할 뿐이니 필적감정을 원치 않으며 변호인들이 제출한 필적들을 꼭 김기철의 필적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은 믿을 수 없다고 진술
 재 판 장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감정인을 추천할 의사는 없는 물은 즉
 변 호 인 들 필적들에 대하여 변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하려는 재판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으며 추천할 감정인이 없다는 진술
 검사 신상규 감정을 하려면 변호인들이 제출한 필적들 중 피고인의 필적이라고 제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김기철의 필적임이 인정되고 또한 변호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김기철의 필적과 동일 여부를 먼저 감정하여야 하고 동일필적으로 판명된 것들만 유서와 동일 여부를 감정하여야 한다고 진술
 재 판 장 변호인들이 필적감정을 극구 반대하므로 필적감정을 하지 않겠다는 고지

변호인 김창국
피고인에게

문 : 1991년 5월 19일자 각 일간신문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고 피고인을 그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발표를 5월 18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사기록을 보면 5월 12일-13일경부터 피고인에게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언제 그와같은 사실을 알았습니까.

답 : 5월 18일 오후 강경대 장례식 대열을 돌아다니다고 있는 중 누군가 신문을 보여 주어 알았습니다.

문 : 피고인은 전민련에서 내근업무를 담당하면서 컴퓨터에 각종 자료를 입력하고 문서 등을 타이핑하는 일을 주로 하였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이 1986년 구속되었을 때 성동구치소, 영등포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마산교도소로 이감되었었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5호의 1 내지 10(255) 및 16호의 1, 2(256)를 제시

문 : 이 봉합엽서와 카드는 피고인이 위 구치소, 교도소 등에 구속되어 있을 때 가족에게 써 보낸 것들이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7호(257) 제시

문 : 피고인은 민중의당 성동지구당 사무실에 근무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89년 초부터 서너달 일했습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7호(보고서) 제시

문 : 이 보고서는 그때 작성한 것인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8호(258) 제시

문 : 이 책은 피고인이 이영미에게 선물하였습니까.

답 : 예.

문 : 이 책의 뒷표지 안쪽에 "사랑하는 ... 형이" 라고 써어 있는데 피고인의 글씨입니까.

답 : 예, 내용은 명확히 기억이 안나나 피고인이 쓴

것 같습니다.

재판장

변론 속행(변호인들의 요청으로)

1991. 11. 28.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256) 총자료집 II책 850쪽 참조.
257) 총자료집 II책 854쪽 참조.
258) 총자료집 II책 855쪽 참조.

255) 총자료집 II책 848쪽 참조.

☐자료 나-10-2 (공판기록 961~972)

서울 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10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평 1126 자살방조
91 고평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증 인 오오니시 요시오
생 년 월 일 1918 8 21.생
주민등록번호
직 업 동경 국립박물관 고문
주 거

재판장
증인에게 전회 한 선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을
고지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
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일반적으로 사본에 의하여 필적감정을 하는 경우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건의 경우 일부 사본으로 감정하였어도 감정상 어려움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원본과 똑같은 표시가 되어 있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문 : 사본이었지만 김기설의 필적과 강기훈의 필적의 차이가 뚜렷히 나타났기 때문에 감정이 어렵지 않았었던 것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일반적으로 필적감정의 핵심은 필법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필기구의 종류나 펜의 굵기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이 이건 감

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필기구가 사용되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할 경우가 있었습니까.

답 : 거의 없었습니다.

문 : 증인은 증인이 작성한 감정서의 '감정이유'에서 앞부분에는 종선의 방향, 글씨의 모양, 글자의 배열형태 등 전체적으로 글씨의 윤곽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반적인 특징을 기재하고, 이어서 각론으로서 '사선의 필법에 관하여' 등 필법의 특징이 현저한 다섯 가지를 지목하여 기술한 것이지요.

답 : 예.

문 : 필적감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동일인이 쓴다고 해도 100퍼센트 필법이 같은 경우란 없지요.

답 : 예.

문 : 따라서 필적감정을 하는 경우 고유필법을 사용하여 개성표현이 명확히 나타나는 필법상의 중요한 특징을 찾아내어 이것이 비교되는 감정자료에서 상당한 유사비율로 나타나면 동일한 필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따라서 필법상의 특징이 대비되는 양 감정자료에서 같이 나타난다고 해도 100퍼센트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필법상의 특징이 다르다고 하여도 대비되는 양 자료에서 어느 정도는 있기 마련이지요.

답 : 예.

문 : 그러므로 증인이 작성한 감정서의 '감정이유' 기재 중 총론부분의 내용이나 각론부분의 내용에서 중요한 필법상의 특징에 관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필법상의 유사성 또는 상이성을 특히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서 그 바탕에는 "대체로", "전체적으로", 또는 "...한 경향이 있다"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까.

답 : 예.

문 : 또 글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일부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필법상의 특색에 관한 증인의 판단에는 영향이 없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김기설의 글씨는 전체적으로 종선에서 직곡선적 필치로 수직방향 외에 좌하방으로 사선을

고어 내리는 특색이 있고, 피고인의 경우는 직선적인 필치로 수직과 우하방으로 경사하는 특색이 있다고 감정하였는데, 증인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종선을 감정하였나요.

답 : 증인이 직접 합성수지판으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과 피고인의 글씨에서 나타나는 이 종선의 필치 및 방향은 특히 중요한 필법상의 상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 : 예.

문 : 증인이 이건 감정의 주안점은 김기설의 유서와 피고인의 옥중편지 및 최근의 자필필적과의 이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까.

답 : 예.

문 : 한 마디로 증인의 감정결론은 김기설의 나머지 필적자료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김기설의 유서와 피고인의 옥중편지 등과는 전혀 필적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답 : 예.

문 : 증인은 증인이 필적감정을 한 40여년 동안 지금까지 재판소나 수사기관 외에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필적감정을 한 일이 있습니까.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1991년 11월 29일 동경지방재판소에 필적감정인으로 소환되어 증인하도록 되어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이건 감정을 행함에 있어서 종전에 일본재판소나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한 감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거나 시간의 촉박 또는 그밖의 다른 이유로 감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확하지 못한 결론이 나올 만한 사정은 없었습니까.

답 : 없었습니다.

문 : 증인은 한글을 모르는 관계로 한글의 필적이거나 특징 등에 관하여 제일 한국인의 도움을 받았으나 이는 오직 보조자에 불과하고 모든 감정과정이나 추론과정은 오직 증인의 40여년에 이르는 필적감정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지식 및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증인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답 : 예.

문 : 증인이 과거 심여회 영어로 쓰여진 문서에 관한 필적감정을 하고 이건과 같이 한글문서에 관한 필적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필적감정이 본질적으로 글자의 모양, 생김새, 특징 등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입니까.

답 : 예.

문 : 다시 말하면 증인이 필적감정 외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동경국립박물관에서의 고문자 해독, 진위 판별 작업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답 : 예.

변호인 박인철

증인에게

검찰측 압수물 증거1호의 1(김기설의 수첩)²⁵⁹ 및 증인이 감정자료로 사용한 위 수첩의 사본 중 뒷부분 전화번호란²⁶⁰ 각 제시.

문 : 증인은 위 수첩이 '볼펜류의 필기구로 그때그때 황서로 각 문자를 난잡하게 작게 쓴 것'이라고 감정서에 기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증인에게 전화번호란을 다시 보여주며, 이 부분도 그때그때 쓴 것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쓴 것으로 보이느냐고 물었을 때, '한꺼번에 쓴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 위 전화번호부 중 '미화레미콘' 이하의 부분도 한꺼번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느냐.

답 : 한꺼번에 쓴 것이 아닙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거15호중의 8(우편봉합엽서)²⁶¹ 제시

문 : 증인은 이 편지 안에 찍어진 '리' 받침 중 제2회의 획을 긋지 않는 것이 4개나 발견되는 데도 '모두가' 제2의 획을 가필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제2획을 그은 자수는 19개나 되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보였기 때문이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거5호(승의여전메모)²⁶² 제시.

문 : 검찰은 이 메모지 안에는 '리' 받침이 6개나

259) '증거 11-1호'의 오기. 총자료집 I 책 717쪽 참조.

260) 총자료집 I 책 774쪽 참조.

261) 총자료집 II 책 844쪽 참조.

262) 총자료집 II 책 798쪽 참조.

되는데 증인은 왜 '4' 개라고 하였느냐고 지적하였으나, 4개든 6개든 이 메모지의 'ㄹ' 자는 모두 제2의 획을 생략하고 일필로 쓰고 있지요.

답: 예.

증인이 작성한 감정서 제3면 제5, 6행(263) 제시

문: 증인은 "김기설이 쓴 각 문자의 필법을 보면, 횡선에서는 직선적 필치로 수평으로 쓰는 필법을 다 용하며, 종선에서는 직곡선적 필치로 '수직과 좌하방'으로 경사하는 두가지 필법을 혼용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지, "수직과 좌하방만으로 경사한다"고 기재하지는 않았고 증인은 우하방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아니지요.

답: 예.

검찰에서 피고인이 명동성당에서 시필하였다는 유서 내용 사본(264) 제공 요청하여 제시

문: 검찰은 피고인이 유서내용을 자신의 필치로 기재한 것중에서도 13개의 좌하방필적이 발견되었다고 하였는데, 검찰이 지적한 나머지 부분 곧 4-5배 정도의 숫자는 역시 우하방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이 제1항 유언서와 제8항 봉투, 제9항 이력서가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감정한 근거는 증인이 감정서에 첨부한 사진도면과 다른 도면 등에 종선방향을 기준으로 표시하여 놓았지요.

답: 예.

문: 증인이 이 사건 감정자료에서 맺은 결론은 감정자료 3, 4항의 강기훈의 필적은 유서의 필적과 결코 같은 사람의 필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2 수첩, 제5, 6, 7, 8, 9항의 필적은 유서의 필적과 같은 것이라는 점으로 이 결론은 사소한 착오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한국 검찰이 증인이 작성한 감정서에 관하여 몇가지 구체적 비판을 하였지만, 그와 같은 견해는 필적을 감정하고 결론을 얻는데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이 사건감정에 있어서 하등의 사심이

263) 총자료집 I 책 580쪽 참조.

없이 감정하였고, 오로지 증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한국 법정에 출석한 것이지요.

답: 예.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피고인이 시필하였던 유서 제시.

문: 그 시필유서의 13곳에 붉은색으로 좌하방표시가 되어 있고 증인은 이제 그렇게 인정하였는데, 그 점에 대하여 지금 변호인 신문에 답하기를 위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우하방이라고 대답하였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수직이 대부분이고 좌하방을 제외한 나머지가 우하방이 아닌가요 결국 수직이 더 많지 않은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어제 증인은 구체적 부분을 전부 진술하였는데 감정서에 10가지 감정대상물 필기구, 필체, 종선의 방향, ㄹ, ㅁ, ㅂ, ㅎ, ㅌ, ㅍ 등에 대하여 기재하였는데 10가지에 대하여 전부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첫째로 김기설의 글씨인지 같은 사람의 글씨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필기구를 잘못 보았고 한글에 없는 필체구분을 하였고 종선의 방향도 모조리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기재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가 시인하였고, ㄹ, ㅁ, ㅂ 중에 있어서는 글씨를 못 알아보고 숫자가 틀리고 이런 무수한 잘못을 시인한 끝에 한국인이 세어주고 가르쳐주는 대로 잘못하였다는 것이 자기의 실수하는 것을 인정했고 감정서 기재의견 일부를 자기 있으며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정에서 감정인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감정의견 일부를 취소한 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글씨를 몰랐다 또는 한국인이 잘못 세어 주었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한국인이 그와같은 감정을 했다면 허위감정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증인도 실수를 시인했는데 이견은 이 사건에 있어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NCC가 오면 한국인이 세어주는 데로 감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영터리감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피고인쪽에 의한 수첩조작, 일부 변호인에 의한 진술조작에 의한 제3의 감정조작

264) 총자료집 I 책 293쪽 참조.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증인이 실수를 시인하고 감정의견서 기재 일부를 취소한 마당에 증인의 경솔한 감정에 대하여 한국 법정에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답: (변호인들이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장이 굳이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검사를 설득하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한국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감정할 수 없었나요.

답: 예, 할 수 없었습니다.

문: 그 한국 사람들이 감정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이 그 한국 사람들이 필적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답변한 것은 증인의 추측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감정을 경험한 사실이 있는 것인가요.

답: 증인의 추측상 감정에 관한 지식이 있는 것 같으나 그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문: 한글을 알고 원본을 가지고 감정했다면 감정의 정확성이 더 있었던 것인가요.

답: 예.

문: 법정에서 여러가지 자료나 원본을 보았는데 원본을 가지고 감정하였다면 좀더 정확한 감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나요.

답: 예.

문: 한글을 모르고 사본을 가지고 감정해서 감정이 소홀하였다는 느낌을 받았나요.

답: 예.

문: 한글을 알고 원본을 가지고 감정했다면 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겠지요.

답: 그렇진 않습니다.

1991. 11. 28.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